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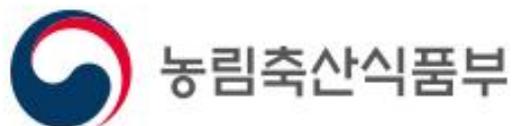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654-0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대학용 편람)

2021. 8

주관연구기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  
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연구책임자: 김용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연 구 원 :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 이흥식(서울대학교 수의대 명예교수)
  - 박인철(강원대학교 수의대 교수)
  - 이기창(전북대학교 수의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기전대 교수)
  - 오희경(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수성대학교 교수)



# 요약문

우리나라는 현재 반려동물 인구 1천 5백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수의 의료계는 사회로부터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수의 의료계의 80%를 차지함과 동시에 고도의 의료기술 성장과 함께 인체의 료계 못지않은 의료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동물보건사제도는 수의료체계의 발달과 함께 수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반려동물산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2019.8.27.에 공표하여 2021.8.28.에 시행되도록 추진하였다.

관련 법규(수의사법 제 16조 4)에 따르면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 인증을 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평가 인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증기준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을 요청받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 되었고, 대한수의사회도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수의과대학 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과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2021.1~3월까지 연구개발하여 수립하였다.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위한 기본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실제적인 인증평가를 위해서는 인증평가 수행 지침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보고서에서 편람 및 지침 개발이 제언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을 요청해오에 따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 되어 2021.6~7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을 제정하였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해 인증절차 단계별 인증평가 수행에 관한 여러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 설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수행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3. 인증평가 수행을 관리하는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평가결과를 판정하는 인증판정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4.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한 경우를 위한 인증재심위원회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5. 인증기준의 개선,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준을 심의하는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6. 인증평가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인증평가단에 대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내규를 수립하였다.

7. 인증평가 기본 원칙 및 절차 전반을 다루는 인증규정, 인증을 부여받은 후 인증유지관리를 위해 연차보고서를 평가 관리하는 인증유지관리지침, 인증평가 수행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증 윤리지침도 각각 수립하였다.

8. 인증을 준비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용 편람을 제정하였다.

9. 대학용 편람에서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10. 대학용 편람에서 평가단의 방문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1. 대학용 편람에서 인증판정 및 평정기준을 제시하였다.

12. 대학용 편람에서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 및 평가자료를 제시하였다.

13. 대학용 편람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기술할 내용 및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14. 평가자용 편람에서 평가단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15. 평가자용 편람에서 평가단의 인증평가 수행사항인 서면평가, 방문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16. 평가자용 편람에서 평가단이 인증평가 후 판정을 위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제시하였다.

17. 평가자용 편람에서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8. 평가자용 편람에서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 개수별로 평정기준을 제시하였다.

19. 표준절차지침은 인증평가 전체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매뉴얼로 제공하였다.

20. 표준절차지침에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세부 수행사항을 제시하였다.

21. 표준절차지침에서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22. 표준절차지침에서 인증평가 및 판정을 위한 각종 서식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서 요구된 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뿐 아니라 평가인증 수행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록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반려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인체 의료서비스 못지 않은 양질의 수의료 서비스가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로부터 요구되고 있으며, 수의료 서비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체제로 간주되는 동물보건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현시점에서, 수의사를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양질의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위하여, 인증기준에 의한 올바른 인증평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표준 편람과 지침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된다.



##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 .....	1
제1절. 동물보건사 제도 필요성 .....	1
제2절.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계 법령 .....	2
제3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 제정 .....	4
제4절. 연구개발 목표 .....	5
제2장. 연구 방법 및 추진경과 .....	6
제1절. 연구개요 .....	6
제2절. 연구추진 방법 및 경과 .....	18
제3장. 연구결과 .....	26
제1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및 지침 개발 .....	26
제2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제정 .....	28
제3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 제정 .....	29
제4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 제정 .....	30
제4장 고찰 .....	32
제5장. 요약 및 결론 .....	37

## 부 록

부록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관련 공문 .....	43
부록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계획서 .....	73
부록3. 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법규 .....	93
부록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회의자료 및 회의록(1차~3차) .....	101
부록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집 .....	183
부록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대학용 편람 .....	211
부록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평가 기준집 .....	347

표 2.1. 참여 연구원 .....	14
표 2.2. 연구수행 일정표 .....	16
표 2.3. 연구개발 국고 보조금 집행계획서 .....	17

# 제1장 연구배경

## 제1절 동물보건사 제도 필요성

### 1. 양호한 수의 의료체계의 구축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며 현재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들어서 있다. 반려동물 수도 2017년 875만 마리(개 632만 마리, 고양이 243만 마리)에서 1,000만 마리 이상에 도달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1)</sup>

반려동물 수와 반려인의 수가 증가되면서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은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이다. 반려인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는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의료행위가 역량을 갖춘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 되겠으나, 수의사는 수의사를 돕는 보조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수의 의료서비스를 갖추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는 여러 진료 분야를 갖춘 대형동물병원일수록 그 진료 과목에 특화된 보조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인체 의료체계에서 전공과목에 따라 그 의료과목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증가에 동반하여 수의 의료계는 날이 갈수록 사회와 관련 산업으로부터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성장과 함께 인체 의료계 못지않은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의료 전공과목에 따른 적합한 보조 인력의 도움과 함께 최적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 2. 수의 의료계의 현황

2021년 2월 기준 우리나라 수의사 중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7,405명이며, 이 인원은 면허 발급자 중 사망자 및 수의사 신고자 수 등을 감안할 경우 동물병원 종사 수의사 수는 전체 수의사의 절반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임상 수의사 7,405명 중 6,010명이 반려동물 진료에 종사하며(81.2%), 산업 동물 진료에는 915명(12.4%), 반려동물과 산업 동물 혼합진료는 480명(6.5%)으로서 임상 수의사 대부분이 반려동물에 종사하면서 수의 의료서비스 산업을 주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1) 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발전 방안 연구.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수의사 분포현황. 대한수의사회. 2021.2.

## 제2절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계 법령

### 1. 동물보건사의 정의

동물보건사로 명칭이 확정되기 전 ‘동물간호복지사’라는 명칭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한 인력이 존재해왔으며<sup>3)</sup> 그 인원은 2016년 당시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는 ‘동물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TF(농식품부, 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복지학회, 동물간호협회 등 참여)’를 6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수의진료 보조인력의 명칭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수의간호복지사,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조무사, 동물복지학회는 수의간호사를 각각 주장하였으나, TF 논의를 통하여 ‘수의간호복지사’로 명칭이 합의되었다.

최종적으로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수의계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및 진료 보조(주사·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해당 인력의 업무를 정의하여 이 제도 도입이 농식품부 6차 TF(2016.7월)<sup>4)</sup>에서 합의되었다. 이후 농식품부는 ‘동물간호복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입법예고(’16.9.13) 및 발의(’17.1.10)<sup>5)</sup>를 하였으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17.11.29)<sup>6)</sup>에서 명칭 등과 관련하여 이견(간호협회의 반대 등)이 존재하여 한차례 계류된 바 있으며, 결국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19.4.1)<sup>7)</sup>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동물보건사’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이후 해당 법률이 개정(’19.8.27)되어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수의사법 제2조)되고 있다.<sup>8)</sup>

### 2. 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의 자격은 수의사법 제16조2에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sup>8)</sup>

**수의사법 제 16조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3) 2004년부터 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자율로 애완학과·동물병원 근무자에 대해 민간자격을 부여해왔음.

4) 농식품부 6차 TF. 2016.7.1.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6-427호.

6) 국회회의록 20대 354회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p.33.

7) 국회회의록 20대 367회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p.72.

8) 수의사법(부록 3. 참고)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 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며 자격시험의 관리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sup>

**수의사법 제 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수의사법 제16조4에서 규정하고 있다.<sup>8)</sup>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3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 제정 및 편람,지침의 제정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반려동물 인구 1천 5백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수의 의료계는 사회로부터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수의 의료계의 80%를 차지함과 동시에 고도의 의료기술 성장과 함께 인체 의료계 못지않은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반려동물 산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2019.08.27.에 공포하여 2021.08.28.에 시행되도록 추진하였다.

관련 법규(수의사법 제16조4)에 따르면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평가인증을 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평가인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증기준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안) 수립

이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을 의뢰받았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 교육협회가 공동 연구수행기관이 되어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과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와 함께 2021.01~03월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인증기준(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안)이 수립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결과는 2021.5월에 보고서로 작성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었다.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수행을 위한 편람 및 지침 제정의 필요성

이 보고서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은 인증평가의 원칙과 기본만을 제공한 것으로 추후 인증평가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그리고 최종 판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편람 및 지침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이 제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 되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이 수행되도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 2021.5월에 의뢰해왔다.

이 연구 개발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이 수립된 이후 인증신청기관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 등 평가·인증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편람 및 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제4절 연구개발 목표

### 1. 경과

동물보건사 제도는 2020.1.8.28.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은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을 요청해왔고(방역정책과-647, 2021.1.15.), 수인원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와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안)을 2021.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였다.<sup>9)</sup>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요청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의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평가인증 기준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기준 수립 후에는 평가인증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정책과-4145(2021.5.28.)<sup>10)</sup>로 수인원에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해왔으며, 이 연구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보내왔다. 이 지침서에서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제시하였다.

### 3. 연구개발목표

- 1) 편람: 평가자용과 대학용으로 구별하여 마련
  - 평가자용 편람은 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방법 수립
  - 대학용 편람은 자체평가서 작성 및 방문평가 준비방법 수립
- 2) 지침: 전체 인증평가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 마련
  - 동물보건학 교육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 사항, 평가단 구성
  - 대학평가의 평점 및 인증기간 판정 기준
  -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및 방문평가, 평가 서식과 작성법
  - 인증평가에 필요한 각종 표준서식 등

9)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보고서(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520-0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2021.3.

1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 방역정책과-4145(2021.5.28.). (부록 1.8.)

## 제2장 연구방법 및 추진경과

### 제1절 연구 개요

#### 1.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지침<sup>1)</sup>에 따른 연구 수행 내용 목표 설정

■ 이 연구개발에서 개발 목표로 하는 것은 편람 및 지침 제정이다.

1) 편람은 평가자용과 대학용으로 구별된다.

A. 평가자용 편람은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B. 대학용 편람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2) 지침은 인증평가 전체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매뉴얼이다. 즉,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사항, 평가위원 인적자원과 평가단의 구성, 대학평가의 평점 및 인증기간 판정 기준,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방문평가, 평가 서식과 작성법을 제시하고, 각종 표준 서식을 포함한다.

●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편람 및 지침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으로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용(대학용) 인증·평가 편람 제정

● 대학용 편람은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인증평가단의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 이 가이드라인은 인증신청대학의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자료이므로 공개가 가능하다.

● 대학용 편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개요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실시 배경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필요성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관련 법규

□ 제2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의미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기본 방향

1) 연구개발지침서(부록 1.1.의 붙임2 참고)

- 제3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그 역할
  - 1. 인증평가위원회
  - 2. 인증판정위원회
  - 3. 인증기준위원회
  - 4. 기타 위원회
- 제4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기대효과
- 제5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 1. 평가인증절차
  - 2. 평가절차흐름도
  - 3. 인증·평가 수수료
- 제6장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1.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의의
  - 2.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
  - 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 자체평가의 취지
  - 5. 자체평가의 절차
  - 6. 자체평가보고서 구성과 서식
- 제7장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 1. 평가단 구성
  - 2. 서면평가
  - 3. 방문평가
- 제8장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 및 논평서 작성
- 제9장 판정 기준
  - 1. 판정 기준
  - 2.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점수
  - 3. 인증 유형별 판정 기준(점수 계량화)
- 제10장 인증주기 및 인증유형
- 제11장 인증 신청기관 인증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 절차
- 제12장 용어정리
- 제13장 영역별 인증기준 요약
- 제14장 영역별 인증기준
  - 1. 조직과 운영 영역
    - 1.1. 교육목적과 목표
    - 1.2. 조직과 재정
    - 1.3. 전략과 계획

- 2. 교육과정 영역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 2.3. 교육과정개선
  - 3. 학생 영역
    - 3.1. 학생지도체제와 운영
    - 3.2. 학생활동과 지원
    -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 4. 교수 영역
    - 4.1. 전임교수
    -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 5.1. 교육시설 및 설비
    - 5.2. 연구시설과 설비
    - 5.3. 시설설비의 관리
- 부록 관련 규정

##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평가자용 편람 제정

- 평가자용 편람은 인증평가 절차에서 인증 평가단이 인증신청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수행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 이 가이드라인은 평가단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술되므로 평가단을 제외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자용 편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의미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기본 방향
- 제2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역할
  - 1. 인증평가위원회
  - 2. 인증판정위원회
  - 3. 인증기준위원회
  - 4. 기타 위원회
- 제3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기대효과

- 제4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1. 평가 인증 절차
  2. 평가대상 선정
- 제5장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1.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의의
  2.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
  3. 자체평가의 취지
  4. 자체평가의 절차
  5. 자체평가보고서 구성과 서식
- 제6장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1. 평가단 구성
  2. 서면평가
  3. 방문평가
- 제7장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 및 논평서 작성
- 제8장 인증신청기관 인증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 절차
- 제9장 인증 주기 및 인증 유형
- 제10장 평가위원의 임무와 자세
  1. 서면평가
  2. 현장 방문평가
  3. 기준해석
  4. 방문평가 종결
  5. 평가보고서 쓰기
  6. 인증 결정
  7. 현장 방문평가지 유의사항
- 부록 관련규정
- 제11장 용어 정의
- 제12장 영역별 인증기준 요약
- 제13장 영역별 평정기준
  1. 조직과 운영 영역
  2. 교육과정 영역
  3. 학생 영역
  4. 교수 영역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 ③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지침 제정

- 지침은 인증평가 전체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매뉴얼이다. 즉,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 사항, 평가위원 인적자원과 평가단의 구성, 대학평가의 평점 및 인증 기간 판정 기준,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방문평가, 평가 서식과 작성법을 제시하고, 각종 표준 서식을 포함한다.
- 표준절차 지침은 인증평가단의 평가위원이 사용해야 할 지침으로 평가위원을 제외한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 표준절차 지침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 사항

#### II. 평가위원 인적자원과 평가단의 구성

1. 목적
2. 용어
3. 평가위원 인적자원 구성과 관리
4. 평가위원 인적자원 교육
5. 평가위원의 자격 및 선정
6. 평가위원의 역할
7.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평가단 연수

#### III.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평정 및 인증기간 판정기준

#### IV. 서면평가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
4. 세부지침
5. 서면평가 절차

#### V.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
4. 세부지침

#### VI. 방문평가

1. 목적

2. 방문평가 일정 협의 및 조정
3. 방문평가 절차
4. 방문평가 시 주요 활동
5. 방문평가 시 유의사항
6. 방문평가 마무리논평 및 총평
7. 방문평가 후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 VII. 평가 서식과 작성법

1. 인증평가보고서 표지
2. 인증평가단 명단
3. 평가진행 요약
4. 서면평가서
5. 서면평가보고서
6. 자체평가보고서 보충자료 요청 내역서
7. 영역별 평정표
8. 영역별 분석보고서
9. 평가결과 변경사유 설명서
10. 방문평가 마무리논평서
11. 방문일지
12. 방문평가보고서
13. 14일 답변서
14. 14일 답변 검토 의견서
15. 예비논평서
16. 예비논평 답변서
17. 예비논평 답변 검토 의견서
18. 최종논평서
19. 영역별 최종 평정표
20. 최종 판정 의견서
21. 최종보고서

#### VIII. 기타 서식

1. 방문평가 총평
2. 방문평가에 대한 평가(평가단장용)
3. 방문평가에 대한 평가(평가위원용)
4. 방문평가 점검표

#### 부록. 서식

## 기대효과

1.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용(대학용) 편람**은 인증신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평가단의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2.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평가자용 편람**은 인증평가단이 실제적으로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3.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은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인증 여부 및 인증 유형을 판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동물보건사 편람 및 지침 제정을 통해 인증신청기관은 인증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증평가 평가단은 편람과 지침을 이용하여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성교육기관의 교육 표준화를 이루어 양질의 동물보건사 양성 및 배출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수의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결과 동물복지 선진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확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수의료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진 편성

### ■ 연구진 구성의 기본 원칙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사업은 농식품부 지침서에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양 기관이 동수의 인원으로 연구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은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편람 및 지침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2021.1~3월에 수행된 인증기준 개발에 참여한 연구 인사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③ 이 연구개발 사업에서 최종 결과물은 대학용 편람, 평가자용 편람, 표준절차지침, 평가인증 관련 운영규정이므로 양 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1명씩 연구원을 배정하여 조를 편성함으로써 양측 기관이 한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 개발하도록 한다.

<표 2.1. 참여 연구원>

기관	성명	소속/지위	역할	연구분야
한국수의학 교육인증원	김용준	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책임연구 원	-연구개발계획서 및 최종 보고서 작성(총괄) -대학용 편람 개발
	이흥식	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원	각종 위원회, 평가단 등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지침/내규 개발
	박인철	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연구원	표준절차 지침 개발
	이기창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	연구원	평가자용 편람 개발
한국동물보 건사대학교 육협회	박영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주 기전대학교 교수	연구원	각종 위원회, 평가단 등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지침/내규 개발
	오희경	장안대학교/교수	연구원	평가자용 편람 개발
	정태호	중부대학교/교수	연구원	표준절차 지침 개발
	김정은	수성대학교/교수	연구원	대학용 편람 개발

### 3. 연구 일정

연구 일정은 이 연구 개발과제가 2021.5.28.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4145로 2021.6~7월(2개월)간 수행되도록 의뢰되었고, 또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2021.7.31.로 제시되었으므로 2021.6.1.~202.7.31까지 편람 및 지침 제정을 위한 자료 준비 및 심의를 위한 연구진 회의를 통해 대학용 편람, 평가자용 편람 및 표준절차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일정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연구수행 일정표>

연구수행내용	2021.6			2021.7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7~6.11	6.14~6.18	6.21~6.25	6.28~7.2	7.5~7.9	7.12~7.16	7.19~7.23	7.26~7.31
연구진 1차회의 (역할분담 및 일정 조정) ※농식품부 참석	√							
2차회의 ①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결정 ②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③인증평가비 ④ 방문평가 수행 기간			√					
3차회의 대학용 편람 심의				√				
4차회의 평가자용 편람 심의					√			
5차회의 표준절차 지침 심의						√		
6차 회의 편람 및 지침 최종 검토 ※농식품부 참석							√	
최종보고서 제출								√

#### 4. 연구개발 사업비 집행 계획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 개발 사업을 위한 연구비로 지침서<sup>1)</sup> 및 관련 공문<sup>2)</sup>에서와 같이 2천만원이 지급 결정되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 집행계획서(안)은 표 2.3.과 같다.

<표 2.3. 연구개발 국고 보조금 집행계획서>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부가세 포함)	세부내역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 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000,000원	○연구원 수당 -연 구원8명x1,200,000 원=9,600,000원 ○연구책임자 수당 -책임자 1명 x1,000,000원 =1,000,000원 ○ 회의 참가수당 -연구원 8명 x150,000원x6회 =7,200,000원 ○회의 경비 -1회 200,000원x6 회=1,200,000원 ○자료 인쇄비 및 보고서 작성비 -1,000,000원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등 개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방역정책과 -4514(2021.6.14.) (부록 1.9.)

## 제2절 연구추진 방법 및 경과

### 1. 연구추진 방법 및 기본 원칙

① 편람 및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항은 모두 연구진 회의에서 심의 및 결정하였으며, 연구 일정표에 제시된 심의사항 및 전차 회의에서 차기 회의 안건으로 결정한 사항들을 심의하였고, 일정에 제시된 회의 안건은 반드시 그날에 결론을 맺도록 하였다.

② 편람 지침 개발 목표를 크게 4분야로 구분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운영규정, 대학용 편람, 평가자용 편람, 표준절차 지침, 4분야에 수인원과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에서 각각 1명이 참여하여 1조를 이루었고, 일정표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전체 심의하여 각 과제별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③ 심의해야 할 안건 및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집중 토의를 하였으며 가장 옳고 합리적인 안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④ 회의 때마다 결정된 사항은 수인원 이기창 교수와 김용준 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 전에 이메일로 회람하였다.

⑤ 각 회의마다 회의 7일전 경에 차기 회의 개최 안내 공문을 전 연구원에게 송부하였다.<sup>1)</sup>

⑥ 회의 때마다 전차 회의록을 접수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전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하나하나를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수정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결정사항을 재 승인하였다.

⑦ 마지막 회의에서(2021.7.29.) 그동안 심의해온 인증평가 관련 운영규정, 대학용 편람, 평가자용 편람, 표준절차 지침을 재점검하고 전체 심의하여 최종 정리된 규정, 편람 및 지침(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추진 경과

#### 1) 1차 회의<sup>2)</sup>

●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1:00~13:30

● 장소: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참석: 연구원 8명(김용준, 김정은, 박영재, 박인철, 오희경, 이기창, 이흥식, 정태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

● 경과

1. 1차 회의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에 따른 연구목표 및 세부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전체 토의하였다.

2. 연구진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 동의를 얻었다.

1) 연구개발 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 모음(부록 1.)

2) 제1차 회의록. (부록 4.2.)

3. 연구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4. 연구개발 용역비에 대해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5. ① 연구개발 방법 및 전략 : 아래 방법 및 전략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
    - A. 이 연구개발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연구팀 구성
      - 가. 동물보건사 인증 평가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수인원-이흥식 전임 원장, 동교협-박영재 동교협 회장
      - 나. 대학용 편람 제정  
수인원-김용준 원장, 동교협-김정은 교수
      - 다. 평가자용 편람 제정  
수인원-이기창 교수, 동교협-오희경 교수
      - 라. 표준절차지침 제정  
수인원-박인철 교수, 동교협-정태호 교수
    - B. 연구 수행 전략
      - 가. 목표별 연구팀은 상호 연구를 수행하여 합의한 자료를 해당 회의일 2일 전까지 수인원에 제출
      - 나. 수인원은 해당 자료를 전 연구원이 회의 전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메일로 회람하고 회의 자료로 복사하여 회의 준비
    - C. 연구수행 방법
      - 가. 대여자료인 수의학교육 2주기 인증 편람 및 지침을 참고하며, 또 다른 대여자료인 인증기준 개발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내용을 참고하여 편람 또는 지침을 작성하는 방법
      - 나. 기타 자료 참고하여 작성
      - 다. 조별 연구원이 전체 내용을 각각 작성한 후 교환하여 상호 확인하는 방법, 또는 전체 내용을 분할하여 작성 후 교환해서 확인하는 방법 등 자유롭게 작성
  - ②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 회의 일정에 따른 그 날의 결정 목표는 가급적 당일에 결정하기로 함.
  - ③ 위원회 운영지침, 방문평가기간, 인증기관 명칭, 인증평가비 등은 편람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제일 먼저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④ 편람 및 지침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편람 제정 및 지침 제정은 3주 후부터 다루기로 함.
  - ⑤ 편람 및 지침에 수록되어야 할 각종 위원회 사항은 2주 후에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함.
6. 연구위원회 명칭 확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로 확정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① 설치 필요 위원회

- 인증평가위원회
- 인증판정위원회
- 재심위원회
- 평가단

② 상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 또는 내규를 제정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인적 구성은 동수로 한다.

◎ 1차 회의 주요 사항:

- 1) 과제 추진 배경, 연구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소개
- 2) 연구개발 방법 및 회의진행 방법
- 3) 차기 회의 진행 전략 및 내용
- 4) 위원회 명칭 확정
-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수립 방향

2) 2차 회의<sup>3)</sup>

◎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11:00~15:30

◎ 장소: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참석자(8명): 김용준, 김정은, 박영재, 박인철, 오희경, 이기창, 이흥식, 정태호

◎ 경과

1. 1차 회의록(2021.6.10.)을 수정 없이 접수하였다.

2. 회의 안건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sup>4)</sup>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각 운영지침 제정 일자는 6.23으로 확정하였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운영지침(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 이 위원회 명칭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로 변경하여 확정하였다.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3) 2차 회의록. (부록 4.4.)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부록 5.)

-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 운영내규(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 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을 검토하여 승인하였다.
- ※ 이 8번(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야 할 운영규정(안)을 농식품부에서 참고하도록 제정하는 것이어서 제정 일자를 정하지 않았다.
- 3. 방문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평가 절차 및 방법”(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1차 회의에서 결정)을 검토 승인하였다.
- 4. 회의 안건 2) 인증평가 기간 및 평가비(안)을 검토하여 승인하였다.
- 5. 회의 안건 3) 인증기관(기구)협약: 현재로서 평가인증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로 결정
- 6. 차기 회의 안건
  - 1) 대학용 편람(안) 검토 심의
  - 2) 인증기준 위원회 운영지침 검토 심의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심의

◎ 2차 회의 주요 사항:

- 1)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또는 운영내규(인증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단 구성, 인증재심위원회, 인증유지관리지침, 심의위원회)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절차”
- 3) 인증평가 기간 및 인증평가비
- 4) 인증기관(기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 5) 인증 편람지침 개발 관련 보안유지를 위해 연구개발위원회에 참여한 각 위원으로부터 서약서 받음

3) 3차 회의

- ◎ 일시: 2021년 7월 1일(수). 11:00~17:10
- ◎ 장소: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 참석자(6명): 김용준, 김정은, 박영재, 오희경, 이기창, 이흥식(가나다순)
- ◎ 경과
  - 1. 2차 회의록(2021.6.23.)을 일부 수정하여 접수하였다.
    - 3차 회의록<sup>5)</sup> <붙임 1>과 같다.
  - 2. 회의 안건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등 추가 검토 사항
    - 3차 회의록<sup>5)</sup> <붙임 2>와 같다.

---

5) 3차 회의록 (부록 4.6.)

3. 회의 안건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 제정 일자는 2021.7.1.로 하였다.
  - 3차 회의록<sup>5)</sup> <붙임 3>과 같다.
4. 회의 안건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sup>4)</sup>
  - 평가·인증 윤리지침(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 제정일자는 2021.7.1.로 하였다.
  - 3차 회의록<sup>5)</sup> <붙임 4>와 같다.
5. 회의 안건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전체 내용(머리말부터 부록까지)을 검토 심의하여 기본안을 결정하였다.
  - 이 편람(안)은 3차 회의록<sup>5)</sup> <붙임 5>와 같다.
6. 차기 회의 안건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

◎ 3차 회의 주요 사항: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각종 위원회 규정 추가사항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4) 4차 회의

- ◎ 일시: 2021년 7월 8일(목). 11:00~13:10
- ◎ 장소: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 참석자(7명): 김용준, 김정은, 박영재, 박인철, 오히경, 이기창, 정태호
- ◎ 경과
  1. 3차 회의록 접수
    - 3차 회의록(2021.7.1.)을 접수 승인하였다.
    - 3차 회의록 접수 승인 내용은 4차 회의록<sup>6)</sup> <붙임 1>과 같다.
  2. 회의 안건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 전체 내용(머리말부터 부록까지)을 검토 심의하여 기본안을 결정하였다.
    - 이 편람(안)은 제4차 회의록<sup>6)</sup> <붙임 2>와 같다.
    - 본문은 “대외비” 자료이므로 별도 대외비 보고서에 수록

---

6) 4차 회의록. (부록 4.8.)

3. 회의 안건 2): 신설 양성기관 판정기준

- 신설 양성기관 인증 판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2021.3.31. 수립)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여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되, 인증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기로 함.

4. 회의 안건 3): 기타

- 인증기준 5.1.3. ○필수기자재 목록 중 “FIC규격 어질리티 장비 set” → “어질리티 장비 set”로 수정. \*FIC규격 삭제

5. 차기 회의 안건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
- 2) 기타

◎ 4차 회의 주요 사항: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
- 2) 신설 양성기관 판정기준
- 3) 인증기준 5.1.3. 필수기자재 목록 중 “FIC규격 어질리티 장비 SET”는 → “어질리티 장비 set”로 수정

4) 5차 회의

- ◎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11:00~17:30
- ◎ 장소: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 참석자(6명): 김용준, 김정은, 박인철, 오희경, 이기창, 이흥식
- ◎ 경과
  1. 4차 회의록 접수
    - 4차 회의록(2021.7.8.) 중 평가자용 편람을 수정하여 접수 승인하였다.
    - 평가자용 편람은 대외비 자료이므로 이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도록 한다.
  2. 회의 안건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표준절차 지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표준절차 지침 전체 내용(머리말부터 평가서식)을 검토 심의하여 기본안을 결정하였다.
    - 표준절차 지침은 대외비 자료이므로 이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는다.
  3. 회의 안건 2): 기타
    - ① 용어 정리 통일
      - 평가인증 → 평가·인증
      - “평가인증”과 “인증평가”는 해당 사항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함.

② 인증평가비 고려 사항: 인증평가 시 전국에 소재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숙박비와 출장비를 감안한 1인당 20만원의 예비비 책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

③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원칙

가. 인증위원회와 인증평가위원회는 동일 인물이어도 가능하다고 봄.

나. 인증판정위원회에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은 참여해서는 안됨.

다. 인증평가단 평가위원은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이 겸임할 수 있으나, 단 평가를 수행한 양성기관 최종보고서 심의 때는 제척되어야 할 것임.

라. 인증평가단 단장은 수인원 인사가 맡으며, 평가단은 수인원과 동교협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함.

④ 인증기준 수정 심의 및 결정사항

■ 인증기준 2.2.3. [참고자료]

● 2-13.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습지침서(학생용, 지도자용 각 1부)” →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과목별 실습지침서”로 수정

● 2-14.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제 학생이 사용한 실습지침서 각 1부(최근 2개 학기) →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지(최근 2개 학기)“로 수정

4. 차기 회의 안건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 표준절차 지침 최종 검토 심의

◎ 5차 회의 주요 사항: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표준절차 지침

2) 인증평가비 고려 사항

3) 용어 정리

① 평가·인증

② 동교협

4) 인증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단 구성 원칙

5) 인증기준 2.2.3. 참고자료 중 명칭 변경

## 6) 6차 회의

- 일시: 2021년 7월 29일(목). 11:00~17:20
- 장소: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참석자(7명): 김용준, 김정은, 박영재, 박인철, 오희경, 이기창, 이흥식
- 경과
  1. 5차 회의록(2021.7.15.)을 수정 없이 접수 승인
  2. 회의 안건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 최종 심의
    - 표준절차 지침(안)을 일부분 수정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 수정한 사항 요약은 6차 회의록<sup>7)</sup> <붙임 1> 내용과 같다.
  3. 회의 안건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대학용 편람 및 평가자용 편람 최종 검토
    - 대학용 편람과 평가자용 편람을 각각 일부분 수정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 대학용 편람 세부 수정사항 요약은 6차 회의록<sup>7)</sup> <붙임 2> 내용과 같다.
    - 평가자용 편람 세부 수정사항 요약은 6차 회의록<sup>7)</sup> <붙임 3> 내용과 같다.
  4. 회의 안건 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규정 공고
    - 평가인증 규정 공고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다.
    - 수정한 내용은 6차 회의록<sup>7)</sup> <회의결과 3)항> 내용과 같다.
    - 신설 양성기관 규정 심의
  5. 회의 안건 4): 기타
    - 1) 동물행동교정학 관련 장비: 전문적인 훈련용이 아닌 기본교육 관련 장비로 표시할 것을 권고.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규정집 "1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이 규정의 설치 이유가 없어지므로 전체 삭제하기로 함.

### ● 6차 회의 주요 사항: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안) 최종 결정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대학용 편람 최종결정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자용 편람 최종결정
-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규정공고 검토
- 5) 신설 양성기관 규정 심의

---

7) 6차 회의록. (부록 4.12.)

## 제3장 연구결과

### 제1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및 지침 개발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해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구성 및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전반 기능을 수행하며, 인증기관(기구)을 대신함.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인증평가 최종 결과를 판정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지침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인증평가와 관련한 제반 업무 관리 지침(평가단 구성, 자체평가보고서 적합성 심의, 최종보고서 심의, 연차보고서 심의 등)
  - 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내규: 평가단 구성과 평가단 수행 업무 관련 운영 내규
  -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재심위원회 운영내규: 인증신청기관이 평가인증 수행 후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의를 하여 판정을 내리는 위원회 규정
  -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평가·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개발·수정·보완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지침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규정**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 평가인증 전반에 걸친 인증규정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  
: 인증을 받은 후 인증기간동안 인증유지 관리를 위한 지침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 평가·인증 수행을 위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 제정 방법
  - 1) 기초안 수립: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편람 지침 개발위원회 2차 회의(2021.6.23.)
  - 2) 규정 일부 수정 및 보완: 2차 회의~6차 회의
  - 3) 제정 방법: 2차 회의<sup>1)</sup>(8개 규정) 및 3차 회의<sup>2)</sup>(2개 규정)에서 규정 연구개발팀이 회의에서 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전체 논의하여 규정안 수립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집 완성<sup>3)</sup>** : 각종위원회 운영지침 및 내규, 규정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

1) 제2차 회의록. (부록 4.4.)

2) 제3차 회의록. (부록 4.6.)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련 규정집. (부록 5.)

## 제2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제정

### 1. 대학용 편람의 제정 필요성

- 1)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인증평가 절차 전반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임.
- 2)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임.
- 3) 인증 신청기관이 평가단의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제반 사항 안내 지침임.
- 4)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 2. 대학용 편람 주요 내용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인증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
- 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 5) 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전반적인 사항
- 6) 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심의 전반적인 사항
- 7) 판정 및 평정기준
- 8)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 및 평가자료
- 9) 인증기준 항목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기술할 내용 제공(서술형 및 표 작성)
- 10)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대학용 편람 제정 방법

- 1) 제정 방법: 대학용 편람 연구개발팀이 회의에서 편람안을 발표하였고 내용을 전체 심의하여 대학용 편람안 수립
- 2) 기초안 수립<sup>2)</sup>: 3차 회의(2021.7.1.)
- 3) 일부 수정, 최종안 수립<sup>4)</sup>: 6차 회의(2021.7.29.)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제정 완성

- 3차 회의에서 편람(대학용) 기초안을 수립하여 6차 회의에서 최종 완성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은 부록 6.에 수록되어 있다.

---

4) 제6차 회의록. (부록 4.12.)

### 제3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 제정

#### 1. 평가자용 편람의 제정 필요성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 전반에 관한 지침이다.
- 2) 평가단의 서면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이다.
- 3) 평가단의 방문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이다.
- 4)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 5)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평정기준을 제공한다.

#### 2. 평가자용 편람 주요 내용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인증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
- 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 5) 평가단의 인증평가 수행 내용(서면평가, 방문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6) 평가단의 구성 방법, 평가단의 임무와 유의사항
- 7) 판정 및 평정기준
- 8)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방법
- 9) 항목별 평정기준 제공
- 10)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평가자용 편람 제정 방법

- 1) 제정 방법: 평가자용 편람 연구개발팀이 회의에서 편람안을 발표하였고 전체 내용을 심의하여 평가자용 편람안 수립
- 2) 기초안 수립: 4차 회의(2021.7.8.)
- 3) 일부 수정 최종안 수립: 6차 회의(2021.7.29.)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 제정 완성

- 4차 회의에서 편람(평가자용) 기초안을 수립하여 6차 회의에서 최종 완성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평가자용)은 “대외비”자료이므로 별도 “대외비” 보고서에 수록한다.

## 제4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 제정

### 1. 표준절차지침의 제정 필요성

- 1) 인증평가 전체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매뉴얼이다.
- 2) 서면평가 수행방법 및 평정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3) 방문평가 수행방법 및 평정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4) 평정표 및 보고서 작성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5) 인증평가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 2. 표준절차지침 주요 내용

- 1) 평가·인증 절차
- 2) 인증위원회와 평가단 구성
- 3) 인증평가 판정 및 평정기준
- 4) 서면평가 세부 수행 사항
- 5) 방문평가 세부 수행 사항
- 6) 최종보고서 작성
- 7) 평가 및 판정을 위한 서식 작성법
  - ① 인증평가단
  - ② 평가진행 요약
  - ③ 서면평가서 작성
  - ④ 보충자료 요청 내역서
  - ⑤ 영역별 평정표
  - ⑥ 항목별 분석보고서
  - ⑦ 방문일지
  - ⑧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
  - ⑨ 영역별 최종 평정표
  - ⑩ 최종 판정 의견서
  - ⑪ 최종보고서
- 8) 기타 인증·평가 수행 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법
- 9)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 제정 방법

- 1) 제정 방법: 표준절차지침 연구개발 팀이 회의에서 표준절차지침안을 발표하였고, 내용을 전체 심의하여 표준절차지침안을 수립함.
- 2) 기초안 수립: 5차 회의(2021.7.15.)
- 3) 일부 수정 최종안 수립: 6차 회의(2021.7.29.)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 제정 완성

- 5차 회의에서 표준절차지침 기초안을 수립하여 6차 회의에서 최종 완성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표준절차지침은 “대외비”자료이므로 별도 “대외비” 보고서에 수록한다.

## 제4장 고찰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 및 지침 개발 방법 및 과정의 적합성

#### 1)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 ● 연구원 구성 :

연구원 구성은 한국 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므로 연구원은 각 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같은 수로 배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동시에 문제 제기가 없었으므로 연구원 구성은 적합하였다고 판단된다.

각 단체로부터 4명의 연구진, 총 8명의 연구진을 구성하였으며, 금번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목표가 4개 분야(평가인증 관련 규정 개발, 대학용 편람 개발, 평가자용 편람 개발, 표준절차지침 개발) 이므로 각 단체에서 4개 분야에 연구원을 각각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구원이 구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목표 설정의 적합성

##### A. 연구개발 목표 설정

-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개발 목표는 제1차 회의(2021.6.10.)에서 설정하였다.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및 지침 제정
    - 2) 대학용 편람 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 준비를 위한 지침
    - 3) 평가자용 편람 제정: 인증평가단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실제 인증 평가 수행을 위한 기본 지침
    - 4) 표준절차지침 제정: 인증평가 수행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매뉴얼
- 이상의 연구개발 목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람 및 지침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적합한 목표 설정으로 판단되었다.

##### B. 연구개발 목표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평가 수행 적합성

- 연구개발에서 달성되는 목표에 의해 인증기준에 의한 인증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① 대학용 편람: 인증기준 항목별 자체평가보고서 기술 내용 및 작성표와 작성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② 평가자용 편람: 인증기준 항목마다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사항이 있으며, 평가사항을 다시 해설하여 평가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고, 또한 항목별 평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 또는 점수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표준절차지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서식 그리고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 및 서식을 제공하여 인증기준 항목별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④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및 지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위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 관리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인증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시하였다.
- 이상과 같이 연구개발 목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3) 연구개발목표 달성 과정의 적합성

#### ① 연구개발 방법 및 전략의 적합성

A. 이 연구개발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수인원과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수인원 - 이흥식 서울대 명예교수, 동교협 - 박영재 동교협 회장

나. 대학용 편람 제정  
수인원 - 김용준 원장, 동교협 - 김정은 교수

다. 평가자용 편람 제정  
수인원 - 이기창 교수, 동교협 - 오희경 교수

라. 표준절차지침 제정  
수인원 - 박인철 교수, 동교협 - 정태호 교수

#### B. 연구수행 전략

가. 목표별 연구팀은 상호 연구를 수행하여 합의 도출한 자료를 해당 목표 심의 회의 2일 전까지 수인원에 제출한다.

나. 수인원은 해당 자료를 전 연구원이 회의 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회람하고 회의 자료로 복사하여 준비한다.

#### C. 연구 수행 방법

가. 수의학교육 2주기 인증편람 및 지침, 등 유사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편람 및 지침을 제정한다.

나. 연구팀별 연구원이 전체 내용을 각각 작성한 후 교환하여 상호 확인 및 합의하는 방법 또는 전체 내용을 분할하여 각각 작성한 후 교환해서 확인 및 합의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 개발한다.

- D. **목표 달성 원칙:** 회의 일정에 따른 그 날의 결정 목표는 당일 결정하기로 하였다.
- E. 위원회 운영지침, 인증평가 절차, 서면평가/방문평가 기간, 인증기관 명칭, 인증평가 비 등은 편람 및 지침 수립의 기준이 되므로 가장 먼저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② 연구 수행 일정의 적절성

연구 개발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2021.6.1.~7.31.) 연구개발 목표에 따른 일정<sup>1)</sup>을 정하여 해당 일에 반드시 그 목표대로 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진 1차 회의(2021.6.10.): 연구 역할 분담 및 연구 일정
- 2차 회의(2021.6.2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 3차 회의(2021.7.1.): 대학용 편람 검토 심의
- 4차 회의(2021.7.8.): 평가자용 편람 검토 심의
- 5차 회의(2021.7.15.): 표준절차지침 검토 심의
- 6차 회의(2021.7.29.): 대학용 편람, 평가자용 편람, 표준절차지침, 최종 심의

## ③ 연구개발 목표 합의 과정

- A. 연구개발 목표 팀별 과제를 수립하기까지 연구원 상호간 합의 과정을 거쳤다.
- B. 연구목표별 심의 회의 2일 전에 심의과제안(예:대학용 편람(안))을 연구원 전체에 회람하여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C. 회의 당일에 해당 과제를 연구팀이 발표하고 전체 내용을 page별 검토 확인하여 전체 안을 결정하였다.

## 4) 소결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인증 수행 및 인증신청기관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이 되는 편람 및 지침 개발은 2개월의 짧은 연구개발 기간이었으나, 연구진의 구성, 연구일정 조정, 연구개발 수행 방법, 연구개발 목표 결정과정에서 적합한 방법 및 전략을 갖추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된다.

## 2. 평가인증 관련 규정(운영지침, 내규, 운영규정), 편람, 표준절차지침 제정의 적합성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규정 및 지침 제정

-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및 규정은 수의학교육인증원을 비롯하여 의료계 평가원(의평원, 치평원, 한평원, 간평원, 약평원)의 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였다.

1) 연구 수행 일정표. 연구개발 1차 회의자료. (부록 4.1.)

-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위해 여러 위원회의 운영 관리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운영지침 또는 규정으로 수립되었다.
- ③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이 수립되었다.
- ④ 인증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 절차 단계에 따라 인증평가를 관리하는 인증판정위원회, 인증평가위원회의 운영지침이 수립되었다.
- ⑤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한 경우를 위한 인증재심위원회 운영지침이 수립되었다.
- ⑥ 인증기준의 개선, 수정, 보완을 위해 인증기준을 심의하는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이 수립되었다.
- ⑦ 인증평가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내규를 수립하였다.
- ⑧ 인증평가 기본 원칙 및 절차 전반을 다루는 인증규정, 인증유지관리를 위해 연차보고서를 평가 관리하는 인증유지관리지침, 인증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증 윤리지침도 각각 수립하였다.

## 2) 대학용 편람 제정 적합성

-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대학용 편람 제정을 위해 수의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 대학용 편람 등을 참고하였다.
- ② 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대학용 편람에 인증절차 전반에 관한 안내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을 제시하였다.
- ③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④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 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 ⑥ 인증신청기관에서 평가단의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⑦ 인증 판정 및 평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 ⑧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 및 평가자료를 제시하였다.
- ⑨ 특히,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평가 항목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기술할 내용 및 작성 방법(서술형 및 표 작성 안내)을 제시하였다.

## 3) 평가자용 편람 제정 적합성

-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평가자용 편람 제정을 위해 수의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 평가자용 편람 등을 참고하였다.
- ② 이 평가자용 편람은 평가단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③ 평가단의 인증평가 수행 사항(서면평가, 방문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전반에 관해

평가단 평가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 ④ 평가단의 구성 방법과 평가단의 임무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 ⑤ 인증평가 후 판정을 위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⑥ 특히,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⑦ 또한,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정기준을 수립하여 평가자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사항 개수별로 용이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 4) 표준절차지침 제정 적합성

-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 제정을 위해 수의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 등을 참고하였다.
- ② 이 표준절차지침은 인증평가 전체 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매뉴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③ 서면평가 세부 수행사항을 제시하였다.
- ④ 방문평가 세부 수행사항을 제시하였다.
- ⑤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 ⑥ 인증평가 및 판정을 위한 서식 작성법을 제시하였다.
  - 서면평가서 작성 방법
  - 영역별 평정표 작성 방법
  - 인증기준 영역내 각 항목별 분석보고서 작성 방법
  - 방문일지
  -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 작성법
  - 영역별 최종 평정표 작성법
  - 최종 판정의견서 작성
- ⑦ 인증·평가 수행 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법을 제시하였다.

#### 5) 소결론

이 연구에서 개발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및 지침, 대학용 편람, 평가자용 편람, 표준절차지침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위한 전반사항에 대해,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및 내용이 대부분 적합하게 포함되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 제5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천만,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보다 양질의 역량 있고 체계를 갖춘 수의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수의료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작업환경에 처하게 되므로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실습 이수가 필요하며, 동물보건사가 되고자 하는 이는 수의사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수 체계 및 교육환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수의사법 제16조4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한 졸업자에게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인증기준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인증기준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수행되며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 판정을 받게 된다.

2021.1~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제정을 요청받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연구기관이 되어 인증기준을 수립하였고, 인증평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침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을 요청받아 2021.6~7월까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 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 및 결론을 얻었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해 인증절차 단계별 인증평가 수행에 관한 여러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 설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수행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3. 인증평가 수행을 관리하는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평가결과를 판정하는 인증판정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4.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한 경우를 위한 인증재심위원회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5. 인증기준의 개선,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준을 심의하는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6. 인증평가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인증평가단에 대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내규를 수립하였다.

7. 인증평가 기본 원칙 및 절차 전반을 다루는 인증규정, 인증을 부여받은 후 인증유지관리를 위해 연차보고서를 평가 관리하는 인증유지관리지침, 인증평가 수행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증 윤리지침도 각각 수립하였다.

8. 인증을 준비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용 편람을 제정하였다.

9. 대학용 편람에서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10. 대학용 편람에서 평가단의 방문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1. 대학용 편람에서 인증판정 및 평정기준을 제시하였다.

12. 대학용 편람에서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 및 평가자료를 제시하였다.

13. 대학용 편람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기술할 내용 및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14. 평가자용 편람에서 평가단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15. 평가자용 편람에서 평가단의 인증평가 수행사항인 서면평가, 방문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16. 평가자용 편람에서 평가단이 인증평가 후 판정을 위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제시하였다.

17. 평가자용 편람에서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8. 평가자용 편람에서 인증기준 영역 내 항목별 평가사항 개수별로 평정기준을 제시하였다.

19. 표준절차지침은 인증평가 전체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매뉴얼로 제공하였다.

20. 표준절차지침에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세부 수행사항을 제시하였다.

21. 표준절차지침에서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22. 표준절차지침에서 인증평가 및 판정을 위한 각종 서식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 연구에서 개발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서 요구된 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뿐 아니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록했다고 판단된다.

인증평가 수행관련 인증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등, 인증평가 수행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규정과 지침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대학용 편람은 인증신청 대학이 인증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단의 방문평가 준비, 인증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됨으로써 인증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

평가자용 편람과 표준절차지침은 실제적인 인증평가 수행 및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판정 기준과 판정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평가단의 인증평가수행에 올바른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의 1천만 반려동물 및 1,500만 반려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상황 및 산업에서 인체 의료서비스 못지 않은 향상된 수의료 서비스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수의료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수의사를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양질의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위하여, 인증기준에 의한 올바른 인증평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표준 편람과 지침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된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관련 공문 .....	43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계획서 .....	73
3. 동물보건사제도 관련 법규 .....	93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회의자료 및 회의록(1차~3차) ..	101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집.....	183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대학용 편람 .....	211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평가기준집 .....	347



# 부록 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관련 공문」

- 부록 1.1. 동물보건사 편람지침 개발 위원회 1차 회의
- 부록 1.2. 농식품부 연구개발계획서
- 부록 1.3. 동물보건사 편람지침 개발 위원회 2차 회의
- 부록 1.4. 동물보건사 편람지침 개발 위원회 3차 회의
- 부록 1.5. 동물보건사 편람지침 개발 위원회 4차 회의
- 부록 1.6. 동물보건사 편람지침 개발 위원회 5차 회의
- 부록 1.7. 동물보건사 편람지침 개발 위원회 6차 회의
- 부록 1.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
- 부록 1.9.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등 개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  
정 통지
- 부록 1.1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
- 부록 1.11.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계획
- 부록 1.1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승인 알림



## [부록 1.1.]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 연구원 각위

제목 동물보건사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개최

---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동물보건사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가칭) 연구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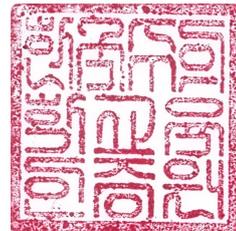
일시 : 2021.06.10.(목), 11: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붙임 : 1.동물보건사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회의안내 1부.

2.연구개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서 1부 . 끝.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정은(수성대 교수), 박영재(기전대 교수), 박인철(강원대 교수), 오희경(장안대 교수), 이기창(전북대 교수), 이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정태호(중부대 교수),  
(가나다 순, 존칭 생략)

---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시행 수인원21-747      (2021. 06. 04.)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6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 <http://www.abovek.or.kr>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가칭)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8명)

1) 연구원(8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오히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4.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1) 연구 개발 수행 개요 소개

- 2) 연구 역할 분담 및 연구 일정
- 3) 연구 수행 진행 방법
- 4) 연구위원회 명칭 확정
-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상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위원회 및 조직 구성 결정
- 6) 차기 회의안건
  - ①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 ②인증평가 수행상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각종위원회 운영지침
  - ③인증평가수수료 및 방문평가 수행기간

## 5. 기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 (목적)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정책 연구 수행

□ (기간 및 사업비) '21.6~7월(2개월), 20백만원\*

\*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3940-33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320-01)

□ (연구기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공동)

□ 주요 정책 개발 내용

① 편람은 평가자용과 대학용으로 구별하여 마련

- 평가자용 편람은 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방법 반영
- 대학용 편람은 자체평가서 작성 및 방문평가 준비방법 반영

② 지침은 전체 인증평가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 마련

- 동물보건학 교육 평가·인증절차 및 세부사항, 평가단 구성
- 대학평가의 평점 및 인증기간 판정 기준
-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방문평가, 평가 서식과 작성법

- 인증평가에 필요한 각종 표준 서식 등

## □ 협조사항

○ 평가기준 개발계획 및 소요비용 내역, 보조금 교부신청('21.6.4일  
까지)

○ 정책 연구과제 추진 및 최종 결과 보고\*('21.6~8월)

\* 정책 연구과제 추진 중 2회 이상 회의 등을 통해 우리부 의견 수렴

[부록 1.2.]



한 국 수 의 학 교 육 인 증 원

수 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참고) 방역정책과장

제 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역정책과-4145(2021.05.28.) 관련입니다.
3. 귀 부에서 요청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회와 공동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 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연구 개발 계획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시행 수인원 21-748      (2021. 06. 04.)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8-6 (수의과학회관 7층) / <http://www.abovek.or.kr>  
전화 031-702-8686      전송 031-702-1020 / [kvma@kvma.or.kr](mailto:kvma@kvma.or.kr) /

<붙임1>

## 연구 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은 [부록 2. 연구개발 계획서]로 대체>

## [부록 1.3.]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 신 연구원 각위

## 제 목 동물보건사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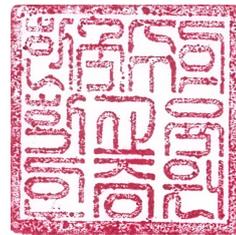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연구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06.23.(수), 11: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붙임 : 1.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2차 회의 안내 1부.  
2.연구개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서 1부 . 끝.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정은(수성대 교수), 박영재(기전대 교수), 박인철(강원대 교수), 오희경(장안대 교수), 이기창(전북대 교수),  
이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정태호(중부대 교수),  
(가나다 순, 존칭 생략)

---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시행	수인원21-750		(2021. 06. 21.)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6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 http://www.abovek.or.kr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 2차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8명)

### 1) 연구원(8명)

####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 오히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 4. 회의 안건

- ①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 ② 인증평가 수행 상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각종위원회 운영지침
- ③ 인증평가수수료 및 방문평가 수행기간
- ④ 기타

<붙임 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부록 1.1.의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참고>

[부록 1.4.]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 연구원 각위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연구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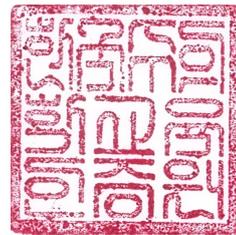
일시 : 2021.07.01.(목), 11: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붙임 : 1.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 안내 1부.

2.연구개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서 1부 . 끝.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정은(수성대 교수), 박영재(기전대 교수), 박인철(강원대 교수), 오희경(장안대 교수), 이기창(전북대 교수), 이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정태호(중부대 교수), (가나다 순, 존칭 생략)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시행 수인원21-752      (2021. 06. 29.)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6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 <http://www.abovek.or.kr>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 3차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7월 1일(목),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8명)

1) 연구원(8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오희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4. 회의 안건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위원회 운영지침, 등  
추가 검토사항

②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③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 편람(양성기관용)

④ 기타

<붙임 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부록 1.1.의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참고>

[부록 1.5.]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 연구원 각위

제 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연구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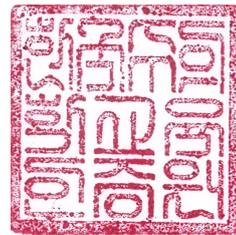
일시 : 2021.07.08.(목), 11: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붙임 : 1.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 안내 1부.

2.연구개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서 1부 . 끝.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정은(수성대 교수), 박영재(기전대 교수), 박인철(강원대 교수), 오희경(장안대 교수), 이기창(전북대 교수), 이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정태호(중부대 교수), (가나다 순, 존칭 생략)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시행 수인원21-754      (2021. 07. 06.)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6      / <http://www.abovek.or.kr>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mailto: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 4차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7월 8일(목),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8명)

1) 연구원(8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오히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4. 회의 안건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 편람(평가자용)

② 신설 양성기관 판정기준(7.1일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함)

③ 기타

<붙임 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부록 1.1.의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참고>

[부록 1.6.]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 연구원 각위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연구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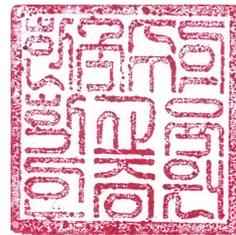
일시 : 2021.07.15.(목), 11: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붙임 : 1.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5차 회의 안내 1부.

2.연구개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서 1부 . 끝.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정은(수성대 교수), 박영재(기전대 교수), 박인철(강원대 교수), 오희경(장안대 교수), 이기창(전북대 교수), 이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정태호(중부대 교수), (가나다 순, 존칭 생략)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시행 수인원21-755      (2021. 07. 13.)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6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 <http://www.abovek.or.kr>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 5차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8명)

1) 연구원(8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오희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4. 회의 안건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 표준절차지침(안)

② 기타

<붙임 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부록 1.1.의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참고>

[부록 1.7.]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 신 연구원 각위

제 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연구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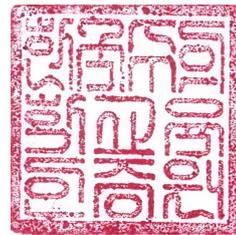
일시 : 2021.07.29.(목), 11: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붙임 : 1.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6차 회의 안내 1부.

2.연구개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서 1부 . 끝.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정은(수성대 교수), 박영재(기전대 교수), 박인철(강원대 교수), 오희경(장안대 교수), 이기창(전북대 교수), 이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정태호(중부대 교수), (가나다 순, 존칭 생략)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시행 수인원21-761      (2021. 07. 26.)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6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 <http://www.abovek.or.kr>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제 6차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8명)

1) 연구원(8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오히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4. 회의 안건

-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 표준절차지침(안) 최종 심의
-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대학용 편람 및 평가자용 편람 최종 검토
- ③ 기타

<붙임 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부록 1.1.의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참고>

[부록 1.8.]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경유)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

1. 관련 :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2. 우리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을 불임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공동)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21.6.4.(금)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김정주 방역정책과장 이봉식 (전경 2021. 5. 28.)

협조자

시행 방역정책과-4145 (2021.05.28)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 / http://www.mafra.go.kr  
정책과 (어진동)

전화번호 044-201-2523 팩스번호 044-868-0628 / goodluck79@korea.kr / 비공개(5)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부록 1.9.]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등 개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1. 관련 : '21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승인원 21-748(2021.6.4.)호.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연구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귀 원에서는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운영지원과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보조금 송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부,  
2. 사업추진계획서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김정주 방역정책과장 정결 2021.6.15. 이동식

첨조자

시행 방역정책과-4514 (2021. 6. 15.)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승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3 팩스번호 044-868-0628 / goodluck79@korea.kr / 비공개(4,5)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부록 1.10.]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

1. 우리 부는 동물 간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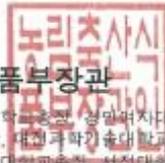
가. 일 시 : 2021. 7. 9.(금) 14:00-16:00

나.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4층)

다. 목 적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등

라. 내 용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발표 및 토론,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가톨릭상지대학교총장,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경성대학교총장, 강원서지대학교총장, 계명문화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대경대학교총장,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동아보건대학교총장, 동원대학교총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부산경신대학교총장, 서경대학교총장, 세명대학교총장, 수성대학교총장, 신구대학교총장, 연성대학교총장, 연암대학교총장, 우송정보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장안대학교총장, 전주기전대학교총장, 중부대학교총장, 예전대학교총장, 호서대학교총장,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서울호서실용전문학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촌사회복지과장, 농촌산업과장, 농촌여성정책팀장, 농촌재생에너지팀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합관추진팀장, 농업정책과장, 농지과장, 농업금융정책과장, 재해보험정책과장, 경영인력과장, 식량정책과장, 식량산업과장, 농업기반과장, 간척지농업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농업통상과장, 검역정책과장, 통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구제역방역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식품산업정책과장, 식품산업진흥과장, 외식산업진흥과장, 수출진흥과장, 국가식품물류센터추진팀장, 유통정책과장, 원예산업과장, 원예경영과장,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농산업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종자생명산업과장, 농기자재정책팀장, 동물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대책반장, 빅데이터전략담당관, 공익직불정책과장, 식생활소비진흥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기획조정과장),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도국인증원장, 한국동물병원협회장, 한국동물보건시대학교육협회장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김정주** 방역정책과장 **전길** 2021. 7. 1. **이동식**

협조자

시행 방역정책과-4810 (2021. 7. 1.)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음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 http://www.mafra.go.kr 정책과 (어진동)

전화번호 044-201-2523 팩스번호 044-868-0628 / goodluck79@korea.kr / 내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부록 1.1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공청회 개최계획**

- 목 적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 일 시 : 2021. 7. 9.(금) 14:00 ~ 16:0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 참석자 : 100명 내외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행사 인원 제한
  - 농식품부 : 방역정책국장, 방역정책과장
  - 토론자 : 김용준 원장(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좌장), 박인철 교수(강원대), 정태호 교수(충부대), 김정은 교수(수성대), 농식품부 관계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준비 대학(30여개소), 한국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 주요내용 : 주제 발표(양성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설명),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일정 소개	
14:05~14:10	5'	○ 인사말씀	* 방역정책국장
14:10~14:30	20'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설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14:30~15:50	80'	○ 토론(패널+청중) 및 질의·응답	
15:50~16:00	10'	○ 총평 및 내용 정리(좌장)	

\*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부록 1.12.]

참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단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경유)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승인 알림

1. 관련 : 수인원 21-761(2021. 7. 30.)호.
2. 귀 원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후속 조치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사업기간	'21.6.1. ~'21.7.31.	'21.6.1. ~'21.8.2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연구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 확정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추가 논의 필요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김정주** 방역정책과장 **전갑** 2021. 7. 30.  
이동식  
협조자  
시행 방역정책과-5428 (2021. 7. 30.)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3 팩스번호 044-868-0628 / [goodluck79@korea.kr](mailto:goodluck79@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부록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계획서」**



## [부록 2.]

# 연구 개발 계획서

제목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 연구개발

우리나라는 현재 반려동물 인구 1천 5백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수의의료계는 사회로부터 양질의 수의의료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수의 의료계의 80%를 차지함과 동시에 고도의 의료기술 성장과 함께 인체 의료계 못지않은 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반려동물산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2019.08.27.에 공표하여 2021.08.28.에 시행되도록 추진하였다.

관련 법규(수의사법 제16조 4)에 따르면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인증을 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평가인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증기준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받았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수행기관이 되어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와 함께 2021.01~03월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인증기준(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안)이 수립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결과는 2021.5월에 보고서로 작성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은 인증평가의 원칙과 기본만을 제공한 것으로 추후 인증평가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그리고 최종 판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편람 및 지침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이 제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 되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이 수행되도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 2021.5월에 의뢰해왔다.

이 연구개발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안)이 수립된 이후 인증 신청 기관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 등 평가·인증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편람 및 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 연구개발목표

1. 편람은 평가자용과 대학용으로 구별하여 마련
  - 평가자용 편람은 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방법 반영
  - 대학용 편람은 자체평가서 작성 및 방문평가 준비방법 반영
2. 지침은 전체 인증평가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 마련
  - 동물보건학 교육 평가·인증절차 및 세부사항, 평가단 구성
  - 대학평가의 평점 및 인증기간 판정 기준
  -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방문평가, 평가 서식과 작성법
  - 인증평가에 필요한 각종 표준 서식 등

## 연구 수행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개발에서 개발 목표로 하는 것은 편람 및 지침 제정이다.

1) 편람은 평가자용과 대학용으로 구별된다.

A. 평가자용 편람은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B. 대학용 편람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2) 지침은 인증평가 전체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매뉴얼이다. 즉, 동물보건학 교육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사항, 평가위원 인적자원과 평가단의 구성, 대학평가의 평점 및 인증기간 판정 기준,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방문평가, 평가 서식과 작성법을 제시하고, 각종 표준 서식을 포함한다.

●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람 및 지침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수의학교육인증

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으로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용(대학용) 인증·평가 편람 제정

- 대학용 편람은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인증평가단의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 이 가이드라인은 인증신청대학의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자료이므로 공개가 가능하다.
- 대학용 편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 제1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개요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실시 배경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필요성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관련 법규

### □ 제2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의미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기본 방향

### □ 제3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그 역할

1. 인증평가위원회
2. 인증판정위원회
3. 인증기준위원회
4. 기타 위원회

### □ 제4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기대효과

### □ 제5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1. 평가인증절차
2. 평가절차흐름도
3. 인증·평가 수수료

### □ 제6장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1.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의의
2.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
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4. 자체평가의 취지
5. 자체평가의 절차

- 6. 자체평가보고서 구성과 서식
- 제7장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 1. 평가단 구성
  - 2. 서면평가
  - 3. 방문평가
- 제8장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 및 논평서 작성
- 제9장 판정 기준
  - 1. 판정 기준
  - 2.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점수
  - 3. 인증 유형별 판정 기준(점수 계량화)
- 제10장 인증주기 및 인증유형
- 제11장 인증 신청기관 인증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 절차
- 제12장 용어정리
- 제13장 영역별 인증기준 요약
- 제14장 영역별 인증기준
  - 1. 조직과 운영 영역
    - 1.1. 교육목적과 목표
    - 1.2. 조직과 재정
    - 1.3. 전략과 계획
  - 2. 교육과정 영역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 2.3. 교육과정개선
  - 3. 학생 영역
    - 3.1. 학생지도체제와 운영
    - 3.2. 학생활동과 지원
    -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 4. 교수 영역
    - 4.1. 전임교수
    -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 5.1. 교육시설 및 설비
    - 5.2. 연구시설과 설비

### 5.3. 시설설비의 관리

#### □ 부록 관련 규정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평가자용 편람 제정

- 평가자용 편람은 인증평가 절차에서 인증 평가단이 인증신청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수행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 이 가이드라인은 평가단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술되므로 평가단을 제외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자용 편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 제1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의미와 기본 방향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의미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기본 방향

#### □ 제2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역할

1. 인증평가위원회
2. 인증판정위원회
3. 인증기준위원회
4. 기타 위원회

#### □ 제3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의 기대효과

#### □ 제4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1. 평가 인증 절차
2. 평가대상 선정

#### □ 제5장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1.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의의
2.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
3. 자체평가의 취지
4. 자체평가의 절차
5. 자체평가보고서 구성과 서식

#### □ 제6장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1. 평가단 구성
2. 서면평가
3. 방문평가

- 제7장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 및 논평서 작성
- 제8장 인증신청기관 인증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 절차
- 제9장 인증 주기 및 인증 유형
- 제10장 평가위원의 임무와 자세
  1. 서면평가
  2. 현장 방문평가
  3. 기준해석
  4. 방문평가 종결
  5. 평가보고서 쓰기
  6. 인증 결정
  7. 현장 방문평가지 유의사항
- 부록 관련규정
- 제11장 용어 정의
- 제12장 영역별 인증기준 요약
- 제13장 영역별 평정기준
  1. 조직과 운영 영역
  2. 교육과정 영역
  3. 학생 영역
  4. 교수 영역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지침 제정

- 지침은 인증평가 전체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매뉴얼이다. 즉, 동물보건학 교육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 사항, 평가위원 인적자원과 평가단의 구성, 대학평가의 평점 및 인증 기간 판정 기준,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방문평가, 평가 서식과 작성법을 제시하고, 각종 표준 서식을 포함한다.
- 표준절차 지침은 인증평가단의 평가위원이 사용해야 할 지침으로 평가위원을 제외한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 표준절차 지침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 사항

#### II. 평가위원 인적자원과 평가단의 구성

1. 목적
2. 용어
3. 평가위원 인적자원 구성과 관리
4. 평가위원 인적자원 교육
5. 평가위원의 자격 및 선정
6. 평가위원의 역할
7.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평가단 연수

### Ⅲ.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평정 및 인증기간 판정기준

#### Ⅳ. 서면평가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
4. 세부지침
5. 서면평가 절차

#### Ⅴ.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
4. 세부지침

#### Ⅵ. 방문평가

1. 목적
2. 방문평가 일정 협의 및 조정
3. 방문평가 절차
4. 방문평가 시 주요 활동
5. 방문평가 시 유의사항
6. 방문평가 마무리논평 및 총평
7. 방문평가 후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 Ⅶ. 평가 서식과 작성법

1. 인증평가보고서 표지
2. 인증평가단 명단
3. 평가진행 요약
4. 서면평가서
5. 서면평가보고서
6. 자체평가보고서 보충자료 요청 내역서

7. 영역별 평정표
8. 영역별 분석보고서
9. 평가결과 변경사유 설명서
10. 방문평가 마무리논평서
11. 방문일지
12. 방문평가보고서
13. 14일 답변서
14. 14일 답변 검토 의견서
15. 예비논평서
16. 예비논평 답변서
17. 예비논평 답변 검토 의견서
18. 최종논평서
19. 영역별 최종 평정표
20. 최종 판정 의견서
21. 최종보고서

#### Ⅷ. 기타 서식

1. 방문평가 총평
2. 방문평가에 대한 평가(평가단장용)
3. 방문평가에 대한 평가(평가위원용)
4. 방문평가 점검표

#### 부록. 서식

### 기대효과

1.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용(대학용) 편람은 인증신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평가단의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2.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평가자용 편람은 인증평가단이 실제적으로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3.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은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인증 여부 및 인증 유형을 판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동물보건사 편람 및 지침 제정을 통해 인증신청기관은 인증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증평가 평가단은 편람과 지침을 이용하여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성교육기관의 교육 표준화를 이루어 양질의 동물보건사 양성 및 배출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수의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결과 동물복지 선진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확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수의료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수행 일정표

연구수행내용	2021.6			2021.7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7~6.11	6.14~6.18	6.21~6.25	6.28~7.2	7.5~7.9	7.12~7.16	7.19~7.23	7.26~7.31
연구진 1차회의 (역할분담 및 일정 조정) ※농식품부 참석	√							
2차회의 ①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결정 ②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③인증평가비 ④ 방문평가 수행 기간			√					
3차회의 대학용 편람 심의				√				
4차회의 평가자용 편람 심의					√			
5차회의 표준절차 지침 심의						√		
6차 회의 편람 및 지침 최종 검토 ※농식품부 참석							√	
최종보고서 제출								√

## 참여 연구원 및 자문위원

기관	성명	소속/지위	역할	연구분야
한국수의학 교육인증원	김용준	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책임연구 원	-연구개발계획서 및 최종 보고서 작성(총괄) -대학용 편람 개발
	이흥식	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원	각종 위원회, 평가단 등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지침/내규 개발
	박인철	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연구원	표준절차지침 개발
	이기창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	연구원	평가자용 편람 개발
한국동물보 건사대학교 육협회	박영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주 기전대학교 교수	연구원	각종 위원회, 평가단 등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지침/내규 개발
	오희경	장안대학교/교수	연구원	평가자용 편람 개발
	정태호	중부대학교/교수	연구원	표준절차 지침 개발
	김정은	수성대학교/교수	연구원	대학용 편람 개발

## 보조금 집행계획서(안)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부가세 포함)	세부내역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 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000,000원	○연구원 수당 -연 구원8명x1,200,000 원=9,600,000원 ○연구책임자 수당 -책임자 1명 x1,000,000원 =1,000,000원 ○ 회의 참가수당 -연구원 8명 x150,000원x6회 =7,200,000원 ○회의 경비 -1회 200,000원x6 회=1,200,000원 ○자료 인쇄비 및 보고서 작성비 -1,000,000원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사업명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 보조사업자

- 신청업체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 대표자 : 원장 김용준

###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가. 목 적

- 수의사법 제16조의 4조(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정책 연구 수행

#### 나. 주요 정책 개발 내용

####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수행을 위한 편람 제정

##### 1. 평가자용 편람

인증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 방법 반영

##### 2. 대학용 편람

인증신청대학(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인증평가단의 방문평가 준비 방법 반영

#### 동물보건사 평가 인증 수행을 위한 지침 제정

- 지침은 인증평가 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 마련

##### 1. 동물보건학 교육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사항

2. 평가단 구성
3. 대학 인증평가의 평점 및 판정 기준
4. 인증기간 및 인증유형
5.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방문평가, 평가서식과 작성법
6. 인증평가에 필요한 각종 표준 서식
7. 기타 인증 평가 실제 수행에서 필요한 사항

사업기간 : 2021. 6 ~ 2021. 7

보조사업 예산 및 교부신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국고 보조금	보조금 금번신청액
총 금액	20,000,000	20,000,000	20,000,00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20,000,000	20,000,000	14,000,000
부 담 율(%)	100%	100%	70%

첨부서류 : 자금집행계획서, 계좌이체 의뢰서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6월 4일

보조사업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서(안)

보조사업비 : 20,000,000원

총괄표

항 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부가세포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000,000원
	합계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보조금집행계획서(안)

항 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부가세포함)	세부내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000,000원	○연구원 수당 -8인x120만원×1회(960만원) ○연구책임자 수당 -1인x100만원(100만원) ○회의 참가수당 -8인x15만원x6회(720만원) ○회의 경비 -20만원×6회(120만원) ○자료 인쇄비 및 보고서 작성비 -100만원
	합계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 계좌이체 의뢰서

1. 일 금 : 금 이천만원정(₩20,000,000)
2. 내 역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상기 금액을 아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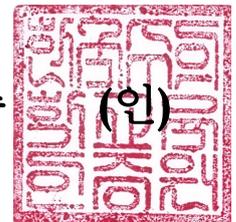
거래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 294537-04-010279

예금주명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21. 6. 4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김 용 준 (인)



# 예금통장 사본


**KB국민은행**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님**  
**KB기업종합통장-기업자유**

계좌번호 (Account No.) **294537-04-010279**  
 예금종류 **기업자유예금**

결산일 **3,6,9,12월 계2금요일**  
 가입하신날 **2014년 05월 12일**

계좌관리점 **서현동** ☎ **1588-9999** 주식회사 **국민은행**  
 통장발행회차 **1회차** FAX **031)708 -8057** 실명확인필  
A800-001 (14x17.5) 열보성지190g/m<sup>2</sup>, OCR105g/m<sup>2</sup> (이 통장은 표지를 합하여 12장 입니다) K01

인감 (서명)  
(SIGNATURE)



KB국민은행  
 대표이사인감용 인장 직역 400원  
 유효기간: 2014년 5월 12일 ~ 2015년 5월 11일

**자동이체 연결계좌 내역**

차월	등록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이체금액	이체일	등록점
3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부록 3.**  
**「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법규」**



### [부록 3.]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수의사법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신설 2019. 8. 27.>[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부터 발생한다.

## 수의사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74호, 2020. 5.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22, 2523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2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3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4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5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6

**부칙** <제1654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부칙**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질병관리청장” 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록 4.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부록 4.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1차 회의자료
- 부록 4.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1차 회의록
- 부록 4.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2차 회의자료
- 부록 4.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2차 회의록
- 부록 4.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3차 회의자료
- 부록 4.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3차 회의록



## [부록 4.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연구개발 1차 회의 자료

#### (\*가칭 동물보건사 인증 편람 지침 개발 위원회)

1. 일시 : 2021. 6.10(목), 11: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3. 참석대상자(8명)

1) 연구원(8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오희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4. 연구개발 내용 소개 : 연구책임자

1)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 소개

2) 연구진 역할 분담 방향 및 보조금 집행 계획서 소개

5.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1) 연구 역할 분담 및 연구 일정

: \* 연구개발계획서 참고

2) 연구 수행 진행 방법

① 연구개발 방법 및 전략

A. 이 연구개발에서 달성해야할 목표에 대해 연구 팀 구성

가. 동물보건사 인증 평가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수인원 - 이흥식 전임 원장, 동보협 - 박영재 동보협 회장

나. 대학용 편람 제정

수인원 - 김용준 원장, 동보협 - 김정은 교수

다. 평가자용 편람 제정

수인원 - 이기창 교수, 동보협 - 오희경 교수

라. 표준절차지침 제정

수인원 - 박인철 교수, 동보협 - 정태호 교수

B. 연구 수행 전략

가. 목표별 연구팀은 상호 연구를 수행하여 합의한 자료를 해당

회의일 2일전까지 수인원에 제출

나. 수인원은 해당 자료를 전 연구원에 이메일 회람하고 회의자료로 준비

C. 연구수행방법

가. 대여자료인 수의학교육 2주기 인증 편람 및 지침을 참고하여 대여자료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기준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

나. 기타 자료 참고하여 작성

②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 : 회의 일정에 따른 그 날의 결정 목표는 가급적 당일 결정하기로 하는 방법

③ 위원회 운영지침, 방문평가기간, 인증기관 명칭, 인증평가비, 등은 편람에 수록되어야할 내용이므로 제일 먼저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④ 편람 및 지침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3주후부터 편람 제정부터 다루기로 하는 방법. 2주 동안 제정 준비를 하여 2주후에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부터 다루기로 하는 방법

3) 연구위원회 명칭 확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 위원회」(\*가칭)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상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위원회 및 조직 구성 결정

## 5. 기타

## 6. 차기 회의 안건

- ①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 ② 인증평가 수행 상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각종위원회 운영지침
- ③ 인증평가수수료 및 방문평가 수행기간
- ④ 기타

## 7. 차기 회의 일정 조정

## 8. 폐회

### ■ 첨부 자료, 대여 자료 및 비치자료

#### 1. 첨부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및 연구개발 지침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연구개발 계획서

#### 2. 대여자료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연구보고서(2021.5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회)
- 2)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주기 인증기준 평가수행 자료
  - ① 대학용 편람
  - ② 평가자용 편람
  - ③ 표준절차 지침

### 3. 비치자료

- 1)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3)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2019.11.17. 일본 동물간호사협회 보고회)
- 4) 수의학교육인증기준(2주기 인증기준)

<붙임 1>

**<부록 1.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 참고>**

<붙임 2>

**<부록 2. 연구개발계획서 참고>**

## [부록 4.2.]

# 제 1 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 이기창, 김용준

1.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1:00~13:3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9명) ; 김용준, 김정은, 박영재, 박인철, 오희경, 이기창, 이흥식, 정태호(가나다 순), 김정주 사무관(방역정책과)
4. 회의진행 순서
  - 1) 위원 소개 및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소개
  - 2) 농식품부에서 연구개발 요청해 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관련 회의안건에 대한 토의
5. 과제추진 배경, 연구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소개 : 연구책임자
  - 1) 과제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 소개
  - 2) 연구진 역할 분담 내용 및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소개
  - 3) 연구기간 및 사업비 ; 2021.6~7월 (2개월), 20백만원
  - 4) 연구기관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공동)
6. 회의 안건
  - 1) 연구 역할 분담 및 연구 일정
  - 2) 연구수행 및 진행방법
  - 3) 연구위원회 명칭 확정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상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위원회 및 조직 구성
  - 5) 기타
  - 6) 차기회의 안건
7. 회의 결과(안건 결정사항)
  - 1) 연구역할 분담 및 연구 일정
    -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다음 내용 ①과 ②에 대해 전체 동의함.

## ① 연구수행 일정표

연구수행내용	2021.6			2021.7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7~6.11	6.14~6.18	6.21~6.25	6.28~7.2	7.5~7.9	7.12~7.16	7.19~7.23	7.26~7.31
연구진 1차회의 (역할분담 및 일정 조정) ※농식품부 참석	√							
2차회의 ①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결정 ②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③인증평가비 ④ 방문평가 수행 기간			√					
3차회의 대학용 편람 심의				√				
4차회의 평가자용 편람 심의					√			
5차회의 표준절차 지침 심의						√		
6차 회의 편람 및 지침 최종 검토 ※농식품부 참석							√	
최종보고서 제출								√

## ② 참여 연구원

기관	성명	소속/지위	역할	연구분야
한국수의학 교육인증원	김용준	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책임연구 원	-연구개발계획서 및 최종 보고서 작성(총괄) -대학용 편람 개발
	이흥식	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원	각종 위원회, 평가단 등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지침/내규 개발
	박인철	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연구원	표준절차지침 개발
	이기창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	연구원	평가자용 편람 개발
한국동물보 건사대학교 육협회	박영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주기전대학교 교수	연구원	각종 위원회, 평가단 등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지침/내규 개발
	오희경	장안대학교/교수	연구원	평가자용 편람 개발
	정태호	중부대학교/교수	연구원	표준절차 지침 개발
	김정은	수성대학교/교수	연구원	대학용 편람 개발

### 2) 연구 수행 진행 방법

● 제1차 회의자료에서 제시된 다음 내용에 대해 전체 동의함.

① 연구개발 방법 및 전략

A. 이 연구개발에서 달성해야할 목표에 대해 연구 팀 구성

가. 동물보건사 인증 평가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수인원 - 이흥식 전임 원장, 동보협 - 박영재 동보협 회장

나. 대학용 편람 제정

수인원 - 김용준 원장, 동보협 - 김정은 교수

다. 평가자용 편람 제정

수인원 - 이기창 교수, 동보협 - 오히경 교수

라. 표준절차지침 제정

수인원 - 박인철 교수, 동보협 - 정태호 교수

B. 연구 수행 전략

가. 목표별 연구팀은 상호 연구를 수행하여 합의한 자료를 해당 회의일 2일전까지 수인원에 제출

나. 수인원은 해당 자료를 전 연구원이 회의 전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메일 회람하고 회의자료로 복사하여 준비

C. 연구수행방법

가. 대여자료인 수의학교육 2주기 인증 편람 및 지침을 참고하여 대여자료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기준 내용을 참고하여 편람 또는 지침을 작성하는 방법

나. 기타 자료 참고하여 작성

다. 팀별 연구원이 전체 내용을 각각 작성한 후 교환하여 상호 확인하는 방법, 또는 전체 내용을 분할하여 작성 후 교환해서 확인하는 방법 등 자유롭게 작성

②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 : 회의 일정에 따른 그 날의 결정 목표는 가급적 당일 결정하기로 함.

③ 위원회 운영지침, 방문평가기간, 인증기관 명칭, 인증평가비, 등은 편람에 수록되어야할 내용이므로 제일 먼저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④ 편람 및 지침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편람 제정 및 지침 제정은 3주후부터 다루기로 함.

⑤ 편람 및 지침에 수록되어야 할 각종 위원회 사항은 2주후에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함.

### 3) 연구위원회 명칭 확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로 명칭 확정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 수행상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위원회 및 조직 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① 설치 필요 위원회

- 인증평가위원회
- 인증판정위원회
- 재심위원회
- 평가단

② 상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 또는 내규를 제정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인적 구성은 동수로 한다.

### 5) 기타사항

####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 요청 사항

① 인증 평가 공정성 강조 : 누가 평가해도 공정해야 함. 이를 위해 점수 계량화를 공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위원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② 편람 및 지침 제정은 실제 평가 수행을 위한 것이며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③ 인증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인력 풀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④ 평가단장은 수의계 인사가 맡아야 할 것임 : 경험, 공정성 및 객관성 차원에서 수의계 인사가 단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⑤ 평가단은 10개 팀 정도 구성이 필요하다고 봄.

⑥ 이 연구개발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나 제정되는 편람 지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기 회의에서 각 연구원은 보안준수를 서약하는 각서 제출 필요.

### 6) 차기 회의 안건

- ①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 ② 인증평가 수행 상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각종위원회 운영지침
- ③ 인증평가수수료 및 방문평가 수행기간
- ④ 기타

#### 8. 차기 회의 일정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부록 4.3.]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 위원회」 2차 회의 자료

1. 일시 : 2021. 6.23(수), 11: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3. 참석대상자(8명)

1) 연구원(8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오희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4. 전차 회의록 접수

5. 회의 안건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 수행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2) 인증평가 수수료 및 방문평가 수행기간

- 3)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 4) 기타

## 6. 차기회의 안건

## 7.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8. 폐회

### ■ 첨부자료 및 비치자료

#### 1. 첨부자료

- 1) 1차 회의록
-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 3)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안)
- 4) 수의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비 산출근거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비(안)

#### 2. 비치자료

- 1)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3)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2019.11.17. 일본 동물간호사협회 보고회)
- 4) 수의학교육인증기준(2주기 인증기준)

<붙임 1>

## **제 1 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 이기창,김용준

**<1차 회의록 내용은 [부록 4.2. 제1차 회의록]으로 대체>**

<붙임 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부록 1.1.의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참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정 2021. 06 .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서 규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증대상기관은 국내 소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으로 한다.  
② 인증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전문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다.

**제3조(인증기준)**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이하 “동보위”)는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책임이 있다.  
②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 동보위 각종 위원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및 고등교육평가 전문가의 제안을 2주간 수렴한다. (2주가 법적 기준인지 내규인지요)  
③ 인증기준의 적절성은 인증기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단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④ 동보위가 승인한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에 통보하고, 인증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4조(인증주기)** ① 인증대상기관의 인증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인증 이외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증주기는 연장 또는 축소 시행할 수 있다.  
③ 첫 인증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차기 인증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유형과 기간)** 인증 유형과 기간은 다음 5단계로 구분한다.  
① 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인증한다. 다만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이면 인증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② 한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를 1년 이내에 개

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평가단이 해당 평가대상기관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때에는 한정인증을 한다.

③ 임시인증: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한다.

④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⑤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의4의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제6조(신설대학)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이 신설되었을 경우 첫 졸업생 배출 시까지 임시인증을 실시하고, 졸업생 배출 후에는(졸업생 배출 전 해에는) 규정된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한다.

**제7조(인증절차)** ① 인증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인증대상 기관선정
2.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자체평가 연구
3.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4. 부족사항 설명서
5. 14일 답변서(답변서 송부 14일)
6. 최종논평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7. 재심요청 시 재심위 구성 및 평가
8. 인증판정 최종결정 및 종결
9. 결과통보 및 발표

**제8조(인증평가와 인증결정)** 인증평가와 인증결정은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각각 별개로 수행하며 이들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자격과 임기)** ①제 8조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10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1항에 의한 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보)** ① 인증판정위원회가 인증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동보위 심의 및 결의를 거쳐,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② 동보위는 동물보건사 관련 공공기관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인증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활용)** ① 인증결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졸업생은 수의사법 제16조의2의1항에 의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결과관리)** ① 인증대상기관(대학)은 인증기간 동안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자료보관)** ① 각 종 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의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평가서, 보고서, 회의록, 전자우편 등의 목록과 기록물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와 관련되어 보관된 기록물은 분류기호와 일련번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제도개선)** 동보위는 인증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평가 사전 및 사후 만족도 조사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인증, 동물보건사 교육개선 및 평가에 관한 워크숍과 컨설팅

③ 인증평가위원 집단의 구성과 연수교육

④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⑤ 국내·외 교육인증기구와의 정보교류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0. 11. 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인증규정 제8조에 따른 인증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위원회가 송부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인증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인증 결과를 승인한다.

② 최종보고서나 이의서의 심의 결과 인증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평가단에 해당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재직하거나 재직할 경우 및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재심의)** ①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이 인증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 동보위 위원장은 재심의위원회(이하 “재심위”)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야 하며, 재심위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사 및 비수의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인증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④ 재심의 내용은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평가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 ⑤ 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는 최종 인증 결과가 된다.

**제7조(최종인증)**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즉시 그 결과를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보위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기관에 인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대학)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8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편람 지침 개발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내외를 원장이 임명하여 구성하되 동보협 추천 인사와 인증원 추천 인사를 동수로 한다.

③ 인증평가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또는 인증평가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평가단장은 자체평가서 서면평가와 서면평가결과에 근거한 방문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증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1. 서면평가서 심의
2. 방문평가서 심의
4. 최종보고서 심의
5. 기타 위원회 업무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 업무 일정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증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위임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인증취소 또는 인정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의 인증평가 신청은 2년간 유예한다.(1년으로 하시면 어떨지요)

- 제6조(서면평가)** ① 자체평가서에 대한 서면평가는 위원 개인의 영역별 평가와 평가단 전체평가로 이루어진다.
- ② 서면평가서에는 방문평가 시 확인할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③ 서면평가는 60일 이내에 종료한다.

- 제7조(항목별 평가와 점수)** ①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시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3점), 적격(2점), 미흡(1점), 부적격(0점)의 4단계로 한다.
- ②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든 항목이 적격(2점) 이상인 경우 완전인증(3년)으로 판정한다.
-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이상이 미흡(1점)인 경우에는 단축인증(2년)으로 판정한다. 단, 2년 단축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하여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한다.
- ④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이 1개 이상인 경우 또는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제8조(평가단)** ① 평가단장은 인증규정 제9조를 충족하고 4시간 이상의 인증평가 교육을 받은 이수자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평가단은 자체평가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이에 따른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 ③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와 평가단 전체 평가로 이루어진다.
- ④ 평가단장은 방문평가 시 부족사항설명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 ⑤ 방문평가 조사는 1일 이내에 종료한다.
- ⑥ 인증대상 기관은 방문평가 후 3일 이내에 부족사항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를 동보위에 제출할 수 있다.
- ⑦ 답변서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나 역량을 문서화한 것에 한하며, 계획이나 기대하는 성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⑧ 동보위는 접수된 답변서를 즉시 평가단장에게 전달하고 평가단장은 답변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인증평가를 종료한다.

- 제9조(연수교육)** ① 인증평가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서 작성자와 평가위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 ③ 자체평가서 작성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에서 추천을 받고, 평가위원 지원자

는 공모한다.

④ 연수교육은 대면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⑤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⑥ 연수교육의 내용은 교육인증의 국내외 현황, 비전, 목적, 인증기준, 판정기준, 보고서 작성법, 윤리적 가치와 태도 등을 포함한다.

⑦ 연수교육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양성기관이거나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를 종료하면, 위원장은 즉시 동보위에 최종 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제정 2021. 06. 1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인증평가위원회 (이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1항에 따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해당 평가인증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하고,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1항에 따라 평가단장이 선발한다. 다만 평가회차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회 평가단 구성 시 직전 평가단 중 40% 내외의 위원을 중임토록 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의 업무)** 운영지침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영역 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인증평가의 기본목적과 평가운영지침 숙지
2. 평가편람(대학용 및 평가자용) 숙지 및 적용
3. 평가위원 연수 교육 및 참석
4.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
5. 평가결과 협의 및 조정
6. 기타 관련 업무

**제5조(평가단장의 업무)**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책임자로서 평가단을 대표하며, 운영지침 제8조 업무와 함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의 각종 서식을 망라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평가단 회의 시 회의 주재
2. 평가단 전체의견 조율 및 조정

3. 평가위원 간 평가결과 조정
4. 기타 평가단 관련 업무

**제6조(의결)**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단의 결정에 따르고 관례를 준용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13. 11. 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판정위원회 (이하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1항에 따른 재심위원회 (이하 '위원회') 설치 목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위원회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1항에 따라 해당 재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 구성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3항에 따른다.

**제4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4항에 따라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평가서와 재심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단 및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참고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재직하거나 재직할 경우 및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의결과)**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는 최종인증결과가 된다. 다만 그 결과는 7일 이내에 인증판정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재심의신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대학이 신청서 제출과 함께 인증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 부터 적용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의 인증유지관리지침

제정 2013. 11.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인증규정(이하 '인증규정') 제12조 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인증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은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간 중 인증사항과 관련하여 재단의 변경, 학교의 소재지 이전, 정원의 변화 및 교과과정의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형식)** 연차보고서 작성요령과 서식은 최근에 발행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편람(대학용)을 참고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제출시기)** 최초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는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하고, 이후 제출은 매년 동일한 일자로 한다.

**제5조(확인)** 인증평가위원회는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확인한다.

**제6조(자료요청)** 인증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활용)** 인증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유서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증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과의 협의 하에 청문이나 방문확인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인증철회)**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인증철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해당 **양성기관(대학)**에 이를 통보한다.

**제9조(소명기회)** 인증기간 중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이 인증철회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대학은 판정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소명심의)** 소명이 접수되는 경우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증판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인증철회를 최종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인증심의절차에 준한다.

**제11조(유지관리평가비용)** 인증유지관리기간 중 인증유지관리평가에 소요되는 일정 경비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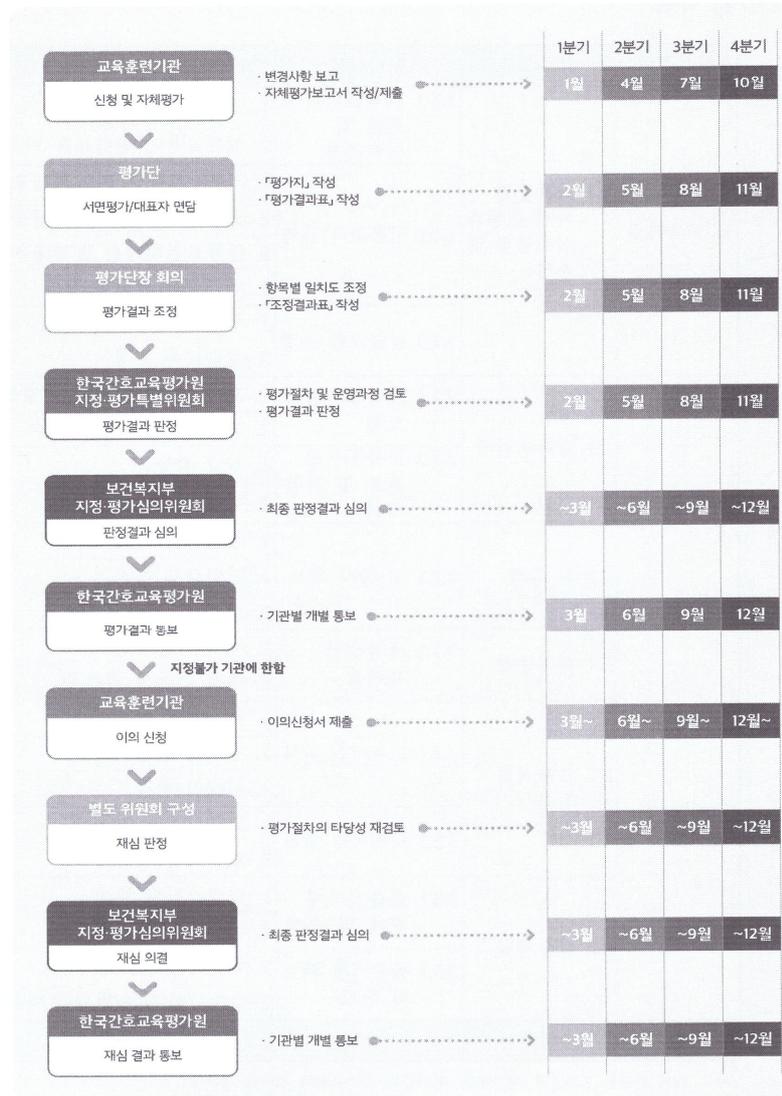
**제12조(제재조치)** 연차보고서 미제출, 중대사항 미신고 및 유지관리비용 미납 시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 3개월 이내 미이행 시 인증철회를 한다.

**제13조(타 규정 및 관례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규정 및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이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례를 준용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평가절차 및 방법



[그림 II-2]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평가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7. 6. 2.] [보건복지부훈령 제100호, 2017. 6. 2., 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업무(이하 "지정평가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기본계획 수립
2. 평가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지정·평가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
3. 기타 지정·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80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
2.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3. 법 제28조에 따른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4.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5.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내
6. 보건 의료 분야, 보건 의료 관련 평가 분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
7. 복지부 및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2인 이내

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의료자원정책과 소속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임원이거나 대표·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키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호, 2017. 6.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비 산출 근거

수의학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비(수수료) 구성  
평가비 2,300만원, 방문평가 3박4일

항목	금액	누계액	비고
방문평가수당	20만원×6명= 120만원	120만원	단장 추가 지급 없음
방문평가보고서원고료	100만원×5명= 500만원	620만원	단장 추가 지급 없음 및 사무처 미지급
방문평가숙식비	80만원×6명= 480만원	1,100만원	교통비는 제주도 향 공료만 지급
서면평가 1박2일 숙식 비	15만원×6명= 80만원	1,180만원	사무처 1명 포함
서면평가 회의비	20만원×6명= 120만원	1,300만원	사무처 1명 포함
평가위원회	4회×8명×20만원= 640만원	1,940만원	신청접수, 서면평가, 예비논평, 최종논평
판정위원회	2회×8명×20만원= 320만원	2,260만원	예비논평, 최종논평
이사회	1회×15명×30만원= 450만원	2,710만원	최종보고
각종보고서인쇄비	30만원×3회= 90만원	2,800만원	서면평가, 예비논평, 최종논평
<b>2,800만원-2,300만원=적자 500만원은 농식품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b>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1인당 20만원, 이사회 1인당 30만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비(안)

<방문평가 1박 2일 기준>

항목	금액	누계액 (사무처 직원 추가시 경비)	비고
방문평가수당	20만원/1인×5명= 100만원	100(120)만원	-단장 추가 지급 없음 -사무처 직원 지원시 6명
서면/방문평가보고서 원고료	50만원×5명= 250만원	350(370)만원	-단장 추가 지급 없음 - 사무처 미지급
방문평가숙식비	20만원/1박×5명= 100만원	450(490)만원	-사무처 직원 지원시 6명
서면평가 회의비	20만원×5명×1회= 100만원	550(610)만원	사무처 1명 지원시 6 명
평가위원회	2회×10명×20만원= 400만원	950(1010)만원 {1회 회의시 750(810) 만원}	신청접수, 서면평가, 예비논평, 최종논평
판정위원회	2회×10명×20만원= 400만원	1350(1410)만원 {1회 회의시 950(1010)만원}	예비논평, 최종논평
각종보고서인쇄비	30만원×3회= 90만원	1440(1500)만원 {1회 회의시 1040(1100)만원}	서면평가, 예비논평, 최종논평
<p>-평가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u>각 1회 회의시 총 1040(1100)만원</u></p> <p>-평가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u>각 2회 회의시 총 1440(1500)만원</u></p> <p>-재심위원회 개최 예비비 200만원 계상되지 않음</p> <p>-사무처 직원 지원시 <u>추가 금액 합계는 60만원임.</u></p>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1인당 20만원

**[부록 4.4.]**

**제2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 이기창, 김용준

1.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1:00~15:3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8명) : 김용준, 김정은, 박영재, 박인철, 오희경, 이기창, 이흥식, 정태호(가나다 순)

4. 전차 회의록 접수

- 1차 회의록(2021.6.10.(목)을 수정 없이 접수

5. 회의 안건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 2) 인증평가비 및 방문평가 수행기간
- 3)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 4) 기타
- 5) 차기회의 안건
- 6) 차기회의 일정

6. 회의 결과(안건 결정사항)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수행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운영지침

■ 아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지침 개발위원회 운영지침을 심의한 후 승인함.

- 이 위원회 명칭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수인원) 정관 제4조1항의7에 따라 수행하는 정부요청사업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수인원 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보협) 회장이 맡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수인원과 동보협이 추천하는 자의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위원회 지침 제정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대학용 평가 편람 제정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평가자용 평가 편람 제정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 제정
5. 기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 아래 인증규정을 심의한 후 수정하여 승인함

1. 기관명은 법 조항에서 명시된 것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통일한다

\*규정 중 줄친 내용은 회의록 접수 심의 중 수정된 내용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정 2021. 06 .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서 규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증대상기관은 국내 소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한다.

② 인증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양성기관이 스스로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전문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다.

**제3조(인증기준)**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위원회(이하 “동보위”)는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책임이 있다.

②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 동보위 각종 위원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및 고등교육평가 전문가의 제안을 2주간 수렴한다.

③ 인증기준의 적절성은 인증기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단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④ 동보위가 승인한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에 통보하고, 인증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4조(인증주기)** ① 인증대상기관의 인증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인증 이외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증주기는 연장 또는 축소

시행할 수 있다.

③ 첫 인증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차기 인증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유형과 기간)** 인증 유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완전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 영역 모두 적격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단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 단,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③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④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의4의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제6조(신설 양성기관)**

① 신설 양성기관이라 함은 평가인증 신청 시 2년의 동물보건학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1년 이내에 최초 졸업자가 배출될 예정인 대학을 말한다.

②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 최초인증은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제7조(인증절차)** ① 인증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인증대상 기관선정
2.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3. 서면평가
4. 현지 방문평가
5. 최종보고서 작성
5. 재심요청 시 재심위 구성 및 평가
6. 인증판정 최종결정 및 종결
7. 결과통보 및 발표

**제8조(인증평가와 인증결정)** 인증평가와 인증결정은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각각 별개로 수행하며 이들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자격과 임기)** ① 제 8조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1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보)** ① 인증판정위원회가 인증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동보위 심의 및 결의를 거쳐,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② 동보위는 동물보건사 관련 공공기관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인증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활용)** ① 인증결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생은 수의사법 제16조의2의1항에 의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결과관리)** ① 인증대상기관은 인증기간 동안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자료보관)** ① 각 종 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의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평가서, 보고서, 회의록, 전자우편 등의 목록과 기록물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와 관련되어 보관된 기록물은 분류기호와 일련번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제도개선)** 동보위는 인증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평가 사전 및 사후 만족도 조사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동물보건사 교육개선 및 평가에 관한 워크숍과 컨설팅

③ 인증평가위원 집단의 구성과 연수교육

④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⑤ 국내·외 교육인증기구와의 정보교류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 아래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을 심의한 후 수정하여 승인함

\*규정 중 줄친 내용은 회의록 접수 심의 중 수정된 내용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8조에 따른 인증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판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위원회가 송부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인증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인증 결과를 승인한다.

② 최종보고서나 이의서의 심의 결과 인증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평가단에 해당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및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재심의)** ①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 동보위 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야 하며, 재심위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인증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④ 재심의 내용은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여부 및 평가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⑤ 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는 최종 인증 결과가 된다.

**제7조(최종인증)**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즉시 그 결과를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보위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기관에 인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 아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심의한 후 수정하여 승인함

\*규정 중 줄친 내용은 회의록 접수 심의 중 수정된 내용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8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겸임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내외를 원장이 임명하여 구성하되 동보협 추천 인사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동수로 한다.

③ 인증평가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또는 인증평가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평가단장은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와 서면평가결과에 근거한 방문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증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1. 서면평가서 심의
2. 방문평가서 심의
4. 최종보고서 심의
5. 연차보고서 심의
6. 기타 위원회 업무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 업무 일정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증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평가인증을 하도록 위임받은 동물보

건사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인증취소 또는 인정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은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평가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제6조(서면평가)** ① 자체평가서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는 위원 개인의 영역별 평가와 평가단 전체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서면평가서에는 방문평가 시 확인할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③ 서면평가는 동보위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 한 후 30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7조(항목별 평가와 점수)** ①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시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3점), 적격(2점), 미흡(1점), 부적격(0점)의 4단계로 한다.

②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든 항목이 적격(2점) 이상인 경우 완전인증(3년)으로 판정한다.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이상이 미흡(1점)인 경우에는 단축인증(2년)으로 판정한다. 단, 2년 단축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하여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한다.

④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이 1개 이상인 경우 또는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⑤ 평가시 유의사항인 “항목별 평가사항들을 판정할 때 첫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라는 사항은 최초 평가인증 개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8조(평가단)** ① 평가단장은 인증규정 제9조를 충족하고 4시간 이상의 인증평가 교육을 받은 이수자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평가단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이에 따른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③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와 평가단 전체 평가로 이루어진다.

④ 방문평가 조사는 1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9조(연수교육)** ① 인증평가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와 평가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평가위원 지원자는

공모한다.

④ 연수교육은 대면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⑤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⑥ 연수교육의 내용은 교육인증의 국내외 현황, 비전, 목적, 인증기준, 판정기준, 보고서 작성법, 윤리적 가치와 태도 등을 포함한다.

⑦ 연수교육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양성기관이거나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를 종료하면, 위원장은 즉시 동보위에 최종 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 아래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를 심의한 후 수정하여 승인함

\*규정 중 줄친 내용은 회의록 접수 심의 중 수정된 내용임.  
(이 내규에서는 제 8조 “위원회”→ “평가단회의”)

#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제정 2021. 06. 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

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이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1항에 따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해당 평가인증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하고,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1항에 따라 평가단장이 선발한다. 다만 평가회차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회 평가단 구성 시 직전 평가단 중 40% 내외의 위원을 중임토록 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의 업무)** 운영지침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영역 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인증평가의 기본목적과 평가운영지침 숙지
2. 평가편람(대학용 및 평가자용) 숙지 및 적용
3. 평가위원 연수 교육 및 참석
4.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
5. 평가결과 협의 및 조정
6. 기타 관련 업무

**제5조(평가단장의 업무)**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책임자로서 평가단을 대표하며, 운영지침 제8조 업무와 함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의 각종 서식을 망라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평가단 회의 시 회의 주재
2. 평가단 전체의견 조율 및 조정
3. 평가위원 간 평가결과 조정
4. 기타 평가단 관련 업무

**제6조(의결)**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단의 결정에 따르고 관례를 준용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은 평가단회의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재심 위원회 운영 내규

■ 아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재심위원회 운영 내규를 심의한 후  
수정하여 승인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판정위원회 (이하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1항에 따른 재심위원회 (이하 '위원회') 설치 목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위원회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1항에 따라 해당 재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 구성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3항에 따른다.

**제4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4항에 따라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평가서와 재심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단 및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참고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및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의결과)**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는 최종인증결과가 된다. 다만 그 결과는 7일 이내에 인증판정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재심의신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대학이 신청서 제출과 함께 동보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 부터 적용한다.

## 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지침

■ 아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지침을 심의한 후 수정하여 승인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이하 '인증규정') 제12조 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인증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간 중 인증사항과 관련하여 재단의 변경, 학교의 소재지 이전, 정원의 변화 및 교과과정의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형식)** 연차보고서 작성요령과 서식은 최근에 발행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편람(대학용)을 참고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제출시기)** 최초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는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하고, 이후 제출은 매년 동일한 일자로 한다.

**제5조(확인)** 인증평가위원회는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확인한다.

**제6조(자료요청)** 인증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활용)** 인증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유서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증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의 협의 하에 청문이나 방문확인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인증철회)**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인증철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해당 양성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제9조(소명기회)** 인증기간 중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철회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대학은 판정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소명심의)** ① 소명이 접수되는 경우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증판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인증철회를 최종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인증심의절차에 준한다.

② 소명 심의결과는 6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유지관리평가비용)** 인증유지관리기간 중 인증유지관리평가에 소요되는 일정 경비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제재조치)** 연차보고서 미제출, 중대사항 미신고 및 유지관리비용 미납 시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 60일 이내 미이행 시 인증철회를 한다.

**제13조(타 규정 및 관례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규정 및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이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례를 준용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이 운영 규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판정위원회로부터 인증 평가 최종 결과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나면 농식품부에서 인증신청 기관에 인증 판정결과를 통보하기 전 최종심의를 거치는 의결기구이다.

■ 아래 운영 규정은 농식품부에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 평가인증)에 따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이하 "평가인증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기본계획 수립
2. 평가인증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평가인증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
3. 기타 평가인증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인증업무를 위임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
2. 전국적 조직을 두는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의회의 대표자 1인 이내
3. 법 제24조에 따른 전국적 조직을 두는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4. 수의료 분야 관련 평가인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내
5.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내
6.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이내
7.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이내

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 기관과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 기관의 대표·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전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0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 평가절차 및 방법

■ 인증 평가 절차 방법 및 흐름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도록 일임하기로 결정함.

\*내용 중 줄친 내용은 회의록 접수 심의 중 수정된 내용임.

### 1. 평가인증 절차 요약

○ 인증은 평가·인증 신청 이후 최종판정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됨

- 1) 평가·인증 신청 : 인증신청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연도 인증 신청 일정에 따라 평가·인증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2) 농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요청 : 양성기관의 인증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수행 요청
- 3) 평가단 구성 : 인증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평가단 구성
- 4) 인증평가단의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
- 5) 인증평가단의 현장 방문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 현장 확인 및 서면평가 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 6) 인증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제출 : 인증평가단은 방문평가 종료 후에 최종보고서 작성
- 7) 인증평가위원회 : 인증평가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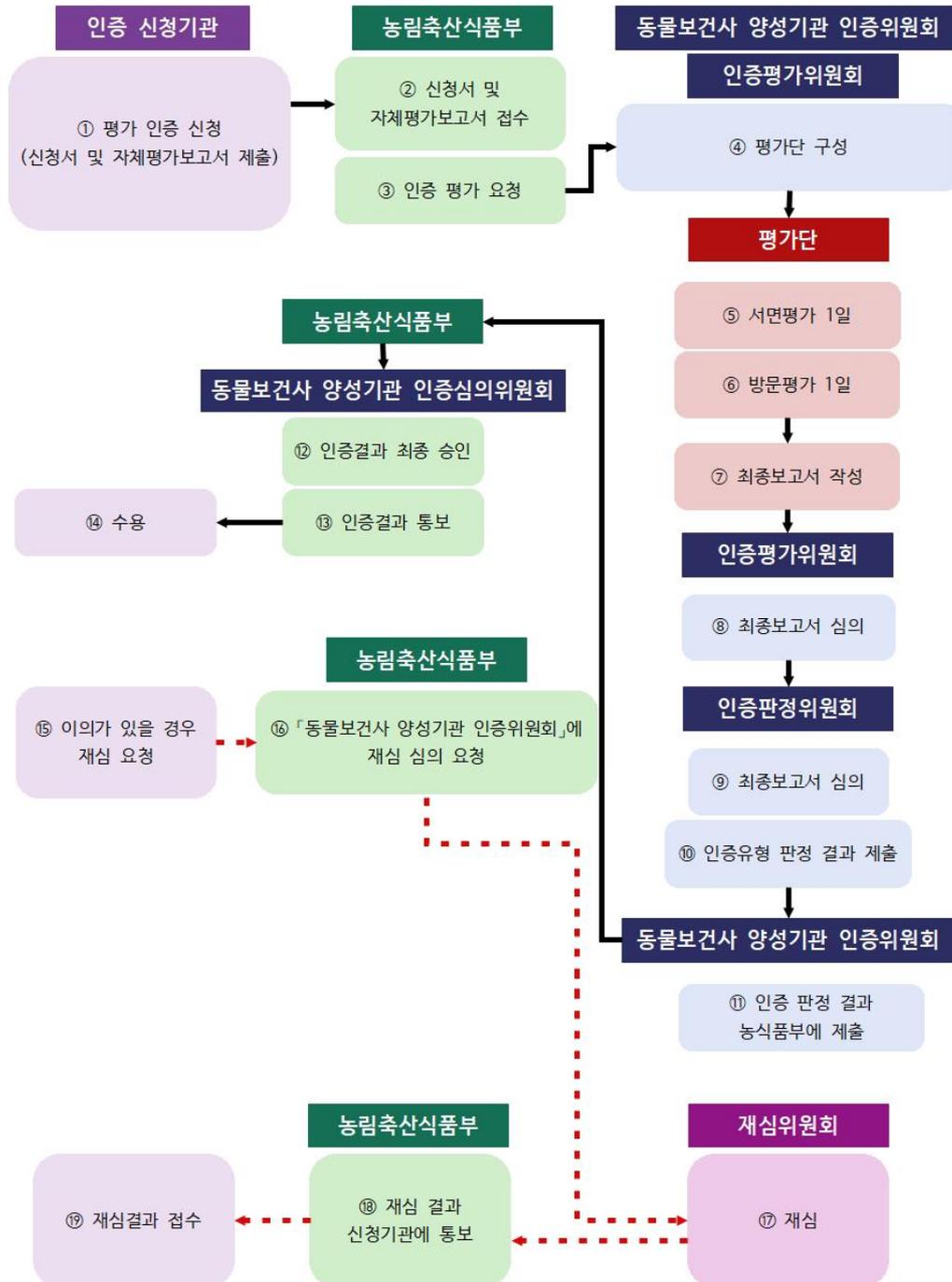
- 8) 인증판정위원회 : 인증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판정 심의
- 9) 인증판정 결과 농식품부에 제출
- 10) 신청기관에서 이의 신청 시 재심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 농식품부에 통보

## 2. 인증평가 세부 절차

- 1단계 : 인증 신청기관이 평가 인증 신청(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단계 : 농식품부가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 3단계 : 농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요청
- 4단계 : 인증평가위원회가 평가단 구성
- 5단계 : 평가단 서면평가 1일
- 6단계 : 평가단 방문평가 1일
- 7단계 : 평가단이 최종보고서 작성
- 8단계 :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심의
- 9단계 : 인증판정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심의
- 10단계 : 인증판정위원회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유형 판정 결과 제출
- 11단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가 인증 판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12단계 : 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결과 최종 승인
- 13단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심의위원회가 인증결과를 통보
- 14단계 : 인증 신청기관이 결과 수용
- 15단계 : 인증 신청기관이 이의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에 재심 요청
- 16단계 : 농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재심 심의 요청
- 17단계 : 재심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18단계 : 농식품부가 재심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
- 19단계 : 인증신청기관이 재심결과 접수

■인증평가절차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절차 흐름도>



## 회의안건2). 인증평가비 및 인증방문 평가 기간

### 가. 인증 방문 평가기간 및 서면 평가 기간

- 인증 방문 평가기간은 1개 대학에 대하여 1일로 정함
- 인증 서면평가도 1개 대학에 대하여 1일을 정함.
- 서면 평가 및 방문평가에 기간(각 1일)에 따른 인증평가비를 산정한다.

### 나. 인증평가비

- 아래 표와 같이 필요 경비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인증평가비를 결정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비(안)

항목	금액	누계액	비고
평가단 서면평가 회의비	20만원×5명×1회= 100만원	100만원	
평가단 방문평가수당	20만원/1인×5명= 100만원	200만원	-단장 추가 지급 없음
서면/방문평가보고서 원고료	50만원×5명= 250만원	550만원	-단장 추가 지급 없음
인증평가위원회	1회×10명×20만원= 200만원	750만원 {2회 회의시 950만원}	신청접수, 서면평가, 최종보고서 심의
인증판정위원회	1회×10명×20만원= 200만원	950만원 {2회 회의시 1350만원}	최종보고서 심의
각종보고서인쇄비	30만원×3회= 90만원	1040만원 {2회 회의시 1440만원}	서면평가서, 방문평가서, 최종보고서
-평가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u>각 1회 회의시 총 1040만원</u> -평가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u>각 2회 회의시 총 1440만원</u> - <u>재심위원회</u> 개최 회의비 200만원 계상되지 않음 - <u>연차보고서</u> 평가를 위한 <u>유지관리평가비</u> 연 1회 200만원 계상되지 않음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1인당 20만원

### 회의안건 3) 인증기관(기구) 협의 및 명칭 결정

현재로서는 평가인증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로 결정함.

### 회의안건 4) 기타 사항

-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도 제정하기로 한다.
- 농림식품부와 협의 및 확인된 사항 소개
  - ① 특례자의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려면 수의사법 제 14조의 7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국가시험 공고 전에 양성기관에 대해 인증 평가를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 ② 인증평가 수행기간은 편람 및 지침 제정후 9~11월 사이에 양성기관 대상 평가인증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인증 편람 및 지침 제정이 중요하다.
  - ③ 현재 약 30여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2~3개월 내에 평가인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약 10개이내의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④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시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에서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 인증기준(2021.1~3, 보고서 명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발간등록번호:11-1543000-003520-01))에 따라 평가가 수행되며, 이에 근거한 편람 및 지침 제정을 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비는 현재 인증원에 미입금 상태이며 입금 되는대로 집행 예정임.
- 인증 편람 지침 개발 관련 보안 유지를 위한 각 위원 서약서 받음.

### 5) 차기회의 안건

- ① 대학용 편람(안) 검토
- ②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 ③ 기타

### 6) 차기 회의 일정

- 일시 : 2021년 7월 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7. 폐회

## [부록 4.5.]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 위원회」 3차 회의 자료

1. 일시 : 2021. 7.1(목), 11: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3. 참석대상자(8명)

1) 연구원(8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오희경 : 연구원/장안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4. 전차 회의록 접수

5. 회의 안건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등 추가 검토사항

2)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 3)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 지침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검토 심의
  
- 5) 기타

## 6. 차기회의 안건

## 7.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8. 폐회

### ■ 첨부자료 및 비치자료

#### 1. 첨부자료

- 1) 2차 회의록
-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 3)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안)
- 4)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 5) 평가인증 윤리지침

#### 2. 별도 자료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안

#### 3. 비치자료

- 1)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3)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2019.11.17. 일본 동물간호사협회 보고회)
- 4) 수의학교육인증기준(2주기 인증기준)

〈붙임 1〉

**제2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 이기창,김용준

<2차 회의록 내용은 [부록 4.4. 제2차 회의록]으로 대체>

<붙임 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부록 1.1.의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참고>

<붙임 3>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

- 2차 회의록에 수록된 자료로 대체

<붙임 4>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7. 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른 평가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겸무하고, 부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보협) 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동보위와 동보협에서 동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주요임무)**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인증기준의 개발·수정·보완
- ② 인증기준과 관련된 제반 업무
- ③ 기타 동보위에서 위임받은 업무

**제5조 (기준 검토)** ① 위원회는 인증기준의 부분적인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동물 보건분야를 대상으로 2주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4조의 주요임무와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사항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관련자는 동보위가 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을 엄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5>

##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지침

2021. 07.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모든 관계자(이하 '관계자')의 윤리 강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태도)** 관계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 (인증의 독립성)**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밀의 유지)** 관계자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본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관계자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상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당행위의 금지)** 관계자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청탁, 선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이해관계자 평가의 참여 금지)** ①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현재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학생, 교수, 행정담당자, 직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잠정적 협정 및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지난 3년간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대표직에 있었던 경우
4.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요청에 의한 공식적인 자문을 제외하고는 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평가인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금품수수의 금지)** 관계자는 동보위가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서약서)**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 서명하여 동보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서 약 서

본인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관계자(위원, 행정요원, 보조요원)로서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 지침’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평가인증 관계자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성 명 \_\_\_\_\_

서 명 \_\_\_\_\_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귀하

**[부록 4.6.]**

**제3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 이기창, 김용준

1. 일시 ; 2021년 7월 1일(수), 11:00~17:1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6명) : 김용준, 김정은, 박영재, 오희경, 이기창, 이흥식,  
(가나다 순)

4. 전차 회의록 접수

- 2차 회의록(2021.6.23.(수)을 일부 수정하여 접수
- \* 붙임 1

5. 회의 안건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등 추가 검토사항
- 2)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검토 심의
- 5) 차기회의 안건
- 6) 차기회의 일정

6. 회의 결과(안건 결정사항)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등 추가 검토사항
  - \* 붙임 2
  - \* 밑줄 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임.
- 2)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 \* 붙임 3
  - \* 밑줄 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임.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 붙임 4

\* 밑줄 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임.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검토 심의

\* 붙임 5

\* 밑줄 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임.

5) 차기회의 안건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평가자용) 검토 심의

② 기타

6)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7월 8일 11시

-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붙임 1>

●제 2차 회의록 수정 접수

수정 항목	내용(조항)	수정된 내용(조항)
1)나.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 인증규정	제5조(인증유형과 기간)	①항 및 ②항
1)나.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 인증규정	제6조(신설양성기관)	①항 및 ②항
1)라. 인증평가위원회	제2조(구성)①	①~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①~인증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1)마.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제8조(비밀의 유지)	~ 평가위원은 위원회에서→~평가단은 <u>평가단회의</u> 에서
1)자. 평가절차 및 절차 요약	2. 인증평가 세부 절차 4단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u>인증평가위원회</u>
1)자. 평가인증절차 흐름도	제일 우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④평가단 구성 위에 “인증평가위원회”를 인증위원회 아래 표시

**제2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편람 지침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 이기창, 김용준

<2차 회의록 내용은 [부록 4.4. 제2차 회의록]으로 대체>

<붙임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등 추가 검토사항

### ■ 추가 검토사항 요약

\* 자세한 수정 내용은 전문 내용 참조

추가 검토 해당 규정	내용(조항)	추가된 내용(조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기능)	①항 및 ⑦항 추가
인증규정	제 5조(인증유형과 기 간)	①항 내용
인증판정위원회	제2조(구성)	①항 내용
인증평가위원회	제2조(구성)	①항 내용
인증평가위원회	제5조(평가인증대상)	③항 신설

\*내용 중 밑줄친 내용은 심의 결정하여 추가된 내용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수인원) 정관 제4조1항의7에 따라 수행하는 정부요청사업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수인원 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보협) 회장이 맡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수인원과 동보협이 추천하는 자의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제정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대학용 평가 편람 제정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평가자용 평가 편람 제정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 제정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사항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정 2021. 06 .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서 규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증대상기관은 국내 소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한다.

② 인증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양성기관이 스스로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전문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다.

**제3조(인증기준)**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위원회(이하 “동보위”)는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책임이 있다.

②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 동보위 각종 위원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및 고등교육평가 전문가의 제안을 2주간 수렴한다.

③ 인증기준의 적절성은 인증기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단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④ 동보위가 승인한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에 통보하고, 인증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4조(인증주기)** ① 인증대상기관의 인증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인증 이외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증주기는 연장 또는 축소 시행할 수 있다.

③ 첫 인증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차기 인증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유형과 기간)** 인증 유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완전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 영역 모두 적격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단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

단,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③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④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의4의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제6조(신설 양성기관)

① 신설 양성기관이라 함은 평가인증 신청 시 2년의 동물보건학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1년 이내에 최초 졸업자가 배출될 예정인 대학을 말한다.

②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 최초인증은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제7조(인증절차) ① 인증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인증대상 기관선정
2.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3. 서면평가
4. 현지 방문평가
5. 최종보고서 작성
5. 재심요청 시 재심위 구성 및 평가
6. 인증판정 최종결정 및 종결
7. 결과통보 및 발표

제8조(인증평가와 인증결정) 인증평가와 인증결정은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각각 별개로 수행하며 이들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자격과 임기) ①제 8조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1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보) ① 인증판정위원회가 인증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동보위 심의 및

결의를 거쳐,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② 동보위는 동물보건사 관련 공공기관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인증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활용)** ① 인증결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생은 수의사법 제16조의2의1항에 의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결과관리)** ① 인증대상기관은 인증기간 동안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자료보관)** ① 각 종 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의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평가서, 보고서, 회의록, 전자우편 등의 목록과 기록물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와 관련되어 보관된 기록물은 분류기호와 일련번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제도개선)** 동보위는 인증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평가 사전 및 사후 만족도 조사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동물보건사 교육개선 및 평가에 관한 워크숍과 컨설팅

③ 인증평가위원 집단의 구성과 연수교육

④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⑤ 국내·외 교육인증기구와의 정보교류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8조에 따른 인증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판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위원회가 송부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인증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인증 결과를 승인한다.

② 최종보고서나 이의서의 심의 결과 인증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평가단에 해당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및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재심의)** ①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 동보위 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야 하며, 재심위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인증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④ 재심의 내용은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여부 및 평가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 ⑤ 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는 최종 인증 결과가 된다.

**제7조(최종인증)**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즉시 그 결과를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보위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기관에 인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8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겸임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내외를 원장이 임명하여 구성하되 동보협 추천 인사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동수로 한다.

③ 인증평가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또는 인증평가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평가단장은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와 서면평가결과에 근거한 방문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증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1. 서면평가서 심의
2. 방문평가서 심의
4. 최종보고서 심의
5. 연차보고서 심의
6. 기타 위원회 업무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 업무 일정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증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평가인증을 하도록 위임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인증취소 또는 인정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은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평가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만료되기 1년 전부터 6개월까지 평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평가)** ① 자체평가서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는 위원 개인의 영역별 평가와 평가단 전체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서면평가서에는 방문평가 시 확인할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③ 서면평가는 동보위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 한 후 30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7조(항목별 평가와 점수)** ①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시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3점), 적격(2점), 미흡(1점), 부적격(0점)의 4단계로 한다.

②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든 항목이 적격(2점) 이상인 경우 완전인증(3년)으로 판정한다.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이상이 미흡(1점)인 경우에는 단축인증(2년)으로 판정한다. 단, 2년 단축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하여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한다.

④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이 1개 이상인 경우 또는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⑤ 평가시 유의사항인 “항목별 평가사항들을 판정할 때 첫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라는 사항은 최초 평가인증 개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8조(평가단)** ① 평가단장은 인증규정 제9조를 충족하고 4시간 이상의 인증평가 교육을 받은 이수자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평가단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이에 따른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③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와 평가단 전체 평가로 이루어진다.

④ 방문평가 조사는 1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9조(연수교육)** ① 인증평가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와 평가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평가위원 지원자는

공모한다.

④ 연수교육은 대면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⑤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⑥ 연수교육의 내용은 교육인증의 국내외 현황, 비전, 목적, 인증기준, 판정기준, 보고서 작성법, 윤리적 가치와 태도 등을 포함한다.

⑦ 연수교육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양성기관이거나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를 종료하면, 위원장은 즉시 동보위에 최종 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 밑줄친 부분은 심의 중 수정 또는 추가하기로 결정된 내용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7. 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른 평가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보협) 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동보위와 동보협에서 동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주요임무)**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인증기준의 개발·수정·보완
- ② 인증기준과 관련된 제반 업무
- ③ 기타 동보위에서 위임받은 업무

**제5조 (기준 검토)** ① 위원회는 인증기준의 부분적인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동물보건분야를 대상으로 2주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4조의 주요임무와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사항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관련자는 동보위가 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을 엄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 4>\* 밑줄친 부분은 심의 중 수정 또는 추가하기로 결정된 내용임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지침**

2021. 07.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모든 관계자(이후 '관계자')의 윤리 강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태도)** 관계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 (인증의 독립성)**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밀의 유지)** 관계자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본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관계자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상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당행위의 금지)** 관계자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청탁, 선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이해관계자 평가 참여 금지)** ①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현재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학생, 교수, 행정담당자, 직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잠정적 협정 및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지난 3년간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대표직에 있었던 경우
4.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요청에 의한 공식적인 자문을 제외하고는 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평가인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금품수수의 금지)** 관계자는 동보위가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서약서)**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 서명하여 동보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 서 약 서

본인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관계자(위원, 행정요원, 보조요원)로서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 지침’ 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평가인증 관계자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성 명 \_\_\_\_\_

서 명 \_\_\_\_\_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귀하

<붙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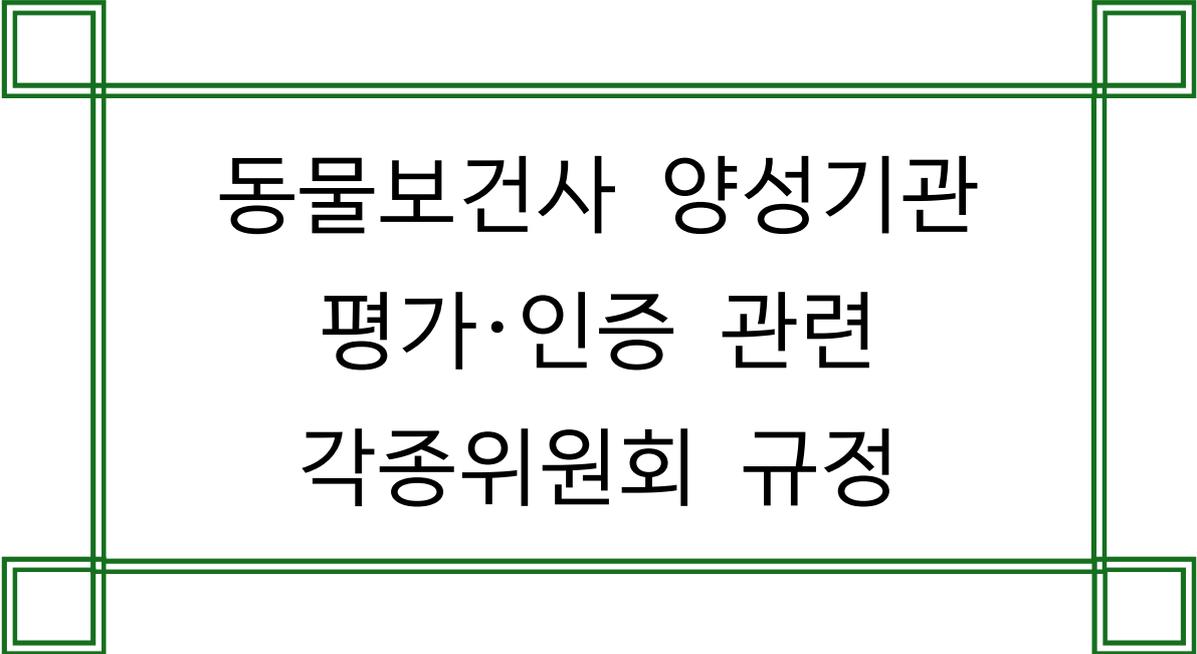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대학용)

**<대학용 편람 내용은 [부록 6.1. 대학용 편람]으로 대체>**

**부록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집」**



[부록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위원회 규정



# 목차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 운영 내규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
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9.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수인원) 정관 제4조1항의7에 따라 수행하는 정부요청사업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수인원 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교협) 회장이 맡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수인원과 동교협이 추천하는 자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제정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대학용 평가 편람 제정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평가자용 평가 편람 제정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 제정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진행사항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정 2021. 06 .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서 규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증대상기관은 국내 소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한다.

② 인증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양성기관이 스스로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전문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다.

**제3조(인증기준)**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위원회(이하 “동보위”)는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책임이 있다.

②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 동보위 각종 위원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및 고등교육평가 전문가의 제안을 2주간 수렴한다.

③ 인증기준의 적절성은 인증기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단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④ 동보위가 승인한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4조(인증주기)** ① 인증대상기관의 인증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인증 이외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증주기는 연장 또는 축소 시행할 수 있다.

③ 첫 인증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차기 인증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유형과 기간)** 인증유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완전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 영역 모두 적격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단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단,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③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④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의4의 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제6조(신설 양성기관)**

- ① 신설 양성기관이라 함은 평가·인증 신청 당시 최소 3학기 이상의 동물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지칭한다.
- ②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 최초인증은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 **제7조(인증절차)** ① 인증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인증대상 기관선정
2.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3. 서면평가
4. 방문평가
5. 최종보고서 작성
5. 재심요청 시 재심위 구성 및 평가
6. 인증판정 최종결정 및 종결
7. 결과통보 및 발표

**제8조(인증평가와 인증결정)** 인증평가와 인증결정은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각각 별개로 수행하며 이들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자격과 임기)** ①제 8조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② 1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보)** ① 인증판정위원회가 인증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동보위 심의 및 결의를 거쳐,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② 동보위는 동물보건사 관련 공공기관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인증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활용)** ①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생은 수의사법 제16조의2의1항에 의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인증결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결과관리)** ① 인증대상기관은 인증기간 동안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자료보관)** 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의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평가서, 보고서, 회의록, 전자우편 등의 목록과 기록물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와 관련되어 보관된 기록물은 분류기호와 일련번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제도개선)** 동보위는 인증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평가 사전 및 사후 만족도 조사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및 평가에 관한 워크숍과 컨설팅

③ 인증평가위원 집단의 구성과 연수교육

④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⑤ 국내·외 교육인증기구와의 정보교류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8조에 따른 인증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판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9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 중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위원회가 송부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인증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인증 결과를 승인한다.

② 최종보고서나 이의서의 심의 결과 인증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평가단에 해당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및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재심의)** ①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청한 경우, 동보위 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야 하며, 재심위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9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로 한다.
- ④ 재심의 내용은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여부 및 평가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 ⑤ 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는 최종 인증 결과가 된다.

**제7조(최종인증)**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즉시 그 결과를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보위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인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8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겸임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9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 중 10명 내외를 임명하여 구성하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동수로 한다.

③ 인증평가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또는 인증평가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평가단장은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와 서면평가결과에 근거한 방문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증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가단 구성 및 운영
2. 자체평가보고서 적합성 심의
3. 최종보고서 심의
4. 연차보고서 심의
5. 기타 위원회 업무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 업무 일정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증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평가·인증을 하도록 위임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인증취소 또는 인정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은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평가·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만료 6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평가)** ① 자체평가서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는 위원 개인의 영역별 평가와 평가단 전체평가로 이루어진다.

- ② 서면평가서에는 방문평가 시 확인할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③ 서면평가는 동보위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7조(항목별 평가와 점수)** ①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시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3점), 적격(2점), 미흡(1점), 부적격(0점)의 4단계로 한다.

- ②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든 항목이 적격(2점) 이상인 경우 완전인증(3년)으로 판정한다.
-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1점)인 경우에는 단축인증(2년)으로 판정한다. 단, 2년 단축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하여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한다.
- ④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이 1개 이상인 경우 또는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⑤ 평가 시 유의사항인 “항목별 평가사항들을 판정할 때 첫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라는 사항은 최초 평가·인증 개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8조(평가단)** ① 평가단장은 인증규정 제9조를 충족하고 4시간 이상의 인증평가 교육을 받은 이수자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평가단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이에 따른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 ③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와 평가단 전체 평가로 이루어진다.
- ④ 방문평가 조사는 1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9조(연수교육)** ① 인증평가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와 평가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

한다.

- ③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평가위원 지원자는 공모한다.
- ④ 연수교육은 대면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
- ⑤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⑥ 연수교육의 내용은 교육인증의 국내외 현황, 비전, 목적, 인증기준, 판정기준, 보고서 작성법, 윤리적 가치와 태도 등을 포함한다.
- ⑦ 연수교육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양성기관이거나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를 종료하면, 위원장은 즉시 동보위에 최종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제정 2021. 06. 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이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1항에 따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해당 평가·인증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하고,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1항에 따라 평가단장이 선발한다. 다만 평가회차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회 평가단 구성 시 직전 평가단 중 40% 내외의 위원을 중임토록 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의 업무)** 운영지침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영역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의 기본목적과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숙지
2. 평가편람(대학용 및 평가자용) 숙지 및 적용
3. 평가위원 연수 교육 및 참석
4.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
5. 평가결과 협의 및 조정
6. 기타 관련 업무

**제5조(평가단장의 업무)**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책임자로서 평가단을 대표하며,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업무와 함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의 각종 서식을 망라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단 회의 시 회의 주제
2. 평가단 전체의견 조율 및 조정
3. 평가위원 간 평가결과 조정

#### 4. 기타 평가단 관련 업무

**제6조(의결)**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단의 결정에 따르고 관례를 준용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은 평가단회의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판정위원회 (이하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1항에 따른 재심위원회 (이하 ‘위원회’) 설치 목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위원회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1항에 따라 해당 재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 구성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3항에 따른다.

**제4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4항에 따라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평가서와 재심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단 및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참고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및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의결과)**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는 최종인증결과가 된다. 다만 그 결과는 7일 이내에 인증판정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재심의신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대학이 신청서 제출과 함께 동보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이하 ‘인증규정’) 제12조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인증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간 중 인증사항과 관련하여 재단의 변경, 학교의 소재지 이전, 정원의 변화 및 교과과정의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형식)** 연차보고서 작성요령과 서식은 최근에 발행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편람(대학용)을 참고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제출시기)** 최초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는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하고, 이후 제출은 매년 동일한 일자로 한다.

**제5조(확인)** 인증평가위원회는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확인한다.

**제6조(자료요청)** 인증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활용)** 인증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유서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증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의 협의 하에 청문이나 방문확인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인증철회)**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인증철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해당 양성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제9조(소명기회)** 인증기간 중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철회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대학은 판정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소명심의)** ① 소명이 접수되는 경우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증판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인증철회를 최종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인증심의절차에 준한다.

② 소명 심의결과는 6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유지관리평가비용)** 인증유지관리기간 중 인증유지관리평가에 소요되는 일정경비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제재조치)** 연차보고서 미제출, 중대사항 미신고 및 유지관리비용 미납 시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 60일 이내 미이행 시 인증철회를 한다.

**제13조(타 규정 및 관례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규정 및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이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례를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7.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른 평가·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교협) 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동보위와 동교협에서 동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주요임무)**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인증기준의 개발·수정·보완
- ② 인증기준과 관련된 제반 업무
- ③ 기타 동보위에서 위임받은 업무

**제5조(기준 검토)** ① 위원회는 인증기준의 부분적인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동물보건 분야를 대상으로 2주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제6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4조의 주요임무와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사항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 관련자는 동보위가 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을 엄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2021. 07. 0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모든 관계자(이후 ‘관계자’)의 윤리 강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태도)** 관계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독립성)**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밀의 유지)** 관계자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본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관계자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상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행위의 금지)** 관계자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청탁, 선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이해관계자 평가의 참여금지)** ①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 또는 그 직계가족이 현재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학생, 교수, 행정담당자, 직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자신 또는 그 직계가족이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잠정적 협정 및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신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지난 3년간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대표직에 있었던 경우

4. 자신 또는 그 직계가족이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요청에 의한 공식적인 자문을 제외하고는 평가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평가·인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제8조(금품수수의 금지)** 관계자는 동보위가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서약서)**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 서명하여 동보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 서 약 서

본인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관계자(위원, 행정요원, 보조요원)로서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 지침’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평가·인증 관계자로서 활동하는 기간동안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성 명 \_\_\_\_\_

서 명 \_\_\_\_\_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귀하



## **부록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대학용 편람」**



[부록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편람  
(대학용)**

2021. 0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

## 머 리 말

---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천만,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보다 양질의 역량 있고 체계를 갖춘 수의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수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통해 수의료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작업환경에 처하게 되므로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실습 이수가 필요하며, 동물보건사가 되고자 하는 이는 의사법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수 체계 및 교육환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도록 의사법 제16조 4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한 졸업자에게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인증기준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인증기준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수행되며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 판정을 받게 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은 인증평가의 원칙과 기본만을 제공한 것으로 인증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증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그리고 최종 인증유형 판정 결과를 내리기까지 여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편람 및 지침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양성기관용 편람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들이 서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평가단의 방문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 편람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이 편람을 통해 인증신

청기관은 인증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 표준화를 이루어 양질의 동물보건사 양성 및 배출을 도모함으로써 동물보건사 제도는 우리나라 수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수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 동물복지 선진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확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수의료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목 차

---

제1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개요 .....	221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실시 배경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필요성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주요업무	
제2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방향 .....	223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의미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기본방향	
제3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	225
1. 인증기준위원회	
2. 인증평가위원회	
3. 인증판정위원회	
4. 재심위원회	
제4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기대 효과 .....	228
제5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	229
1. 평가·인증 절차 요약	
2. 평가·인증 흐름도	
3. 인증평가 수수료	

제6장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33
1.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의의	
2.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	
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4. 자체평가의 취지	
5. 자체평가의 절차	
6. 자체평가보고서 구성과 서식	
제7장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	247
1. 평가단 구성	
2. 서면평가	
3. 방문평가	
제8장 인증평가 결과(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심의 .....	250
제9장 인증주기 및 인증유형 .....	251
제10장 인증결과에 대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이의신청(재심요청) 및 재심의 .....	252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이의신청	
2. 재심의	
제11장 판정 및 평정 .....	253
1. 판정유형 및 판정기준	
2.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3.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방법	
제12장 용어 정의 .....	259

제13장 영역별 인증기준(요약) .....	261
제14장 영역별 인증기준 .....	266
1. 조직과 운영 영역 .....	267
1.1. 교육목적과 목표	
1.2. 조직과 재정	
1.3. 전략과 계획	
2. 교육과정 영역 .....	281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3. 교육과정 개선	
3. 학생 영역 .....	301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2. 학생활동과 지원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4. 교수 영역 .....	319
4.1. 전임교수	
4.2. 학생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	333
5.1. 교육시설 및 설비	
5.2. 연구시설과 설비	
5.3. 시설설비의 관리	
부록.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 .....	345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 운영지침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
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9.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 지침

# 제1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개요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실시 배경

- 반려동물, 반려인의 증가에 동반하여 양질의 수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수의료는 보조인력과 함께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수행
- 수의료 전문과목에 특화된 보조인력 필요
- 동물보건사 제도 필요성 대두
- 동물보건사 제도 수의사법 2019.8.27.에 공포, 2021.8.28.에 시행
- 동물복지 선진국 위상 확보
-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수의료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필요성

-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양질의 수의료서비스 요구
-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동물보건사 양성 및 배출 보장
- 동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군인 특성에 따라 동물 치료, 동물 간호, 수의사 보조를 위한 능력 보장
- 동물 보건 관련 지식 확보를 위한 교육이수 확인
- 동물보건 관련 실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시간 동안의 동물병원 현장실습 확인
- 이에 따라 수의사법 제16조 4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평가·인증을 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능력있고 역량있는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인증기준을 수립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필요

###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주요업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대학용 평가편람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평가자용 평가 편람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진행 관련 사항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사항

## 제2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방향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의미

- 양성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본 교육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동물보건사 응시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역량있는 동물보건사가 양성되도록 한다.
- 인증은 양성기관과 프로그램 운용 전반에 관한 것이다.
- 양성기관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기본방향

####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을 위한 조직 및 운영 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교육 목적과 목표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조직 및 재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교육 전략과 계획

#### □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졸업이수 규정 및 동물보건사 역량에 적합한 교육과정 구성
- 동물보건사 양성 교과목 및 실습 이수
- 동물병원 현장실습 이수
-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 품질 관리

####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학생에 대한 평가

- 학생 지도체제와 운영
- 학생의 교육, 실습 및 활동을 위한 지원
- 학생 복지제도 및 시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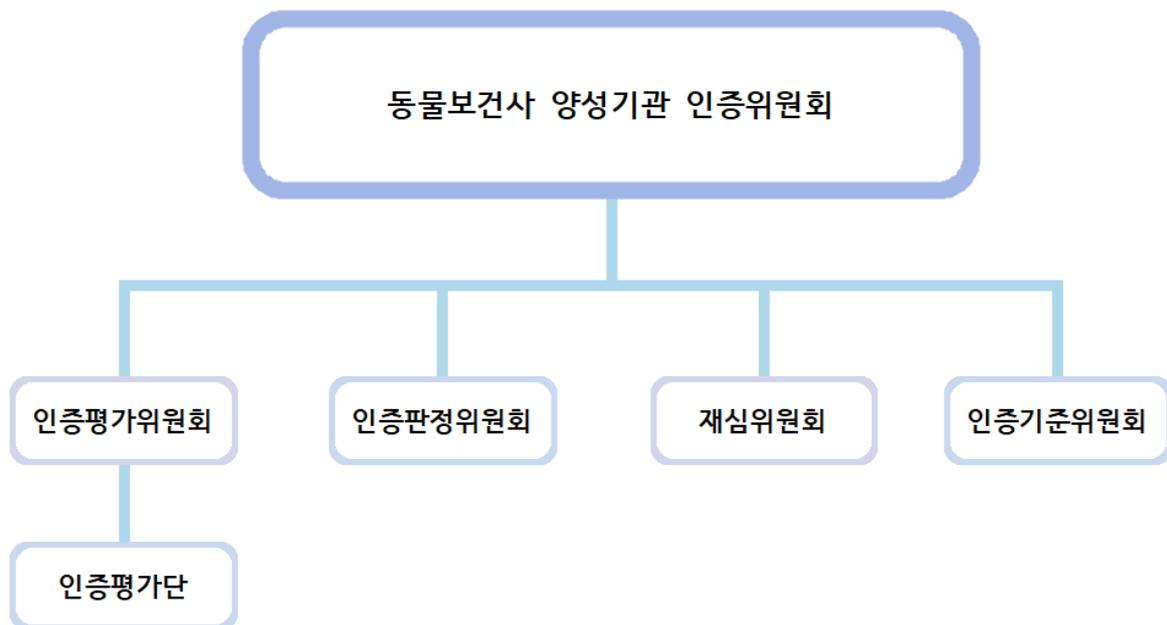
- 동물보건사 양성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수 확보
- 동물병원 현장실습 지도 교원 및 현장 지도자
-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수 지원 체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에 대한 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
-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적합한 실험·실습기자재 구비
- 시설 설비의 관리

# 제3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는 수의사법 제16조 4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해오는 사항을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그 조직은 아래와 같다.



## 1. 인증기준위원회

### □ 구성

- 인증기준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위원을 동수로 하여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이내로 구성함

### □ 기능

- 인증기준의 개발, 수정, 보완

■ 인증기준과 관련된 제반 업무

■ 기타 위임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기준위원회」의 업무

## 2. 인증평가위원회

□ 구성

- 인증평가위원회는 기관인증평가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위원 수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회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이 평가단장을 추천함

□ 기능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보고서 적합성 심의

■ 최종보고서 심의

■ 연차보고서 심의

■ 기타 위원회 업무 관련 사항

## 3. 인증판정위원회

□ 구성

- 인증판정위원회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 수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를 동수로 하여 1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학 및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수의사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수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기능

■ 인증평가위원회가 송부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인증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여 인증 결과를 승인

- 재심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인증유형 판정

## 4. 재심위원회

□ 구성

-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재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사 및 비수의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 인사로 구성

□ 기능

- 인증평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시 재심의
-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평가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재심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제4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의 기대효과

- 대학 : 평가를 통해 인증 취득 및 대학 교육 자체 점검과 자율평가 체제 구축
  -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여 졸업생에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체계 확립
  - 대학은 인증을 통하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하며 자체적으로 대학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
  - 인증평가 달성을 위한 대학 내 시설 및 인적자원 확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
  
- 사회 : 반려동물 산업에 기여 및 대학 교육의 질 보증과 신뢰 부여
  - 동물보건사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정보 제공
  - 동물보건사 교육에 대한 신뢰 부여
  - 동물병원은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수의료서비스 의료체계 구축
  - 날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보건사제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수의료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화 도모
  
- 정부 : 동물보건사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에 의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사회 안정화
  - 효율적인 동물보건사제도 시행에 따른 수의료서비스의 향상 주도
  - 평가 인증을 통해 정부 차원의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 표준화 기준 설정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성 확보
  -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및 안정화에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동물복지 선진국 위상 확보

## 제5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과정

### 1. 평가·인증 절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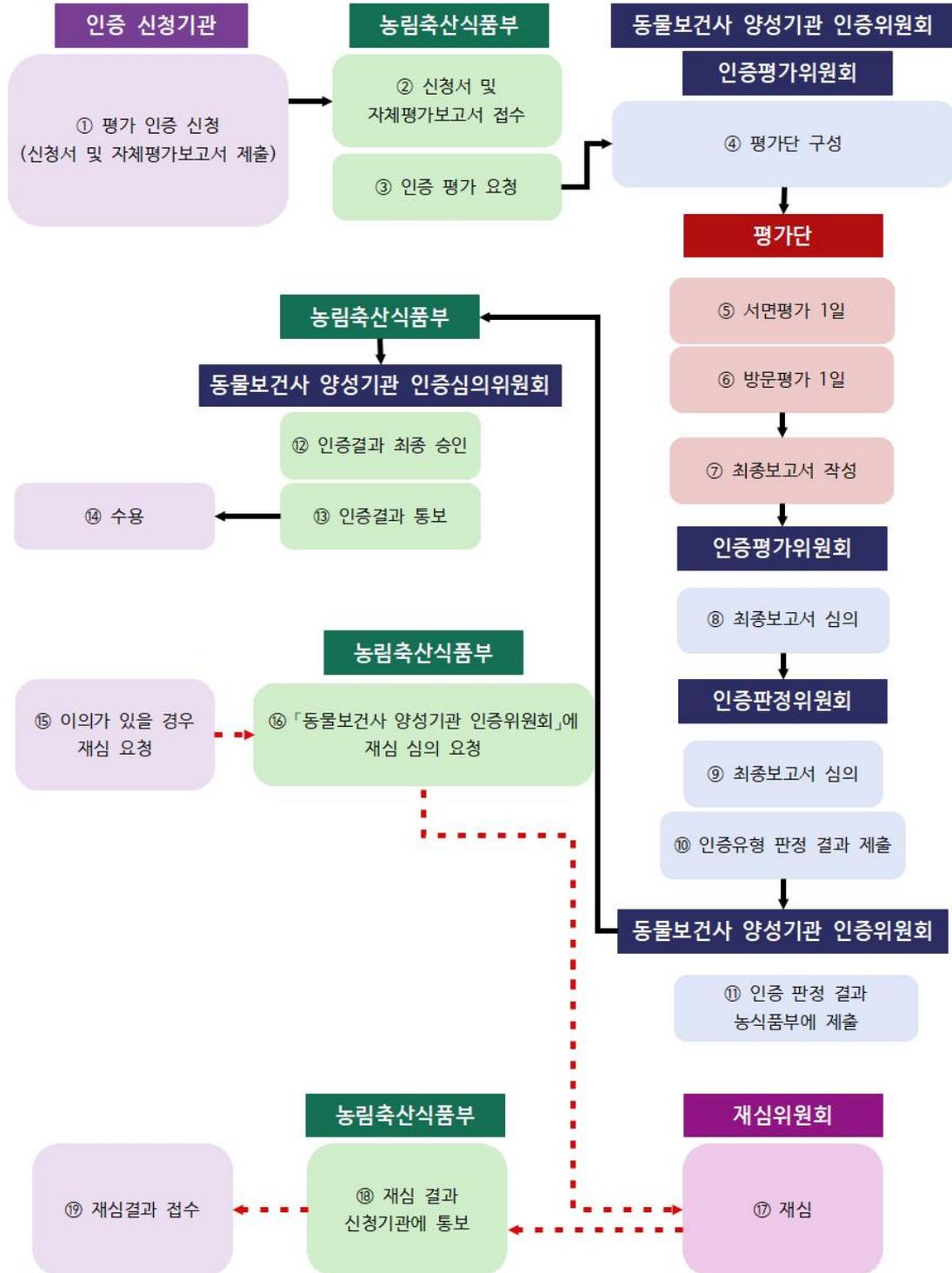
○ 인증은 평가·인증 신청 이후 최종판정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됨

- 1) 평가·인증 신청 : 인증신청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연도 인증 신청 일정에 따라 평가·인증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요청 : 양성기관의 인증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수행 요청
- 3) 평가단 구성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평가단 구성
- 4) 인증평가단의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
- 5) 인증평가단의 현장 방문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 현장 확인 및 서면평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 6) 인증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제출 : 인증평가단은 방문평가 종료 후에 최종보고서 작성
- 7) 인증평가위원회 : 인증평가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심의
- 8) 인증판정위원회 : 인증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판정 심의
- 9) 인증판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10) 신청기관에서 이의 신청 시 재심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 2. 평가·인증 흐름도

- 1단계: 인증 신청기관이 평가 인증 신청(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 3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요청
- 4단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가 평가단 구성
- 5단계: 평가단 서면평가 1일
- 6단계: 평가단 방문평가 1일
- 7단계: 평가단이 최종보고서 작성
- 8단계: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심의
- 9단계: 인증판정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심의
- 10단계: 인증판정위원회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유형 판정 결과 제출
- 11단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가 인증 판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12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결과 최종 승인
- 13단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심의위원회가 인증결과를 통보
- 14단계: 인증 신청기관이 결과 수용
- 15단계: 인증 신청기관이 이의가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심 요청
- 16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재심 심의 요청
- 17단계: 재심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18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심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
- 19단계: 인증신청기관이 재심결과 접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절차 흐름도>



### 3. 인증평가 수수료

○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인증평가비)는 다음 항목에서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비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회의비	20만원×10명×1회	200만원	
평가단 서면평가 수당	20만원×5명×1회	100만원	- 서면평가
평가단 방문평가 수당	20만원×5명	100만원	- 방문평가
평가단 서면/방문평가보고서 원고료	50만원×5명	250만원	- 보고서 작성
인증평가위원회 회의비	20만원×10명×2회	400만원	- 자체평가보고서 적합 성 심의, 평가단 선정 - 최종보고서 심의
인증판정위원회 회의비	20만원×10명×1회	200만원	- 최종보고서 심의
각종보고서인쇄비	25만원×2회	50만원	-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포함 최종보고서
예비비 (숙박 및 출장비)	20만원×평가단 5명	100만원	- 숙식비 10만원 - 출장비 10만원
<b>총 계</b>		<b>1400만원</b>	

\* 재심위원회 개최 시 회의비 200만원 계상되지 않음

\*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1인당 20만원

## 제6장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1.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의의

자체평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전반적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학생, 시설·자원, 재정·행정실태, 발전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자체평가의 결과를 정리한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인증평가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자료이다. 자체평가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 프로그램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는 근거가 되는 자료와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질적인 평가에서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전 인증평가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정량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 2.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절차의 중요한 과정인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기본 자료이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는 자료이므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학사행정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장·단점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보위가 제공한 자체평가보고서의 양식을 기초로 하여 본문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단, 동보위가 제공한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재될 표의 양식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단의 방문평가에 앞서 서면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 대상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물론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특별히 자료 제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한다(예: 2021년도 2학기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까지의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2) 모든 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필수기준이다. (3) 참고자료의 [부록]은 자체평가보고서에 첨부하는 자료이며, [비치]는 현장 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아울러 [현장확인] 자료는 비치할 수는 없으나 현장 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이다.

### 4. 자체평가의 취지

자체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자체평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양성 목표에 부합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자체평가에서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과 문제점을 명료화 하는 등 평가자 스스로가 소속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증명 그리고 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즉,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증기준을 충족시킨 정도를 규명하게 되고,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기준에 적합한 역량있는 동물보건사의 양성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 5. 자체평가의 절차

자체평가 절차는 네 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자체평가 준비 단계

- ② 자체평가 실시 단계
- ③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단계
- ④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단계

다음은 각 단계별로 자체평가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1단계. 자체평가 준비

첫째,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주요 보직자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영역별 위원을 지정하여 실무적으로 일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셋째,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각 평가영역별 위원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자체평가의 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교수 및 관계자들에게 자체평가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 평가·인증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동시에 양성기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 2단계. 자체평가 실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자체평가를 위한 조직, 실시 계획 및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할 때는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에 참여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자체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3단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수집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영역별 연구위원이 작성하여 최종 수집한 후,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서식에 맞게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인증 신청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

#### 4단계.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자체평가의 최종 목적은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해 합당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체평가를 통해 양성기관은 특징점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결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 인증평가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며, 이와 동시에 양성기관의 교육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 6. 자체평가보고서 구성과 서식

### (1) 머리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작성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자체평가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확하게 평가하였으며, 사실적 내용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기술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평가 준비에 성실한 준비를 해 왔음을 밝히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또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평가를 위해 수고한 교직원에 대한 치하와 협조 기관에 감사의 말 등을 기술한다.

## (2)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방법

### 가. 목차의 구성

제1장. 머리말

제2장. 서론

제3장. 자체평가결과

1. 조직 및 운영 영역
2. 교육과정 영역
3. 학생 영역
4. 교수 영역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제4장 종합 및 논의

별책부록 :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 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방법

### 1) 머리말

머리말에는 자체평가 연구가 충분하게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평가하였으며, 사실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과 자체평가를 통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평가 준비에 성실한 준비를 해왔음을 밝히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또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평가를 위해 수고한 교직원에 대한 치하와 협조 기관에 감사의 말 등을 기술한다.

### 2) 서론

자체평가 목표, 내용, 방법 등을 평가의 기획에서부터 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다. 또한, 평가의 준비와 계획, 자료 수집,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및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 분석과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확보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 3)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 결과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있는 영역별 평가기준을 기술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각 평가영역별 결과에 대한 기술에서는 제시되어있는 내용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실하게 강점과 미비점을 제시하고, 미비점으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발전계획을 기술한다.

### 4) 종합 및 논의

각 평가영역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맺는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특성 및 장점 등을 부각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자체평가 결과의 건의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5) 별책부록

평가영역별로 제시되고 있는 평가 요구자료를 별책으로 제작한다. 또한, 책자나 자료를 방문평가에 대비하여 비치해 둔다.

#### 6) 성과(outcomes) 중심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가·인증 준비가 얼마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효율성과 혁신을 증가시켰는지 교육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한 교육수행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와 고등교육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책무성을 입증한다.

### (3) 제출방법

#### 1) 규격

- 규격 : A4, 양면인쇄로 100 페이지 내외

#### 2) 제본요령

- 자체평가보고서 : 15부
- 부록 : 15부(영역별 분리 제본)
- USB 또는 CD 1매 : 자체평가보고서와 부록(아래한글 파일 hwp) 수록
- 기타: 자체평가보고서와 부록은 별도로 제본하며, 부록의 경우 영역별로 분리 제본

#### 3)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4) 평가·인증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이후 일정

- 1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보위에 인증 평가 요청
- 2단계: 평가단 구성
- 3단계: 서면평가 1일(동보위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 4단계: 방문평가 1일(서면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 5단계: 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제출(방문평가 종료 후 2주 이내)
- 6단계: 인증평가위원회 최종보고서 심의

- 7단계: 인증판정위원회 최종보고서 심의 및 인증유형과 기간 판정
- 8단계: 인증판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9단계: 신청기관에서 이의 신청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을 받아 재심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4) 서식

- 다음의 서식과 제시한 양식을 참고로 하여 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참고자료 중 동보위에서 제공하는 표나 양식은 본 자료의 뒷부분에 서식을 별도로 첨부하고 있다.
- 본문과 부록을 통해 제시한 표는 크기는 조절할 수 있지만, 별도의 도움말이 없는 경우 임의로 항목을 첨삭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 본문에 삽입되는 <표>는 기술 내용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기술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 서식은 ‘아래 한글’로 작성하되, 글자체는 굴림체, 글자 크기는 제목 15포인트, 본문 내용 11 포인트, 줄 간격 160%, 여백 좌우 25, 상하 30으로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20\_\_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___대 학(교)
연락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전화:
	H.P:
	이메일:
	주소:

20    년    월    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_\_\_\_\_ 총장(학장)  
 \_\_\_\_\_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학과장 \_\_\_\_\_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 ○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마크

20○○년 ○○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대학 ○○학과)**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위한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본 보고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 20    년    월    일

○○대학(교) 학과장                   (성명)                   (직인)

○○대학(교)학장(총장 )           (성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자체평가기획위원회 명단

소속 및 직위	성명	담당업무

### 자체평가위원회 명단

소속 및 직위	성명	작성분야

# 목 차

제1장 머리말 .....	00
제2장 서론 .....	00
제3장 자체평가결과	
1. 조직과 운영 영역	
1.1. 교육목적과 목표 .....	00
1.2. 조직과 재정 .....	00
1.3. 전략과 계획 .....	00
2. 교육과정 영역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	00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	00
2.3. 교육과정 개선.....	00
3. 학생 영역	
3.1. 학생지도체계와 운영 .....	00
3.2. 학생활동과 지원 .....	00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	00

**4. 교수 영역**

4.1. 전임교수 .....00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00  
4.3. 교수의교육 및 활동지원 .....00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5.1. 교육시설 및 설비 .....00  
5.2. 연구시설과 설비 .....00  
5.3. 시설설비의 관리 .....00

**제4장 종합 및 논의 .....00**

**별책부록 :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 제7장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 1. 평가단 구성

#### ○ 구성 절차

- 1단계 : 평가위원 pool 구성
- 2단계 : 평가위원 교육 실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전문인력 양성 교육 워크숍 4시간으로 대체 가능)

- 3단계 : 평가위원 pool 후보자 중 평가단 구성(5명 이내)
- 4단계 : 평가단에 대한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제척사유 여부 확인
- 5단계 : 평가단 위원별 담당 평가영역 확정

### 2. 서면평가

#### ○ 목적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평가 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 실시함

#### ○ 서면평가 주요 내용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 목록 작성
- 현장 방문평가 시 추가 검토 사항 작성
- 서면평가서 작성

### 3. 방문평가

#### ○ 목적

- 자체평가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과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통찰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
- 인증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서면평가 활동 중 생긴 의문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검증하는 기회이고,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게는 자체평가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관계자들과 인증평가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상호이해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현장 방문평가 1일 세부 일정 (예시)

<표 1> 현장 방문평가 활동 일정 : 1일

구분	시간	주요 활동	비고
오전	08:50	■방문 평가 대상기관에 집결	
	09:00	■학장(학과장) 예방 ■평가위원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측 자체 평가위원 상견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동물보건사 양성기관현황 발표 : 10분 이내
	09:30	■현장 방문평가계획 협의 및 추가자료 제출 확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측 자체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현장 비치자료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면담자 리스트 확인 및 면담 시간 협의	■평가위원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측 자체평가위원 회의
	10:30	■평가위원별 평가활동 개시	■평가위원 및 대학 관계자
	12:00	중식(도시락)	(시간 엄수)
오후	13:30	■담당 평가영역별 평가활동 -평가영역 전반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제출 증빙 및 추가자료 확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구성원 면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시설 방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측 자체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면담
	17:30	■당일 평가활동 종합 및 평가 영역별 평가 결과 협의 ■최종보고서 작성방법 협의	■평가위원 회의
	18:00	■방문평가 종료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구성원 면담 및 시설 방문 일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과 논의하여 확정함

○ 현장 방문평가 시 주요 활동

■ 일정 조정

- 학장(학과장)을 예방하는 것으로 현장 방문평가가 시작됨 (학장 부재 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평가 시작 시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관계자와 평가단 간 전체 평가 일정 협의, 현장 비치자료 및 추가요청 자료 확인, 면담대상자 확인 및 일정 조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시설 방문 장소 및 일정 논의하여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함
- 면담대상자 일정 조정 시에는 동보위에서 요청한 면담대상자의 수업 및 업무 일정을 조사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면담 가능한 시간을 파악해 놓아야 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시설 방문은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만으로 제한하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에서는 사전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별 방문 시간표를 마련해 놓아야 함

○ 현장 방문평가 시 유의 사항

■ 평가일정 준수

-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에서는 학장(학과장) 예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현황 설명에 적절한 시간을 안배하여 정해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건전한 평가분위기 조성

- 건전한 분위기에서 현장 방문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윤리강령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침에 어긋나는 접대와 불필요한 환영행사를 절대 금함
-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관계자와 식사는 절대 금함
- 평가를 마친 후에 평가위원은 바로 평가 대상기관을 떠나야 하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 관계자 동행은 일절 금함
- 점심식사는 교내 교직원 식당 또는 도시락 이용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간 중 모든 비용은 동보위에서 부담함. 어떠한 비용(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지불하지 않도록 함
- 평가자는 강압적인 질문이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고, 평가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질문이나 폄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함

## 제8장 인증평가 결과(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심의

### ○ 목적

-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인증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작성의 공정성과 적절성 검토 및 심의

### ○ 내용

- 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방문평가 일정 중 평가위원이 각자 자신이 맡은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한 후 평가단장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검증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 보고서를 종합 작성함
-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제출함

- 인증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증판정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승인하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결과를 제출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체 결성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심의 위원회」에서 동보위가 제출한 인증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인증결과를 해당 인증 신청 기관에 통보함

## 제9장 인증주기 및 인증유형

- 인증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4단계로 구분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인증주기를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완전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영역 모두에서 적격인 경우에 해당된다.
- 단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 16조 4의 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제10장 인증결과에 대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이의신청(재심 요청) 및 재심의

## 1. 이의신청

-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다.
- 재심 요청을 접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동보위)에 해당 양성기관 인증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다.

## 2. 재심의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심요청을 받은 동보위는 재심위원회를 소집한다
- 재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3항에 따른다.
- 재심의 내용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4항에 따라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최종보고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음
- 재심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5항에 따라 최종 인증 결과가 됨
- 동보위는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보고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심결과를 제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재심결과를 해당 양성기관에 통보한다.
-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양성기관이 동보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제11장 판정 및 평정

## 1. 평가·인증

-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적합의 평가를 받은 자체평가보고서만을 평가대상 자료로 인정함
-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위원 인력pool 내에서 평가단장을 포함한 5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수행함
- 평가단은 평가위원별 각 영역을 분담하여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평정표(항목별 점수표)를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2. 판정유형 및 판정기준

- 완전인증(3년):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에서 적격 이상 및 인증기준 35개 항목 중 평점이 70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단축인증(2년):
  -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단, 인증기준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이상이어야 함)
  -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됨
  -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함
- 인증불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증불가로 판정함
  - 인증기준 5개 영역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미만인 경우
  - 인증기준 5개 영역의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이 1개 이상인 경우
  -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미흡\*인 경우
  -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 35개 항목 중 21개(60%) 이상인 경우
- 인증 불가 판정 시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 4의 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

○ 평가 시 유의사항

- 항목별 평가사항들을 판정할 때 평가사항 중 첫 번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단, 평가 시 유의사항 적용은 최초 인증평가 개시로부터 2년간 유예하기로 함

○ 항목별 평가와 점수

- 항목별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평가	평정기준	평점*	비고
우수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3점	전 항목 우수인 경우 105점 만점
적격	평가사항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점	전 항목 적격인 경우 총 평점 70점 이상
미흡	평가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점	전 항목 미흡인 경우 총 평점 35점 이상
부적격	평가사항을 모두 또는 거의 충족하지 못한 경우	0점	총 평점 35점 미만

\* 평점은 평가사항의 배점에 따라 적격, 미흡, 부적격의 경우 0.5점이 추가될 수 있음

### 3.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은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 인증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고, 단축인증, 인증불가와 재인증 신청 시기, 및 인증취소 경우는 아래 표와 같다.

인증 유형	인증 기간
완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인증일로부터 만 3년 간 인증 유효)</li> </ul>
단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인증일로부터 만 2년간 인증 유효)</li> <li>• 1년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li> </ul>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함.</li> <li>• 인증 불가 판정 후 판정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li> </ul>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 4의 2항 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li> </ul>

#### 4.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방법

○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5개 영역, 15개 부문, 3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각 항목은 3~6개의 평가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평가사항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계량화 함 (표 1)

▶ 표1. 영역, 부문, 항목별 평가사항 수

영역	부문 수 (번호)	항목 수 (번호)	평가사항 수
1. 조직 및 운영	1 (1.1)	1 (1.1.1)	3
		2 (1.1.2)	3
	2 (1.2)	3 (1.2.1)	4
		4 (1.2.2)	4
	3 (1.3)	5 (1.3.1)	3
		6 (1.3.2)	3
2. 교육과정	1 (2.1)	1 (2.1.1.)	3
		2 (2.1.2.)	5
	2 (2.2)	3 (2.2.1.)	3
		4 (2.2.2.)	3
		5 (2.2.3.)	4
		6 (2.2.4.)	5
	3 (2.3)	7 (2.3.1.)	4
		8 (2.3.2.)	3
3. 학생	1 (3.1)	1 (3.1.1.)	3
		2 (3.1.2.)	3
	2 (3.2)	3 (3.2.1.)	3
		4 (3.2.2.)	3
		5 (3.2.1.)	3
		6 (3.2.2.)	5
	3 (3.3)	7 (3.3.3.)	5
		8 (3.3.4.)	6
4. 교수	1 (4.1)	1 (4.1.1.)	3
		2 (4.1.2.)	3
	2 (4.2)	3 (4.2.1.)	3
		4 (4.3.1.)	3
	3 (4.3)	5 (4.3.2.)	3
		6 (4.3.3.)	5
		7 (4.3.4.)	5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1 (5.1)	1 (5.1.1.)	3
		2 (5.1.2.)	3
		3 (5.1.3.)	3
	2 (5.2)	4 (5.2.1.)	3
		5 (5.3.1.)	3
	3 (5.3)	6 (5.3.2.)	5
<b>계</b>	<b>15</b>	<b>35</b>	

○ 평가 계량화는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의 4단계로 분류된 평가기준을 점수화함으로

써 평가 기준이 개념화되는 것을 피하고 수치로 표시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 사항 수에 따른 평가 평점, 점수에 따른 인증유형,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는 아래 표 2~5와 같음

▶ 표2.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평가사항 개수	배점
3	각 평가사항 당 1점
4	1,2번 평가사항은 각 1점, 3,4번 평가사항은 각 0.5점
5	1번 평가사항은 1점, 나머지 4개 평가사항은 각 0.5점
6	각 평가사항 당 0.5점

▶ 표3. 인증유형 별 판정기준

인증유형	판정 기준 (만점 105점)
완전인증 (3년)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70점 이상 2. 5개 영역 모두 영역별 평가점수가 적격 이상
단축인증 (2년)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35점 이상 2.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 1년으로 제한함
인증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인증기준 5개 영역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미만인 경우 2. 인증기준 5개 영역의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이 1개 이상인 경우 3.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미흡*인 경우 4.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 35개 항목 중 21개(60%) 이상인 경우

\* 미흡 평가기준은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에 따라 각 영역별 소계점수가 미흡 기본 점수를 초과하고 적격 기본점수 미만 범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함

▶ 표4.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

영역	부분	항목	평가사 수	우수(전항목 만점인 경우) 점수	적격(전항목 적격인 경우) 기본 점수	미흡(전항목 미흡인 경우) 기본 점수
1.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3	3	2	1
		1.1.2.	3	3	2	1
	1.2. 조직과 재정	1.2.1.	4	3	2	1
		1.2.2.	4	3	2	1
	1.3. 전략과 계획	1.3.1.	3	3	2	1
		1.3.2.	3	3	2	1
		소계	20	18	12	6
2. 교육	2.1. 교육과정 구 성과 체계	2.1.1.	3	3	2	1
		2.1.2.	5	3	2	1
	2.2. 교육과정 운 영과 관리	2.2.1.	3	3	2	1
		2.2.2.	3	3	2	1
		2.2.3.	4	3	2	1
		2.2.4.	5	3	2	1
	2.3 교육과정 개 선	2.3.1.	4	3	2	1
		2.3.2.	3	3	2	1
	소계	30	24	16	8	
3. 학생	3.1. 학생지도체제 와 운영	3.1.1.	3	3	2	1
		3.1.2.	3	3	2	1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4	3	2	1
		3.2.2.	3	3	2	1
	3.3. 학생복지제 도 및 시설	3.3.1.	3	3	2	1
		3.3.2.	5	3	2	1
		3.3.3.	5	3	2	1
		3.3.4.	6	3	2	1
	소계	32	24	16	8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3	3	2	1
		4.1.2.	3	3	2	1
	4.2. 현장실습지도 교원및현장지도자	4.2.1.	3	3	2	1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3	3	2	1
		4.3.2.	3	3	2	1
		4.3.3.	3	3	2	1
4.3.4.		3	3	2	1	
	소계	21	21	14	7	
5. 교육시 설 및 실 습 기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3	3	2	1
		5.1.2.	3	3	2	1
		5.1.3.	3	3	2	1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3	3	2	1
		5.3. 시설설비의관 리	5.3.1.	3	3	2
	5.3.2.		3	3	2	1
		소계	18	18	12	6
	총계	121	105	70	35	

## 제12장 용어 정의

- **영역:** 인증 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5개 주제 단위를 의미한다.
- **부문:** 각 5개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의미한다.
- **항목:** 각 부문(소주제)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의미한다.
- **현장실습지도교원:**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대학 전임교수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석사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을 의미한다.
- **현장지도자:** 임상실습기관(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소속된 진료수의사(임상경력 2년 이상)로서 학생들의 임상현장 실습 지도를 위해 대학이 위촉한 수의사를 의미한다.
-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전국 수의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병원을 지칭한다.
-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인증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입학정원:**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학정보공시'의 제3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의미한다.

- **편제정원:** '대학정보공시'의 제3항을 참고하여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년제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2배, 일반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4배의 수를 의미한다.
- **신설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 당시 최소 3학기 이상의 동물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지칭한다.
- **동교협:**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의 약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7월에 사단법인 승인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협의체를 지칭한다.
- **동보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약어로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지칭한다.
-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약어로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주체별 평가대상(교수, 학생,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평가, 개선, 환류해가는 체계를 말한다.

## 제13장 영역별 인증기준 (요약)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 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분	평가항목	
II.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학과는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절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분 8항목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활동,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7항목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V.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제14장 영역별 인증기준

1. 조직과 운영
2. 교육과정
3. 학생
4. 교수
5. 시설 및 자원

# 1. 조직과 운영



## 1.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 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1. 조직 및 운영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학과를 운영하여야 한다.

### 1.1. 교육목적과 목표

####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의 비전과 동물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건사의 핵심역량이 포함되어 있는가?
2.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과 학과의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가?
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한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 기술내용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대학의 비전과 동물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건사의 핵심역량을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2. 교육목적과 목표가 대학과 학과의 구성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기술한다.
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한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기술하고, 개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과정 및 이에 대한 검토 내용 등을 기술하도록 한다.
4. 기타 대학의 교육이념을 기술한다.

#### 비치자료

- 1-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개정한 경우,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활동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등 기타)

##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명문화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
3.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학과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과가 설정한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의 학습성과 내용을 제시하고, 어떻게 명문화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2.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기술한다.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과정 및 이에 대한 검토 내용 등을 기술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구성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기술한다.

### 부록

- 1-1. 학과에서 설정한 동물보건사교육 졸업역량(학습성과)

### 비치자료

- 1-3. 동물보건사 교육 학습성과(학생의 졸업역량)
- 1-4. 동물보건사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활동 자료(설문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등)
- 1-5.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 예산편성과 집행, 기타 학과 운영 등에 학(과)장이 동물보건학 전공 관련 전문성 및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과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조교)이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대학 재정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 학(과)장의 학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과 예산 편성 절차,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을 제시하고, 학과 예산 편성에서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간략히 기술한다.
2. 학과의 행정체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학과운영 규정, 인사규정, 업무 분장표, 조직표 등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3. 학과운영지원 인력 중 행정전담 인력 확보 현황을 [표1]에 맞춰 작성하고, 확보기준에 맞게 확보되고, 행정전담 인력의 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검토한다.
4. 학(과)장의 현황을 [표2]에 맞춰 작성하고, 동물보건학관련 전공일치여부를 검토한다.
5. 학과장의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대학 인사 규정 혹은 학과 운영규정의 내용을 제시한다.

표 1. 학과의 행정전담 인력확보(최근 2년간)

연도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월일~년월일)
2020	행정	김조교	조교	학사 행정	
		김직원	직원	학사 행정	
	수업	김조교	조교	실습 지원	
2019					

\* 행정전담 인력(직원 또는 조교) 확보 기준

학생 수(편제 정원)	행정전담 인력 확보기준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160명 이하	1.5명 이상	1명 이상
161명 이상~320명 이하	1.5명 ~ 학생:인력 = 140:1 이상	1명 ~ 학생:인력 = 160:1 이상
321명 이상	2.3명 ~ 학생:인력 = 180:1 이상	2명 ~ 학생:인력 = 200:1 이상

표 2. 학과장 현황(최근 2년간)

연도	성명	보직 (학과장/학장)	직위	전공	학위
2020					
2019					

## 부록

- 1-2. 학과 운영 규정
- 1-3. 대학과 학과의 조직도, 학과 위원회 위원 명단
- 1-4. 학과 보직교수와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표, 학(과)장의 발령대장

## 비치자료

- 1-6. 대학 인사 규정
- 1-7. 학과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8. 학과 운영 지원 인력의 고용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과 행정직원 또는 조교의 발령대장,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대장 등)
- 1-9. 학(과)장의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규정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10. 학(과)장의 수의사 면허증 또는 최종 학위 증명서

## 현장확인

- 1. 교수면담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과 재학생 수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학과 예산을 적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2. 학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3. 학과 예산과 실험실습비 집행률이 각각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재학생 1인당 학과 예산 확보 현황을 [표 3]에 맞춰 작성하고,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과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학과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
2. 학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정을 간략히 기술한다.
3. 실험실습비로 편성, 집행한 예결산 내역을 [표 4, 5]에 맞춰 작성하고, 집행률이 90% 이상 유지되는지 검토한다.
3. 학과 예산 대비 집행 현황을 [표 6]에 맞춰 작성하고, 집행률이 90% 이상 유지되는지 검토한다.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

표 3. 재학생 1인당 학과 예산 확보 현황(최근 2년간)

학년도	학과 재학생 수 (a)	학과 등록금 (b)	학과 등록금 수입총액 (c)	학과 예산 총액 (d)	학생 1인당 학과 예산 (e=d/a)	학과 예산 집행 금액 (f)	학과 예산 집행률 (g=f/d×100)	전년대비 증감률 ((당해 연도-전년도)/전년도)×100	
								학과 등록금 증감률	학생 1인당 학과 예산 증감률
2020									
2019									

#### 【작성안내】

1. 학과 재학생 수(a):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의 학부과정 재학생 수를 뜻한다.
2. 학과 등록금(b): 학과별로 당해 연도 고지된 학생 1인당 연간액(1학기+2학기 등록금)을 뜻함. 입학금은 제외함.
3. 학과 등록금 수입 총액(c): 당해 연도 연간 학과 등록금 수입 총액으로 입학금을 포함하며 결산 기준[정보공시 8-바-2 참조]으로 작성함.

- 4) 학과 예산 총액(d): 인건비, 건축비, 장학금, 자산성 경비 등을 제외함. 실험실습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평가비용(인증평가 수수료 제외), 교수개발비(학과예산으로 편성된 경우만 반영), 연수지원비, 세미나 개최비, 학생봉사활동 지원비 등 학과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교비회계만 해당함.  
단, 실습실 구축을 위한 예산은 해당됨.
- 5) 학과예산 집행금액: 학과예산 집행금액은 [표 5]의 연도별 계와 일치해야 함.
- 6) 전년대비 증감률: 학과 등록금(b)와 학생 1인당 학과 예산(e)의 각각의 증감률을 뜻함.

표 4. 실험실습비 예결산 내역(최근 2년간)

사용내역	2020				2019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교비	국고	교비	국고	교비	국고	교비	국고
실습기자재 구입비								
실습기자재 유지보수비								
실습지침서 제작비								
실습재료비								
실습지도 회의비								
실습지도 교통비								
실습지도비(현장실습 현장지도자 수당 혹은 실습만 실습비 등)								
실습교과과정 워크숍비								
실습교재 개발비								
...								
계	(가)		(나)		(가)		(나)	

**【작성안내】**

- 1) 국고보조금은 실습기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예산 및 결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음.  
단, 실습 소모품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음.  
※ 국고보조금 사용은 국고보조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집행 가능한 항목에 한함.
- 2) 계: (가), (나)는 교비에 의한 예산과 결산을 작성함(학부 과정 실험실습비 예결산만 해당됨).
- 3) 표4 사용내역의 내용은 예시임

표 5.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및 예산대비 집행률(최근 2년간)

	재학생수 (a)	실험실습비 예산총액(b)	실험실습비 결산총액(c)	예산대비 집행률 (d=c/b×100)
2020				
2019				

**【작성안내】**

- 1) 재학생수(a):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의 학부과정 재학생 수를 뜻한다.
- 2) 실험실습비 예산총액(b): 교비에 의한 예산만을 포함한다.
- 3) 실험실습비 결산총액(c): 교비에 의한 결산만을 포함한다
- 4) 실습기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책정하여 집행한 예산총액(b) 및 결산총액(c)에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음. 단 실습 소모품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음.

표 6. 학과 예산 대비 집행 현황(최근 2년간)

학년도	예산항목	예산 편성 금액 (a)	집행 금액 (b)	예산 집행률 c=(b/a)×100
2020				
	계			
2019				
	계			

**부록**

- 1-5. 학과 예산의 편성 내역(도표 작성)
- 1-6.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자료(도표 작성)

**비치차료**

- 1-11. 예산편성 및 심의 관련 자료(공문, 위원회 서류 등) (최근 2년)
- 1-12. 학과 예산의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등 근거자료(최근 2년)
- 1-13.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서류(최근 2년)
- 1-14.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 1-15. 실험실습비 관련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확인**

1. 교수 및 직원 면담
-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발전계획을 추진한 활동 내용과 실적이 있는가?
3. 발전계획과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연차별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술한다.
2. 학과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활동 내용 및 실행 실적을 기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 내용을 기술한다.

### 부록

- 1-7.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서

### 비치자료

- 1-16. 학과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회 회의록 등(최근 2년)
- 1-17. 학과 발전계획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 1-18. 발전계획의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개선에 반영한 자료(최근 2년)

###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3.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가?

#### 기술내용

1.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수립한 예산을 기록하고 집행실적을 기술한다.
2.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한 실적을 기술한다.

#### 부록

- 1-8. 중·장기 발전계획의 예산과 집행 자료

#### 비치자료

- 1-19.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집행실적 포함)(최근 2년)



## 2. 교육과정



##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Ⅱ.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학과는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절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2. 교육과정

동물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대학과 학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론 교육, 교내 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는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
2.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인가?
3.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 기술내용

1. 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 교양, 전공과목,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의 이수학점 편성현황 제시하고 이들 교과목의 균형과 적절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2.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에 따라 졸업이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기술한다.
3. 학과가 설정한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기술한다.

## **부록**

2.1.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년간 입학생에게 적용된 교육과정 편성표)

## **비치차료**

2-1.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규정

2-2. 학습성과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개정한 경우, 개정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사 교과과정 중 필수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현장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0학점 이상인가?
2. 기초·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3. 임상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4.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0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5. 필수전공교과목의 학년별 편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 기술내용

1. 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표 7]에 맞춰 작성하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및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표 7. 교육과정 편성 현황(최근2년간)

이수구분	교과목명	1학년						2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주당시간
		학점	주당시간	실습											
교양선택															
교양필수															
교양소계															
전공선택															
전공필수															
교양합계															
전공합계															
교과총계															

**【작성안내】**

1. 현재 학년별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을 표를 구분하여 작성함.
2. 분류: 대학의 이수구분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학기, 교과목명, 최소이수학점은 동물보건사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부록

- 2-2.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대한 학칙 또는 규정(부분 발취)
- 2-3. 대학의 이수구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
- 2-4.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최근 2년 개설된 교과목)

## 비치차료

- 2-3.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 2-4.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 규정
- 2-5. 졸업생 전 학년 성적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영역	교육내용	필수 교과목	최소 이수 학점
기초예방 분야 (3과목)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동물해부생리학(3)	9학점
		동물질병학(3)	
		동물공중보건학(3)	
임상 분야 (7과목)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동물응급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건내과학(3)	19학점
		동물보건외과학(3)	
		동물보건임상병리학(3)	
		동물보건응급간호학(2)	
		동물보건영상학(2)	
		동물병원실무(3)	
		의약품관리학(3)	
복지 분야 (4과목)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행동 및 행동교정 동물영양	동물보건복지및법규(2)	10학점
		반려동물학(2)	
		동물보건행동학(3)	
		동물보건영양학(3)	
현장실습	동물병원현장실습		2학점
<b>15과목</b>			<b>40학점</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2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3	1	2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동물공중보건학	3	3		
	복지	반려동물학	2	2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영양학	3	3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3	1	2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3	1	2	
<b>소계</b>			<b>19</b>	<b>15</b>	<b>4</b>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2	1	1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2	1	1		
<b>소계</b>			<b>19</b>	<b>7</b>	<b>12</b>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4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보건영양학	3	3	0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복지	반려동물학	2	2	0	
2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3	1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0	
	임상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3	1	2	
	복지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	3	1	2	
3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2	1	1	
4	임상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2	1	1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3	1	2	
	복지	동물공중보건학	3	3	0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0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별 학습목표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성과를 설정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도구 등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
3. 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필수전공교과목별 학습목표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성과를 설정하여 기술한다.
2. 평가방법과 도구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이를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3. 교과목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개선이나 학습성과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 부록

2-5. 전공이론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2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6. 학습목표 및 성과, 평가방법 및 도구가 제시된 필수 전공교과목 강의계획서
- 2-7.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자료 및 분석결과 등

2.2.2.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이론, 실습 등)에 적절한 학생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이론강의실과 실습실의 운영관리는 적절한가?
2. 필수전공이론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5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3. 전공실습교과목의 1개 분반 당 학생 수가 3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과목 특성에 따라 학과가 이론강의실과 실습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li> <li>2. 최근 4개 학기 필수 전공이론 및 실습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 현황을 [표 8]에 맞춰 기술한다</li> </ol>

표 8. 강좌당 학생 수( 최근 4개 학기)

이수 구분	2020년				2019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계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작성안내】**

- 1) 개설 강좌명: 분반인 경우, 별도의 강좌로 구분하여 작성함.  
 ※ 이론 및 실습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이론교육을 운영하는 시간의 분반과 학생 수를 실습시간과 분리하여 작성 (예: 동물보건내과학실습, 동물보건외과학실습 등)

### 부록

2-6.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8. 이론 강의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 2-9. 실습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공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현황이 필수전공 교과목 총 학점 대비 40% 이상인가?
2.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있는가?
3.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
4. 교내실습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최근 4개 학기 입학생의 실습실 교육에서 교과목별 학점, 이수시간 등을 검토하여 필수전공 교과목 총 학점 대비 40% 이상인지를 기술한다.
2.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실습시간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3.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구성과 활용에 있어 적절성을 기술한다.
4. 교과목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개선이나 학습성과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 부록

- 2-7. 학생별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2-8. 현장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10. 교육과정편성표 등(교내실습과 현장실습 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확인가능 자료)
- 2-11. 강의시간표
- 2-12. 주차별 실습계획서
- 2-13.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과목별 실습지침서
- 2-14.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지(최근 2개 학기)

※ 실습시수 편성필수 교과목

<b>이수필수 실습 교과목</b> <b>(총 10과목, 18학점)</b>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2-1-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2-1-1)
	동물병원실무및실습(3-1-2)
	의약품관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행동학및실습(3-1-2)
	동물병원현장실습(2-0-2)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평가사항**

1. 현장실습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대학 현장실습절차는 문서화되어 있고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3. 현장실습과 관련된 양식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4. 현장실습 동물병원과의 실습 운영은 협약체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현장실습 이수확인 은 현장실습 협약상의 '현장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술내용**

1. 현장실습기관의 현황(대한수의사회 인증 및 학과와의 협약 여부)을 포함하여 목록을 기술한다.
2. 대학 현장실습절차 등에 관한 규정(또는 지침)의 주요내용 및 평가 절차를 간략히 기술한다.
3. 담당교수 및 현장지도자의 지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4. 주차별 현장 실습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부록**

2-9.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비치자료**

2-15. 현장실습기관 협약서 및 대한수의사회 인증을 받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6. 현장실습운영규정

2-17. 동물보건사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2-18. 학생이 실제 활용한 현장실습 지침서, 현장실습지도교원의 임상실습 지도일지 등 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의 실습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개 학기)

##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 조직, 예산을 포함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가 있는가?
2.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와 제도가 있는가?
3. 교과목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CQI),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4.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평균 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로서 관련 규정, 조직 구성, 예산 현황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최근 2년간 해당 조직의 활동실적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기술한다.
2.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와 제도를 갖추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기술한다.
3. 최근 2년 학과의 교육품질관리,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결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개선에 활용한 실적을 기술한다.
4. 최근 2년 간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 현황을 [표 9]에 따라 작성하고, 매년 국가시험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표 9. 졸업생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 현황(최근 2년간)

연도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합격 현황 (단위: 명, %)				
	접수인원 (가)	결시인원	응시인원 (A)	합격인원 (B)	합격률(% (B/A×100)
2021					
2020					

### 【작성안내】

1. 동물보건사국가시험 합격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접수인원(가), 응시인원(A), 합격인원(B)은 이전 연도 졸업생 중 재응시자를 포함하지 않음.

## **부록**

- 2-10.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자료 (최근 2년)
- 2-11.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자료

## **비치자료**

- 2-1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련 규정
- 2-20.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회의록 등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1. 교육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2.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3. 교육목표 달성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강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자료
- 2-24. 국가시험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의 평가과정이 있는가?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개선환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과정,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 후 결과를 기술한다.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실적이 있는지 기술한다.

### 부록

2-12. 학생의 현장실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자료

### 비치자료

2-25. 실습 후 간담회 운영 및 결과보고서



### 3. 학생



### 3. 학생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 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 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활동,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 복지 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3. 학생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 효율적인 학습, 생활지도 및 졸업 후 진로를 위한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학생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임상실습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학생 지도 체제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는가?
2. 교수별 정기적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생지도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가 있는가?

기술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 지도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주요 내용, 지도교수 제도, 학생 지도 결과의 활용 등 학과의 학생 지도 체계에 대하여 기술한다.</li> <li>2. 최근 4개 학기의 교수별 학생 상담 및 지도 실적을 [표 10]에 따라 작성하고,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 및 지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li> <li>3. 학생지도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li> </ol>

표 10. 교수별 학생 상담 및 지도 실적(최근 4개 학기)

연도	학기	교수별 지도 학생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교수명	배정 인원	횟수	횟수	회당 평균 인원
2020	2					
	1					
2019	2					
	1					

#### 【작성안내】

- 1) 교수명: [표 4.1.1-1]의 학과 전임교수 명단과 일치하도록 작성함.
- 2) 학생 상담 및 지도 실적: 3.1.2. 학생 지도 프로그램, 3.2.1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과는 구별 되어야하므로

동일한 실적을 3.1.1과 3.2.1에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함.

- 3) 횡수: 교수별 지도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실시한 횡수를 기재함. 예)20명 학생 대상으로 개인별 1회씩 상담한 경우 20회로 기재.
- 4) 집단상담 : 한 번에 여러 명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경우, 횡수는 1회로 산정함.

## **부록**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지도교수제도 운영 현황

## **비치자료**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교수별 상담 및 지도 학생 명단
- 3-3. 교수별 상담 및 지도 실적의 증빙자료(일지 또는 전산기록 등)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는가?
2.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3.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과 적응, 인성 함양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현황을 해당 프로그램 목적 및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기술한다.</li> <li>2. 최근 4개 학기의 학교생활 적응, 인성 함양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표 11]에 따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한다.</li> <li>3. 최근 4개 학기의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 및 학과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기술한다.</li> </ol>

표 11. 학생 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최근 4개 학기)

연도	학기	구분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주관	대상 및 인원	지원금액
2020	2							
	1							
2019	2							
	1							

**【작성안내】**

- 1) 구분: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진로 설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학과설명회, 적성검사, 졸업생 교류, 멘토링, 취업분야 전문가 교류, 인성 함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이 해당됨(단, 3.1.1의 학생 상담 및 지도실적, 3.2.1의 교과 외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 실적과 구분하여 작성함).
  - 학과 적응: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과적응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 인성 함양: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내면의 성숙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 진로 설정: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설정을 지원하는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 2) 주관: 학과, 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교내 관련 부서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학과가 참여한 경우, 학과 특성에 맞추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된 프로그램이어야 함.

## **부록**

3-3. 진로지원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 현황

## **비치자료**

3-4.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결과보고서, 공문 등)

3-5.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자료

##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보험, 비상연락망 체계 등)
3. 학생의 교내실습을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교내실습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과가 마련하고 있는 규정 또는 절차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2. 보험가입 현황, 비상연락망 체계 배포 등을 포함한 학과의 실습 안전관리 대책을 기술한다.
3.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수/학생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기술한다.

### 부록

3-4. 교내 실습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 비치자료

- 3-6.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 관리 규정
- 3-7. 안전 관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 비상연락망 등)
- 3-8. 교내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및 실시자료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활동,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학생의 학술활동,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가?
2.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체제가 있는가?
3.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2년간 학과 학생의 학술활동, 동아리 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운영 현황을 [표 12]에 따라 기술한다.</li> <li>2. 학생의 학내외 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간략히 기술한다.</li> <li>3. 학생의 학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현황을 [표 12]에 따라 작성한다.</li> </ol>

표 12. 학생의 학내외 활동 대한 지원 현황(최근 2년간)

학년도	영역	활동명	대상	인원	주요활동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2020	학술						
	동아리 활동						
	봉사						
	기타						
2019	학술						
	동아리 활동						
	봉사						
	기타						

**【작성안내】**

- 1) 교과 외 학생 활동: 학생회나 동아리 등 공식적으로 등록된 활동 외에도 학술활동,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학생이 주최하는 활동을 뜻함. '3.1.1 항목' 또는 '3.1.2 항목'의 실적과 구분하여 작성함.
- 2) 지원금액: 교비, 국고지원비 지원금이 모두 해당됨. 단, 학생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집행한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함.

**부록**

3-5. 학생 학내·외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비치자료**

3-9.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지도체제에 대한 자료

3-10.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자료

###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2년간 학과 등록금 총액, 교내외 장학금 금액 등 장학금 수혜 현황을 [표 13]에 따라 작성하고, 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고 있는지 검토한다.</li> <li>2.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li> <li>3. 최근 2년간 학과 학생이 수혜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수혜인원, 지급액 등을 포함한 지원 실적을 [표 14]에 따라 작성한다.</li> </ol>

표 13. 장학금 수혜 현황(최근 2년)

연도	학기	재학생 수(A) (단위: 명)	교외 장학금 (단위: 원)	교내 장학금(B) (단위: 원)	교내·외 장학금 계(C) (단위: 원)	재학생 1인당 교내·외 장학금(D-QA) (단위: 원)	학과 등록금 총액(E) (단위: 원)	등록금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F=B/E×100)
2020	연도(계)							
	2	a'	g'	b'	c'=g'+b'	d'=c'/a'	X	X
	1	a	g	b	c=g+b	d=c/a		
2019	연도(계)							
	2						X	X
	1							

**【작성안내】**

- 1 재학생 수(A): 당해 연도 4월 1일(1학기), 10월 1일(2학기) 기준의 학부과정 재학생 수를 뜻한다.
- 2 장학금: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외 장학금에 한함.  
\* '원' 단위로 작성함.  
※ 교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B), 교내·외장학금 계(C)는 [정보공시 12-다-1] 값과 같아야 함.
- 3 학과 등록금 총액(E): 당해 연도 해당 학기의 학과 등록금 수입 총액으로 결산 기준[정보공시 12-다-1

- 참조]으로 작성함.
- 4)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F): 교비에 의한 교내 장학금만 해당됨(단, 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으로 지급한 장학금은 포함).
  - 5)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12-다-1] 참조

표 14. 교내 장학금 지원 실적(최근 2년)

연도	학기	구분	장학금명	수혜인원	총지급액	장학금 지급기준
2020	2					
	1					
2019	2					
	1					

**【작성안내】**

- 1) 구분: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기타(학과 분류 장학금명이 있는 경우 명시함) 등으로 기재함.
- 2) [정보공시 12-다-1] 참조

**부록**

3-6.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비치자료**

- 3-11. 장학금 지급 규정
- 3-12. 장학생 선발,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수회의 자료, 공문 등, 최근 2년)
- 3-13. 장학금 지급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예산 집행 서류 등, 최근 2년)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2.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3. 모든 학생에게 개인용 사물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4.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5.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지시설의 개선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학과 학생 및 여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확보 현황 및 위치 등을 포함하여 [표 15]에 따라 작성한다.
2. 학생들을 위한 개인용 사물함 및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및 이용현황 등을 포함하여 [표 16]에 따라 작성한다.
3. 학생 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거나 개선한 실적을 간략히 기술한다.

표 15. 학생휴게실 확보 및 관리 현황

연도	전용/공용	구분	확보현황		실별수용 인원	비품 및 기자재 품목/수량	사용가능 시간	당해연도 편제정원
			전체면 적 (단위: ㎡)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2021		학생 휴게실						
		여학생휴게실						

**【작성안내】**

- 1) 학생휴게실 및 여학생 휴게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 2)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등을 제시함.  
\*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

표 16. 학생 편의시설 확보 및 관리 현황

연도	전용/공용	시설명	위치	이용 대상자	수용가능 인원	기자재 및 비품현황	유지관리 방법	관리담당
2021								

### 【작성안내】

- 1) 학생복지 및 편의시설: 자율학습실, 동아리실, 학생회실, 사물함 등을 뜻함.
- 2) 장애인 편의시설
- 3)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등을 제시함.  
\*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
- 4) 유지·관리 방법: 시설 및 기자재별 관리 주체, 점검 시기, 점검 방법, 유지·관리 현황 기록 등

## 부록

3-7. 학생 편의시설 현황(도표 작성)

## 비치자료

- 3-14. 학생 편의시설 현황 자료
- 3-15.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자료
- 3-16.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공정한 기숙사 배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가?
3.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우선 배정기준이 있는가?
4. 기숙사 배정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5. 기숙사의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생을 위해 기숙사 시설 현황과 기숙사의 수요 대비 공급 비율 등을 기술한다.
2. 기숙사 배정이 공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내 규정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3. 타 지역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기준을 기술하고, 배정 선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 지는지를 기술한다.(현재 기숙사가 없을 경우, 앞으로의 확보 계획을 기술한다.)
4. 기숙사의 복지시설에 대해 사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 실적을 기술한다.

### 부록

3-8. 학생의 기숙사 시설과 입실 현황(도표 작성)

### 비치자료

- 3-17.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배정기준 자료
- 3-18. 기숙사 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 3-19. 동물보건사교육 관련 학과 학생의 기숙사 지원 및 선정 현황

###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시설(보건진료실 또는 병원)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2.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이 있는가?
3.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제가 있는가?
4.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학생의 학내외 학습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예: 보험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6. 학생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생 개인의 건강 관리 및 상담을 위한 체제(보건진료실 또는 병원을 직접 이용하는 제도 등), 인력 현황 및 이용 실태를 기술한다.
2. 기본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현황을 기술한다.
3.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기술한다.
4.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상담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운영한 실적을 기술한다.
5. 보험가입 현황, 비상연락망 체계 배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한 학과의 안전관리 대책을 기술한다.
6. 학생 건강검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질병예방 실시 현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 부록

- 3-9. 보건시설(보건 진료실 또는 병원) 및 인력 현황
- 3-10. 협약서(협약에 의하여 학생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는 경우)

#### 비치자료

- 3-20. 학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시설과 체제 및 운영에 관한 자료
- 3-21. 보험가입 증빙자료



## 4. 교수



#### 4. 교수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 지원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p>소계 - 3부문 7항목</p>	



#### 4. 교수

학과는 동물보건학 분야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전공 분야의 역량을 갖춘 교수를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교수는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교육, 연구, 봉사 및 연수 활동 등 교수업적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 1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지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이 있는가?
- 2 전임교수의 직급승진 심사제도가 있는가?
- 3 전임교수의 정년보장 심사제도가 있는가?

##### 기술내용

1. 전임교수의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 기술하고, 선발 기준 및 절차를 대해 기술한다.
2. 전임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기준 및 현황에 대해 기술한다.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 교원 인사규정(대학 규정, 학과 내규)
- 4-2. 전임교수 임용서류(학위, 경력, 직급 등 입증 자료)
- 4-3. 전임교수 임면관련 공문(최근 2년)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평가사항

1. 학과는 입학정원 30명 기준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수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3. 학과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수 확보율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과 모집정원 30명당 수의사 면허소지 전임교수가 1명 이상인지 기술한다.
2. 필수전공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 면허소지자인지, 담당 교과목의 수업지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3. 학과 전임교수 현황 및 전임교수 확보율을 [표 17]에 따라 작성하고 전임교수 확보율이 50%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기술한다.

표 17. 학과 전임교수 확보율(최근 2년, 당해 연도 3월 및 9월 기준)

연도	학과 편제정원 (명) (A)	학과 입학정원 (명) (B)	교원법정정원 원 확보기준 (C=A/20)	전체 전임교수 수 (D)	수의사면허 소지 전임교수 수 (E)	수의사면허 소지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F=B/E)	전임교수 확보율(%) (G=D/C×100)
2020	120	60	6	3	1	60	50%
2019	120	60	6	2	2	30	33.3%

#### 【작성안내】

- 1) 전임교수 확보율: 당해 연도 3월 및 9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단, 이후 전임교수 확보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일 기준 전임교수 확보율을 별도로 작성함. 연구년 및 휴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도 확보율 산정 시 포함함.
- 2) 편제정원: 당해 연도 편제정원으로 학부 또는 학과의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을 의미함.
- 3) **교원법정정원 확보기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의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예: 환산인원이 6.1명일 경우 7명) 산출)
- 4) 비정년 트랙 전임교수(계약제 전임교수)의 경우 대우 수준이 전임교수에 준하고, 재임용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수로 포함함.
- 5) [정보공시 6-가], [정보공시 6-나], [정보공시 6-다]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함.
- 6) 표안의 표시 내용은 예시임

## **부록**

4-1. 전임교수 확보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4-4. 전임교수의 수의사면허증 증빙자료

4-5. 전임교수의 학위 증빙자료 또는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4-6. 학과의 교과배당표

##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2. 현장지도자는 진료수의사로 등록되고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현장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최근 4개 학기 현장실습지도를 담당하는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 현황을 [표 18], [표19]에 따라 작성하고,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한다.
2. 최근 2개 학기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가 실습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이나 협의를 실시하였는지 기술하고, 관련 실적을 작성한다.

표 18. 현장실습지도교원 현황(최근 4개 학기)

연도	학기	성명	담당과목	직위	지도시간	최종 학위	수의사면허 유무
2020	2		동물병원현장 실습				
	1						
2019	2						
	1						

#### 【작성안내】

- 1) 직위: 현장실습지도교원에게 대학에서 부여한 직위명을 기재함.
- 2) 지도시간: 해당 대학의 인정시간 기준으로 작성함.

표 19. 현장지도자 현황(최근 4개학기)

연도	학기	실습기관명	현장지도자				
			성명	직위	최종 학위	수의사 면허 유무	임상경력
2020	2						
2020	1						
2019	2						
2019	1						

**【작성안내】**

- 1) 실습기관명: 모든 실습기관 및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지도자의 현황을 기재한다.
- 2) 직위: 실습기관에서 현장지도자에게 부여한 직위 명을 기재함.
- 3) 임상경력: 수의사면허를 보유한 후, 진료수의사로 등록하여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

**부록**

4-2.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비치자료**

- 4-7. 현장실습 배치표
- 4-8. 현장실습지도교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9. 현장지도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속기관 공문 인정)
- 4-10. 실습지도 협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회의록 등 (최근 2개 학기)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 1인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는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에 대한 대학 규정이 있는가?
3.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는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최근 2년간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 현황을 [표 20]에 따라 작성하고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가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간략히 기술한다.

표 20. 전임교수 1인당 수업시수(최근 2년)

학년 도	교수 명	담당과목 명	1학기		2학기		연간 학기 평균	
			담당학 점 (a1)	주당시 수 (b1)	담당학 점 (a2)	주당시 수 (b2)	담당학점 (a1+a2)/ 2	주당시수 (b1+b2)/ 2
계								
평균								

**【작성안내】**

- 1) 최근 2년간 필수전공교과목에 대한 전임교수의 담당 비율 현황을 작성함.
- 2) 시수 : 대학에서 인정받는 시수를 기재하며, 팀티칭인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시수를 학기당 평균으로 산출하여 기재함.
- 3) 분반인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함.

## ■ 부록

4-3. 학기별 개설 교과목 목록(최근 2년)

4-4. 학기별 강의시간표(최근 2년)

## ■ 비치자료

4-11. 학과의 강의시간표(최근 2년)

4-12.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습 교과목 인정시수 포함)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전임교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 전임교원 지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3.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예산 집행 실적은 있는가?

**기술내용**

1. 전임교수가 참여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을 기술한다.
2. 대학이 전임교수의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 기술한다.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4-13. 전임교수의 동물보건관련 전문직 단체 활동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14. 교수 역량개발 지원 관련 예·결산 자료

###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수의 국내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2. 교수의 해외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 지원 집행 실적이 있는가?

#### 기술내용

1. 대학이 교수의 국내·외 연수나 학회 참석과 관련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2. 대학이 교수의 국내·외 연수 및 학회 참석을 지원한 실적을 기술한다.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5. 전임교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 지원 규정
- 4-16.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17.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예·결산 자료

####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가?
3. 전임교수의 전문직 활동 실적(논문, 특허, 저·역서 등)은 적절한가?

##### 기술내용

1. 대학이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규정 및 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2. 전임교수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논문, 특허, 저·역서 등을 포함한 활동 실적 등을 기술한다.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8. 교수 업적 평가 지침 또는 규정
- 4-19. 교수 업적 평가 운영 실적 증빙자료
- 4-20. 전임교수 연구논문, 특허, 저·역서 목록
- 4-2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자료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V. 교육시 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 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 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학과는 동물보건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학습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실무 교육에 적합한 현장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모집정원 대비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이 학생 1인당 학생 1인 1.5m<sup>2</sup>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교육기본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회의실, 자율학습실, 사물함, 휴게실 등)

#### 기술내용

1. 학과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현황을 [표 21]에 따라 작성하고, 학생 1인당 확보면적이 요구되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기술한다.
2. 학과의 교육기본시설로서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 등의 시설 확보현황과 시설 설비현황(조명, 방음, 환기, 냉난방시설등)을 [표 22]에 따라 기술한다.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 확보 및 이용현황 등을 기술한다.

표 21. 학과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현황

편제정원 (a)	강의실 및 실습실 현황			학생1인당 실습실면적 (b/a)
	종류	면적(m <sup>2</sup> ) (b)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강의실			
	실습실			

**【용어 정의 및 작성안내】**

- 1) 실습실: 필수실습교과목의 실습을 실시하는 공간
- 2) 실습실 종류 : 동물보건학 교육관련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에 한함.
- 4)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등을 제시함.  
\*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

표 22. 학과 교육기본시설 확보 및 관리 현황

연도	구분	확보현황			시설 수용 인원	시설 설비 현황	유지·관리 방법	당해연도 편제정원
		개수	전체면적 (단위:㎡)	위치 (캠퍼스명,건물명,층수)				
2021	강의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회의실							

**【작성안내】**

- 1) 세미나실: 발표, 토의, 집담회 등을 소그룹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 2)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등을 제시함.  
\*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
- 3) 유지·관리 방법: 시설 관리 주체, 점검 시기, 점검 방법, 유지·관리 현황 기록 등  
\* 전용/공용 모두 작성함.

**부록**

5-1. 실습실 도면

**비치자료**

- 5-1. 학과 관련 건축물대장 (강의실 목록 및 면적 포함)
- 5-2. 학과 교육기본시설 구분별 목록(건물명, 층, 호실, 면적 포함)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도서관에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2.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
3. 학습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된 실적이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과 학생과 교수가 이용할 수 있는 학술자료(국내외 도서자료, 전자자료, 온라인 학술정보서비스 등) 등의 확보 현황을 기술한다.
2. 학과 학생과 교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산화된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기술한다.
3. 학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현황과 집행된 실적을 기술한다.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5-3. 동물보건학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목록 및 활용 실적 (도서구매 예산 집행자료 포함)
- 5-4.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지침 및 안내자료 등
- 5-5.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 (방문평가 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모집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필수 기자재가 100% 확보되어 있는가?
2. 대학 또는 학과의 지침에 따라 필수 기자재가 관리되고 있는가?
3.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과가 보유한 필수 기자재 목록 및 현황을 작성하고 모집정원 30명을 기준으로 100%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2. 학과가 보유한 필수 기자재의 사용 및 유지 및 관리 현황을 기술하고 대학 또는 학과의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3. 학과의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구비 및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5-6.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7. 실습기자재 보유 및 관리 목록 (최근2년)
- 5-8. 실습기자재 사용 일지 및 관리 대장 (최근2년)
- 5-9. 기자재 구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결산 자료 (최근2년)

※ 필수기자재 목록

필수 교과목	보유기자재	개수	위치	관 리 상 태	최소충족조건 (모집정원 30명 기준)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개 골격 모델				3
	고양이 골격 모델				1
	분리형 장기모형 (개)				1
	분리형 장기모형 (고양이)				1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청진기				30
	직장체온계				30
	검이경				1
	검안경				1
	간이혈당계				2
	네블라이저				1
	도플러혈압계				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수액대				6
	일반외과 수술기구(set)				6
	정형외과 수술기구(set)				1
	수술포(set)				6
	멸균기				1
	수술대				1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자동혈구분석기(CBC)				1
	자동혈청화학분석기(Chemistry)				1
	현미경				6
	요비중계				6
	원심분리기				1
동물응급간호학및실습	응급키트				1
	인퓨전펌프				1
	시린지펌프				1
	앰부백				1
	집중치료부스(Intensive Care Unit)				1
	동물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엑스레이 촬영기 (모형가능)				1
	고글/납장갑/납복 (set)				1
	촬영 자				1
동물병원실무및실습	컴퓨터 (chart program installed)				1
동물보건행동학및실습	기초훈련장비 set				1

## 5.2. 연구시설 및 설비

###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2. 개인연구실의 실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가 적절한가?
3. 연구실 유지, 보수를 위한 연간 예산이 대학본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과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술한다.
2. 학과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 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가 적절한지 기술한다.
3. 연구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한 실적을 기술한다.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5-10. 교수연구실 등의 교수연구지원시설 확보 현황과 시설 설비 현황(조명, 방음, 환기, 난방시설 등)
- 5-11. 연구실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12. 연구실 유지 및 보수 관련 예산집행 자료

### 5.3. 시설 및 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가?
2. 기본시설과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3.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시설과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학과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체계에 대해 기술한다.
2. 학과 기본시설과 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실적을 기술한다.
3. 기본시설과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대학의 규정 및 체계에 대해 기술하고, 운영실적을 기술한다.

#### 부록

5-2. 시설·설비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활용 실적 자료

#### 비치자료

- 5-13. 교육 및 연구시설 설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 5-14. 시설·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예산 집행 내역(최근2년)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2.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3.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과 전담부서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기술내용

1.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 학내 제반시설의 환경(조명, 환기, 실내오염)과 접근로(계단 등)의 안정성 확보 현황을 기술한다.
2. 사고 및 재난 등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장치의 정기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 기술한다.
3. 연구실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과 전담부서에 대해 기술하고, 점검, 수리 및 개선실적 등을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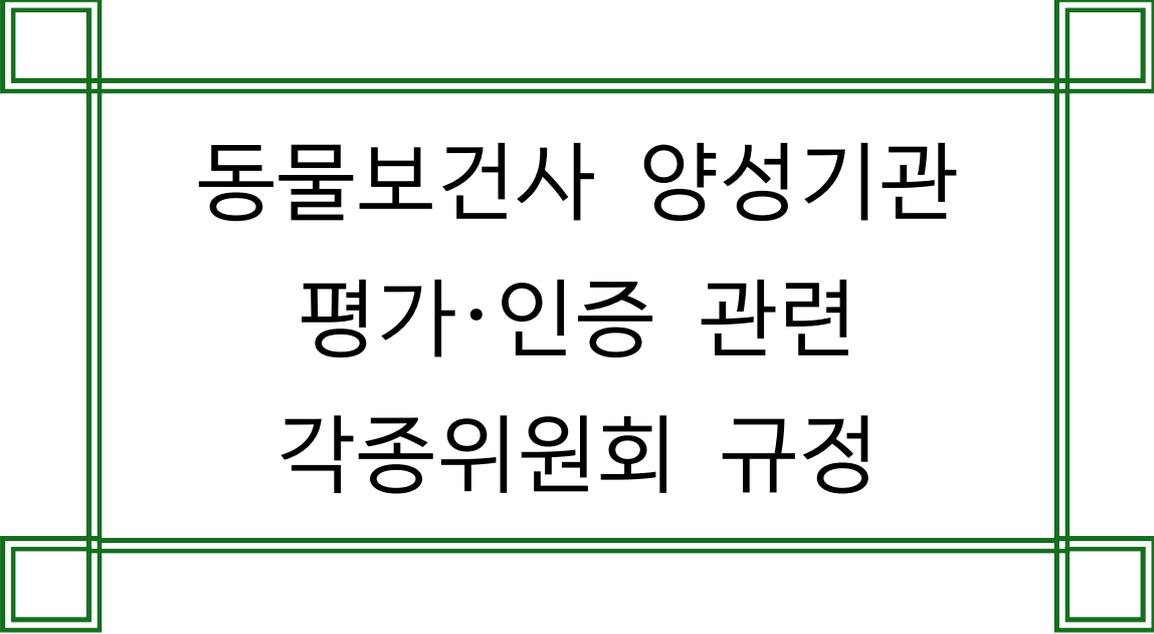
### 부록

- 5-3. 학내 시설·설비 및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과 점검, 수리 및 개선 실적 자료
- 5-4.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대피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

### 비치자료

- 5-15.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5-16. 위해요소 관리 규정 및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위원회 규정

<부록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 참고>



## **부록 7.**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평가기준집」**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평가기준집



# I. 인증주기 및 인증유형

인증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4단계로 구분하되 정부기관(교육부 및 농림축산식품부)과 협의에 따라 인증주기를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완전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영역 모두에서 적격인 경우에 해당된다.
- 단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 16조 4의 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II. 판정 및 평정기준

### 1. 인증·평가

-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적합의 평가를 받은 자체평가보고서만을 평가대상 자료로 인정함
-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위원 인력pool 내에서 평가단장을 포함한 5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수행함
- 평가단은 평가위원별 각 영역을 분담하여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평정표(항목별 점수표)를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2. 판정유형 및 판정기준

- 완전인증(3년):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에서 적격 이상 및 인증기준 35개 항목 중 평점이 70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단축인증(2년):
  -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단, 인증기준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이상이어야 함)
  -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됨
  -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함
- 인증불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증불가로 판정함
  - 인증기준 5개 영역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미만인 경우
  - 인증기준 5개 영역의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이 1개 이상인 경우
  -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미흡\*인 경우

-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 35개 항목 중 21개(60%) 이상인 경우
  - 인증 불가 판정 시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 미흡 평가기준은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에 따라 각 영역별 소계점수가 미흡 기본 점수를 초과하고 적격 기본점수 미만 범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함

○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 4의 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

○ 평가 시 유의사항

- 항목별 평가사항들을 판정할 때 평가사항 중 첫 번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단, 평가 시 유의사항 적용은 최초 인증평가 개시로부터 2년간 유예하기로 함

○ 항목별 평가와 점수

- 항목별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평가	평정기준	평점*	비고
우수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3점	전 항목 우수인 경우 105점 만점
적격	평가사항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점	전 항목 적격인 경우 총 평점 70점 이상
미흡	평가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점	전 항목 미흡인 경우 총 평점 35점 이상
부적격	평가사항을 모두 또는 거의 충족하지 못한 경우	0점	총 평점 35점 미만

\* 평점은 평가사항의 배점에 따라 적격, 미흡, 부적격의 경우 0.5점이 추가될 수 있음

### 3.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은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 인증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고, 단축인증, 인증불가와 재인증 신청 시기, 및 인증취소 경우는 아래 표와 같다.

인증 유형	인증 기간
완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인증일로부터 만 3년 간 인증 유효)</li> </ul>
단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인증일로부터 만 2년간 인증 유효)</li> <li>• 1년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li> </ul>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함.</li> <li>• 인증 불가 판정 후 판정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li> </ul>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 4의 2항 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li> </ul>

#### 4.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방법

○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5개 영역, 15개 부문, 3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각 항목은 3~6개의 평가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평가사항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계량화 함 (표 1)

▶ 표1. 영역, 부문, 항목별 평가사항 수

영역	부문 수 (번호)	항목 수 (번호)	평가사항 수
1. 조직 및 운영	1 (1.1)	1 (1.1.1)	3
		2 (1.1.2)	3
	2 (1.2)	3 (1.2.1)	4
		4 (1.2.2)	4
	3 (1.3)	5 (1.3.1)	3
		6 (1.3.2)	3
2. 교육과정	1 (2.1)	1 (2.1.1.)	3
		2 (2.1.2.)	5
	2 (2.2)	3 (2.2.1.)	3
		4 (2.2.2.)	3
		5 (2.2.3.)	4
		6 (2.2.4.)	5
	3 (2.3)	7 (2.3.1.)	4
		8 (2.3.2.)	3
3. 학생	1 (3.1)	1 (3.1.1.)	3
		2 (3.1.2.)	3
	2 (3.2)	3 (3.2.1.)	3
		4 (3.2.2.)	3
		5 (3.2.1.)	3
		6 (3.2.2.)	5
	3 (3.3)	7 (3.3.3.)	5
		8 (3.3.4.)	6
4. 교수	1 (4.1)	1 (4.1.1.)	3
		2 (4.1.2.)	3
	2 (4.2)	3 (4.2.1.)	3
		4 (4.3.1.)	3
	3 (4.3)	5 (4.3.2.)	3
		6 (4.3.3.)	5
		7 (4.3.4.)	5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1 (5.1)	1 (5.1.1.)	3
		2 (5.1.2.)	3
		3 (5.1.3.)	3
	2 (5.2)	4 (5.2.1.)	3
		5 (5.3.1.)	3
	3 (5.3)	6 (5.3.2.)	5
<b>계</b>	<b>15</b>	<b>35</b>	

○ 평가 계량화는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의 4단계로 분류된 평가기준을 점수화함으로

써 평가 기준이 개념화되는 것을 피하고 수치로 표시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 사항 수에 따른 평가 평점, 점수에 따른 인증유형,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는 아래 표 2~5와 같음

▶ 표2.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평가사항 개수	배점
3	각 평가사항 당 1점
4	1,2번 평가사항은 각 1점, 3,4번 평가사항은 각 0.5점
5	1번 평가사항은 1점, 나머지 4개 평가사항은 각 0.5점
6	각 평가사항 당 0.5점

▶ 표3. 인증유형 별 판정기준

인증유형	판정 기준 (만점 105점)
완전인증 (3년)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70점 이상 2. 5개 영역 모두 영역별 평가점수가 적격 이상
단축인증 (2년)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35점 이상 2.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 1년으로 제한함
인증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인증기준 5개 영역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미만인 경우 2. 인증기준 5개 영역의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이 1개 이상인 경우 3.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미흡*인 경우 4.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 35개 항목 중 21개(60%) 이상인 경우

\* 미흡 평가기준은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에 따라 각 영역별 소계점수가 미흡 기본 점수를 초과하고 적격 기본점수 미만 범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함

▶ 표4.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근거 계산표

영역	부분	항목	평가사 수	우수(전항목 만점인 경우) 점수	적격(전항목 적격인 경우) 기본 점수	미흡(전항목 미흡인 경우) 기본 점수
1.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3	3	2	1
		1.1.2.	3	3	2	1
	1.2. 조직과 재정	1.2.1.	4	3	2	1
		1.2.2.	4	3	2	1
	1.3. 전략과 계획	1.3.1.	3	3	2	1
		1.3.2.	3	3	2	1
		소계	20	18	12	6
2. 교육	2.1. 교육과정 구 성과 체계	2.1.1.	3	3	2	1
		2.1.2.	5	3	2	1
	2.2. 교육과정 운 영과 관리	2.2.1.	3	3	2	1
		2.2.2.	3	3	2	1
		2.2.3.	4	3	2	1
	2.3 교육과정 개 선	2.2.4.	5	3	2	1
		2.3.1.	4	3	2	1
	2.3.2.	3	3	2	1	
	소계	30	24	16	8	
3. 학생	3.1. 학생지도체제 와 운영	3.1.1.	3	3	2	1
		3.1.2.	3	3	2	1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4	3	2	1
		3.2.2.	3	3	2	1
	3.3. 학생복지제 도 및 시설	3.3.1.	3	3	2	1
		3.3.2.	5	3	2	1
		3.3.3.	5	3	2	1
	3.3.4.	6	3	2	1	
	소계	32	24	16	8	
4. 교수	4.1. 전임교수	3.3.4.	3	3	2	1
		4.1.2.	3	3	2	1
	4.2. 현장실습지도 교원및현장지도자	4.2.1.	3	3	2	1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3	3	2	1
		4.3.2.	3	3	2	1
4.3.3.		3	3	2	1	
	4.3.4.	3	3	2	1	
	소계	21	21	14	7	
5. 교육시 설 및 실 습 기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3	3	2	1
		5.1.2.	3	3	2	1
		5.1.3.	3	3	2	1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3	3	2	1
		5.3. 시설설비의관 리	5.3.1.	3	3	2
			5.3.2.	3	3	2
	소계	18	18	12	6	
	총계	121	105	70	35	

### III. 영역별 평가항목 (요약)

○ 평가영역 및 부문별 평가항목 요약은 아래와 같다.

영역	부문 수	항목 수
1. 조직 및 운영	3	6
2. 교육과정	3	8
3. 학생	3	8
4. 교수	3	7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3	6
계	15	35

영역	부문	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영역	부문	항목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학과는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정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영역	부문	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활동,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 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영역	부문	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2.2. 현장실습 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영역	부문	항목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